

2000년 도
법무부 용역과제

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본 연구보고서는 2000년도 법무부 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

연 구 진

정 우 식 (책임연구원)

정 소 은 (선임연구원)

김 희 자 (연 구 원)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범위	1
3.	연구의 제한점	2
II.	조직이론	3
III.	선진국 보호관찰제도의 구조와 조직	7
1.	美合中國	7
1)	보호관찰제도의 조직	8
(1)	보호관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부처와 수준	8
(2)	범죄 인구	12
①	보호관찰관의 사례관리 수	13
②	보호관찰 취소의 수	13
(3)	예산과 인력	14
2)	Virginia주의 보호관찰제도 조직	15
(1)	보호관찰의 조직	15
(2)	보호관찰관인력과 선발기준	17
(3)	보호관찰관의 직무	18
(4)	프로그램의 종류	23
①	일반보호관찰	23
②	집중감독프로그램	27
③	가택전자감시프로그램	27
④	성인수용시설	28
⑤	일일보고센터	28
⑥	군대식 캠프	29
⑦	전환센터	30
⑧	구치센터	32

2. 英國	39
1) 보호관찰제도의 구조와 조직	39
(1) 중앙정부 형무국	40
(2) 지방정부기관의 조직	40
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40
② 보호관찰소의 역할, 인력 및 예산	44
③ 보호관찰관 선발기준과 예우	49
④ 자원봉사자	50
⑤ 교도소 주재 보호관찰서비스	50
⑥ 가석방 절차	53
3. 스웨덴	59
1) 교정보호국의 행정기구와 조직	60
2)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64
(1) 계약처우	64
(2) 사회봉사	66
(3) 전자감시	67
3) 보호관찰소의 업무	67
(1) 판결 전 조사보고	67
(2)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의 업무	68
(3) 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70
(4)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제	72
(5)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72
4) 보호관찰관의 채용 및 연수	73
5) 범죄예방위원의 채용 및 연수	76
4. 獨逸	79
1) Berlin보호관찰제도	79
2) 보호관찰관의 역할	81
3) 프로그램의 종류	82
4) 사회봉사명령제도	84
5) Berlin 보호관찰제도의 조직	86

6) 보호관찰관 선발기준	88
7) 예산	88
5. 日 本	91
1) 갱생보호의 방법	91
(1) 보호관찰	91
(2) 갱생긴급보호	92
(3) 가석방	92
(4) 범죄예방활동	93
2) 갱생보호의 기구 및 소관사무	93
(1) 보호국	97
(2) 심의회	93
(3) 지방지분부국	94
① 지방갱생보호위원회	94
② 보호관찰소	94
(4) 보호관찰관	95
(5) 보호사 등 민간협력者	96
① 보호사	96
② 갱생보호법인	97
③ BBS	98
④ 갱생보호부인회	98
⑤ 협력고용주	98
3) 갱생보호관계예산	99
4) 보호관찰처우상의 제시책	100
(1) 분류 처우제	100
(2) 유형별 처우	101
(3) 단기보호관찰	101
(4) 장기형 가 출옥자에 대한 중간처우	102
IV. 토의 및 제언	113
참고문헌	121

별첨목록

미국

별첨 1. 기능적 구조	33
별첨 2. 교정국 조직	34
별첨 3. 관할구역 보호 관찰조직	35
별첨 4. Chesapeake보호 관찰조직	36
별첨 5. Geo-mapping	37
별첨 6. Chesapeake시의 범죄유형별 비율	38

영국

별첨 1. 법원기구도	56
별첨 2. 보호관찰기구도	57
별첨 3. 형사사법제도 2000~2001 추정예산	58

스웨덴

별첨 1. 보호관찰법무성의 기구	77
별첨 2. 교정보호국의 조직	78

독일

별첨 1. Berlin보호관찰제도 조직표	90
------------------------------	----

일본

별첨 1. 갱생보호의 기구도	103
별첨 2. 제56회 보호관찰관 중등과 연수일정	104
별첨 3. 성청별 일반회계 계산액 일람표	108
별첨 4. 평성 12년도 예산액 조직별 내역표	109
별첨 5. 평성 12년도 예산액 사송별 비교	110
별첨 6. 평성 12년도 예산 관측경비 및 민간경비 비교	111
별첨 7. 행정직 봉급표	11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보호관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운용이 우리사회에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단계로서 1989년 12월 제한적인 차원에서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3년과 1995년의 형법개정과 더불어 1997년에는 성인범에까지도 확대 적용되어 현재는 1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을 정도로 괄목할 양적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한 사람의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400-500명 정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인들인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잘 훈련된 프로그램의 철학과 이론, 그리고 동기화된 서비스 정신에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 보호관찰제도의 조직, 예산 및 인력과 같은 제도의 외적운영체계를 연구한 결과가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운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보호관찰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1. 조직과 구조
2. 인력과 예산
3. 채용기준
4. 보호관찰관의 직무

3.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초점인 선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정부의 보호관찰관들이 연수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으나 영국, 스웨덴, 독일 및 미국의 경우는 몇 편의 논문을 제외한 특수한 내용 이외에는 보호관찰제도의 조직과 구조의 운영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이들 각 나라를 방문하여 문헌고찰과 면담을 실행하였으나 제한된 방문 일정(일본-6월 27; 영국-6월 29-30; 스웨덴-7월 3일; 독일-7월 5-6일)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그들 제도 운영의 구조적인 자료들이었으며, 기능적인 자료들, 즉 어떠한 조직의 운영방법들이 그들의 보호관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케 하는가에 대한 자료들은 서류화되어 있지 않았다. 즉,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내용에 대한 소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선진 각국에 보호관찰제도의 기능적인 관점들을 조직이론의 여러 특징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Berlin 보호관찰의 개요만 다룬 점에 깊은 양해를 구한다. 또한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Parole을 Probation과 분리하여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다음 장에서는 선진 각국이 어떠한 조직의 운영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조직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직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Ⅱ.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ies)

조직은 현대 사회를 특징 지우는 주요한 사회실체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상황에서 생활하며 조직이 설정한 목표 달성의 동반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 영향에 순응하기도 한다. 이 같은 조직의 현상 때문에 조직에 관여하는 사람은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조직(Organization)이란 하나의 사회실체(Social Entity)로서 목적지향적이며, 고의적으로 구성된 활동체계(Deliberately Structured Activity System)로서 어떤 인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조직을 정의하는데 주요 개념들의 뜻을 살펴보자(Holland & Petcher, 1998).

첫째, 조직이란 하나의 사회실체이다. 즉 조직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성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그들은 업무에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는 그에 따른 행동 유형이 따르게 된다.

둘째, 조직은 목적 지향적이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 조직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한다.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며, 서비스 대상자들에 유익한가를 평가하고, 조직의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의 정의에서 세 번째 주요한 개념은 “고의적으로 구성된 활동체계”이다. 활동체계란 조직이 작업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지식으로서의 도구를 뜻한다. 조직의 업무는 고의적으로 여러 분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분과로의 구분은 작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조직의 고의적인 구성은 각기 활동을 조정·지

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에 의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은 그 기능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직의 구성원은 어떻게 지시를 받으며 누구에게 의하여 감독되는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조직을 정의하는데 주요한 네 번째 개념은 “인정된 범위 안에서”라는 용어이다. 즉, 누가 조직의 구성원이며 누구는 아닌가 이다. 또한 자원은 어떻게 조달되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가가 명확해야만 한다.

조직이라는 용어는 광범한 개념이다. 조직은 광범한 범위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람의 집단, 도구(지식) 및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내에서의 업무에 임하고, 평가하며, 변화를 위하여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주요이론에 대한 이해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이론적 관점은 어떠한 종류의 조직구조가 서비스 대상 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적 관점이 있다. 이에 는 과학적 관리이론, 인간관계이론, 그리고 체계이론이다(Kirst-Ashman & Hall, 1997).

과학적 관리이론(Classical Management Theories)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 공식적인 구조와 일관성, 고용원에 대한 엄정한 조직의 연결망이 조직의 운영과 목적 달성에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고용원 각자는 명확히 규정된 임무가 있으며 그 임무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시가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용원의 독자적인 기능은 최소화되어 있다. 감독관은 고용원의 모든 업무를 면밀히 검토한다. 작업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며, 작업의 수행은 수량적으로 규제되고 측정된다. 작업에 대한 고용원들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용원들의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원들은 지시된 대로 가능한한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업에 임하기를 바란다.

전통적인 관료주의는 과학적 관리이론을 잘 설명한다. 관료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명확히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화 단위, 최소의 자유재량(독

자적인 판단과 결정의 기회), 통제를 위한 제반의 특별규정 등이다. 관료구조의 특징들로서, Weber에 의하면, 계층적 권한의 구조(Hierarchical Authority Structure), 작업의 분화(Division of Labor), 역할수행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Role Performance), 지위의 비개인성(Depersonalization of Position), 규정에 의한 결정(Decision Making by Rules)등이다.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ies, Sarri, 1987)적 접근은 조직의 기능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의 주요 Idea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고용원들이 가장 생산적이라는 관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고용원들의 사기와 생산성, 만족감, 동기화 및 지도력 그리고 역동성 있는 소그룹 행동이다. 조직의 지도자들은 그들 고용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한다. 그러므로 원만하고 효과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관계론에서는 실질적 작업 그룹 고용원이 가장 중요한 조직원들이다. 고용원들은 상호협조하면서 일하고 그룹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격려된다. 고용주들은 고용원들이 조직의 규정과 이의 실행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반영토록 권고한다.

인간관계론적 접근법이 전제하는 내용들로는 : ① 고용원의 노력은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관련되어 있다, ② 비경제적 보상이 고용원의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③ 고도의 전문화가 조직의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다, ④ 고용원들은 개인으로서보다는 그룹요원으로서 조직의 관리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이론(System Theories)에서는 조직이란 조직 성원간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위해 성원(Parts)들이 상호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체계(Social System)라고 설명한다. 즉, 조직을 보는 관점이 앞에서 언급한 과학적 관리 접근의 합·法的(Rational Legal)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적응지향적인 총체로서의 조직을 말한다. 체계이론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부속체계(조직 内外의 성원들)들간의 상호적인 관계이다. 즉, 환경의 중요성과 다른 체계의 영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체계이론은 다른 이론적인 접근보다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높다. 불합리하고 자연적인 상호간의 관계들이 무시되기보다는 보다 중요하

게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체계이론의 접근은 조직에 대한 부단한 평가와 조정을 강조한다.

사회체계이론의 주요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Chess and Norlin, 1995).

첫째, 사회체계(Social System)란 사람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기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나 또는 사회적 단위를 나타내는 실체를 말한다(예 : 가족, 사회기관 또는 지역사회, 법무부).

경계(Boundary) : 체계의 외적한계로서 다른 외부체계로부터의 분리영역을 규정짓는다. 경계는 각 조직체계의 성원이 어떻게 상호관계하는가를 설명한다(예 : 법무부와 재경부는 같은 정부의 조직체계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역할을 한다).

부속체계(Subsystem) : 큰 체계 내에 있는 작은 체계를 일컫는다(예 : 서울 서부지소는 서울관찰소 조직내의 한 부속체계이다).

항상성(恒常性-Homeostasis) : 체계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예 : 범죄의 증가로 치안부재의 상황을 안전한 사회로 복구시키는 기능).

투입(Input) : 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말한다(예 : 행자부에서 보호관찰관 증원지원허가, 원만하고 유능한 보호관찰관의 영입 등).

출력(산출-Output) : 투입이 체계를 통하여 산출하는 결과(예 : 보호관찰대상자가 감독기간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귀환함).

귀환(Feedback) : 특수한 형태의 입력으로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체계에 다시 돌아오는 것

분화(Differentiation) : 단순상황에서 더욱 복잡한 수준으로의 변환을 말한다(예 : 보호관찰서비스 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상).

이상과 같이 조직의 효과적인 운용에 대한 제반 조직이론을 간략히 검토하였으며 이들 각 조직이론의 특성을 기준하여 선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조직의 운영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선진 각국의 보호관찰 제도의 조직과 그 운용을 자료가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Ⅲ. 선진국 보호관찰제도의 구조와 조직

1. 美 合 中 國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된 합중국으로 1878년 Massachusetts주가 처음으로 보호관찰을 법제도로 시작한 이래 50개의 모든 주가 성인과 소년범에 대한 법적制裁의 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을 法制化하고 있다.

“Probation”이란 유죄의 확정 또는 형의 언도를 받은 범죄자가 시설에 구금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형사사법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일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뜻한다. 감독의 조건은 범죄자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이 처벌과 법률에 대한 준수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보다 강화된 집중감시를 요하는 관찰대상자들에게는 발목에 부착시키는 전자감시장치를 사용하며, 어떤 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는 횟수와 방문의 횟수를 더 부가하고 있다. 어떤 보호관찰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 귀환되기 전에 “Boot Camp-군대식 훈련소”와 같은 프로그램의 履修를 요하기도 한다.

“Parole”은 범죄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에 종사하면서 감독을 받는 것은 보호관찰과 같으나, 이들은 일정의 수형기간 이후 지역사회로 가석방되어 법원이 부여한 조건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감시, 그들의 보고 및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의 그것과 같다.

보호관찰과 가석방 운영프로그램은 사법관할 구역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사법제도의 부분으로서, 지방의 郡(county)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어떤 州들은 주정부지휘하에 각 county에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며, 어떤 주들은 주 내의 각 county에 보호관찰국을 두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 어떤 주들은 보호관찰 업무와 가석방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곳도 있으나 어떤 주들은 이들을 분리 운영하는 주(州)들도 있다.

美범죄 및 비행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의 1981년도 인명부(人名簿)에 의하면, 1907년 최초의 보호관찰 인명록에는 전국적으로 795명의 보호관찰관이 있었고, 1937년에는 3,800명, 1970년은 25,000명이었다. 그리고 미 교정연감 통계에 의하면 1999년 1월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관 수는 60,993명이다.

1971년의 美형사사법제도의 기준과 목표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 & Goal)에서는 성인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각 주의 구조조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주정부관할체제(State administered system) : 26개 주
- 지방정부관할체제(Locally administered system) : 11개 주
- 주 지방정부 동시 관할체제 : 13개 주

상기 위원회는 보호관찰제도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주 정부행정체제의 중앙지휘체계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후 보호관찰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주 정부체제로 많이 전환되었다(물론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행정주체(행정부서 및 사법기관)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1) 보호관찰제도의 조직

(1) 보호관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부처(Branch)와 수준(Level)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제도의 구조는 각 주마다 다르다(Camp, et al, 2000). 예컨대, 어떤 주들은 고도의 중앙지휘체제하에 있는가 하면 어떤 주들은 각 지역에 완전분산된 지휘체계 또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지휘체제로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보호관찰제도의 구조적 조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첫째, 정부의 수준(Level-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과 둘째, 정부의 부처(Branch-행정부처 또는 사법부처)이다.

몇몇의 주들은 보호관찰제도의 구조가 정부의 兩수준과 兩부처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① 주 행정부처의 운영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보호관찰제도 구조조직은 주행정 부처가 그 운영을 맡고 있다(30개 주)(Kaiser, 1999).

- 26개 주는 주 정부의 교정국의 지휘 체계하에 있다.
- 2개의 주(Alabama와 Arkansas)는 주행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가 지휘하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한 개의 주(South Carolina)는 독립적이고 주 정부의 각료급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 한 개의 주(Nevada)는 교정교화 기관이 아닌 치안(Public safety)담당 부서에서 운영한다.

표1. 성인보호관찰 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의 Branch와 Level

	Executive Branch		Judicial Branch	
	State level	Local level	State level	Local level
Alabama	✓			
Alask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Florida	✓			
Georgia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	✓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Ohio *	✓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	✓			

*표는 복합서비스 구조를 지적함

② 지방행정부처의 운영

3개의 주(Iowa, NewYork & Oregon)는 행정부처 산하에서 여러 郡(county)의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③ 주 사법부처의 운영

주 사법부처가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주는 8개의 주(Colorado, Connecticut, Hawaii, Kansas, Massachusetts, Nebraska, New Jersey, and South Dakota)이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 구조는 주 내의 각 행정부처마다 다르다.

④ 지방사법기관의 운영

9개의 주(Arizona, California, Illinois, Indiana, Minesota, Ohio, Pennsylvania, Texas, & West Virginia)는 지방사법기관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⑤ 행정/사법부처의 공동운영

3개의 주(Minesota, Ohio, Pennsylvania)는 행정/사법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alifornia주는 지방 정부의 사법 또는 행정부처가 운영한다.

⑥ 경범죄자의 감독

- 24개 주는 중범죄자(felony)와 경범죄자(misdemeanant)를 모두 감독한다.
- 16개 주는, 다음과 같은 경범죄자들을 감독한다.
 - 1)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바뀐 경우
 - 2) 중 경범죄자
 - 3) 법원의 지시에 의한 범죄자
- 10개 주는 중범죄자만 감독한다.

⑦ 성인 가석방, 소년보호관찰 및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성인보호관찰 기관의 책임

다양한 caseloads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기관의 책임은 여러 형태가 있다. 어떤 기관은 성인보호관찰 대상자들만을 감독하나 다른 여러 성인보호관찰 기관들은 또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감독하고 있다.

표2. 지역사회 다른 교정기능에 대한 성인보호관찰기관의 책임

	Adult Probation and Parole	Adult Probation Only	Adult and Juvenile Probation
Alabama	✓		
Alaska	✓		
Arizona		✓ *	✓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Florida	✓		
Georgia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		✓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Ohio	✓ *	✓ *	✓ *
Oklahoma	✓		
Oregon	✓		✓
Pennsylvania	✓ *	✓ *	✓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	✓		

* 별표는 지역사회교정의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를 지적한다.

- 6개주만이(Conneticut, Georgia, Hawaii, Maine, Massachusetts, Tennessee) 성인보호관찰 기능을 하고 있다.
- 30개 주는 성인보호관찰과 가석방 대상자들을 동시에 감독한다.
- 10개 주는 (California, Colorado, Illinois, Indiana, Kansas, Nebraska, New Jersey, New York, South Dakota, West Virginia)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을 동시에 운영하며, 6개 주(Arizona, Minesota, Oregon, Ohio, Pennsylvania,Texas)는 사법관할구역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 2개의 주(Ohio와 Pennsylvania)는 성인보호관찰기관에서 성인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모두를 감독하고 있다.

⑧ 성인보호관찰기관의 재정지원

48개 주는 주정부가 보호관찰기관 운영예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그들 예산의 일부를 보호관찰대상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 주 정부지원 : 18개 주는 보호관찰서비스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을 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들 주 가운데 보호관찰대상자들로부터 징수 받는 금액은 주 재정국에 송치된다.
- 17개 주는 보호관찰대상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그 운영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 7개 주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
- 6개 주는 주 정부, 지방정부의 공동지원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로 부터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 2개의 주만이 지방정부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징수금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범죄 인구

1999년 1월 현재 총 범죄 인구는 4,340,575명이다(미 교정연감, 1999참조).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죄수들의 수는 1,317,096명으로 전체 범죄인구의 30.3%이며, 보호관찰처분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인구는 3,033,479명으로 전체 범죄인구의 69.7%에 이르고 있다.

보호관찰처분대상자들 중 남자는 83.8%, 여자는 16.2%이며, 이들 중 백인이 60.1%이며 흑인은 31.1%, 기타에는 미 본토인디안, 동양계 아시아인 및 히스패닉 등이다.

① 보호관찰관의 사례관리 수

보호관찰관들의 사례관리 수는 Rhode Island의 352명에서 Washington D.C.의 6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보호관찰에 처분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각 보호관찰관의 평균 사례관리 수는 93명이며, 집중감독대상자의 caseload는 각 보호관찰관마다 평균 30명이고, 전자감시대상자들에 대한 평균 caseload는 21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각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접촉하는 연평균 횟수에 대하여는 일반대상자들은 14번, 집중감독대상자들은 74번, 그리고 전자감시대상자들은 73번이다. 특수한 대상자들에 대한 年접촉 횟수는 평균 43번 정도이다.

가석방자들에 대한 연평균 접촉 횟수는 20번이며 집중감독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68번, 전자감시대상자들에 43번이며, 특별대상자들은 55번이다. Probation과 Parole를 동시에 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의 年평균 접촉의 횟수는 일반대상자들은 18번, 집중감독대상자들은 100번, 전자감시대상자들은 81번, 특수대상자들(bootcamp 또는 약물치료대상자들)에 대한 접촉 수는 79번이다.

② 보호관찰 취소의 수

1998년도 보호관찰(Probation & Parole)처분 취소심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모두 326,893명이며, 최종적으로 교도소의 시설구금처분을 받은 자들은 모두 141,882명이다.

이들 141,882명중에서 47,331명이 Texas주로서, 가장 많은 취소 처분을 받은

주이며, Minnesota주는 300명으로 가장 작은 취소 처분을 받은 주이다. California주는 가석방 취소가 가장 많은 주로서 89,093명이었고, Delaware는 62명으로 가장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Probation과 Parole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Louisiana주는 그 취소 대상자들이 4,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Montana주는 616명으로 가장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마약사용으로 보호관찰처분취소 심문을 받은 대상자들의 수는 3,385,477명이었고, 마약흡인시험(Test)결과 보호관찰처분이 취소된 자들의 수는 20,078명이었다.

(3) 예산(Budget)과 인력(Staff)

① 예산(Budget)

미 전국교정시설운영예산은 1999년 현재 328억불인 반면, 보호관찰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47억불로서 교정시설예산의 14.4%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평균예산은 각주 6,800만 불로서, California주가 11억 불로 가장 많았으며, 416만 불을 사용한 Vermont주가 가장 낮은 예산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보호관찰대상자(Probation & Parole)에 소요된 매일 평균 액수는, 일반 대상자인 경우 \$3.95, 집중감독대상자의 경우 \$5.88, 전자감시대상자의 경우 \$9.65이며, 특수대상자의 경우는 \$7.39로 보고되고 있다.

② 인력(Staff)

1999년 1월 현재 미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는 총 보호관찰관의 수는 60,993명으로 여성이 53.8%이며, 남성은 46.2%이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인이 22.6%이고 나머지는 기타 인종에 속한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관들의 81.8%가 주 40시간외 초과업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중 62.1%는 보호관찰관들이고, 11.4%는 행정직에 있는 간부들이며, 26%는 사무직원을 포함한 행정보

조요원들이다.

보호관찰관들의 봉급수준은, 처음 시작하는 초임자의 경우는 평균 \$26,806이며, 최고평균 수준은 \$46,317이다.

최고수준의 봉급을 받는 연방정부 보호관찰관은 평균 연봉 \$93,411였으며, 최하의 봉급은 Kansas주의 연방정부보호관찰관으로서 연봉 \$34,507이다.

연봉이 가장 많은 주별 통계에 의하면 California주에서는 최고 봉급 수준이 \$64,212였고, South Dakota는 \$28,766로 최하의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또는 초봉이 가장 높은 주는 Rhode Island로서 \$38,732였으며 최하는 Kentucky주의 \$17,964였다.

지금까지는 미국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의 운영을 총괄적인 관점에서 요약 보고하였다.

다음은 미국내 보호관찰제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Virginia주를 중심으로 그 운영제도의 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Virginia주의 보호관찰제도 조직

(1) 보호관찰의 조직

Virginia주는 미 동부 중단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미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본부였던 Richmond를 현 주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미국 수도 Washington D.C.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미국의 전통을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주 전체의 인구는 690만이며, 이들의 0.9%인 62,791명이 법을 위반한 자들로서 Virginia주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2,215명은 주교정 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37,563명(59.8%)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감독을 받고 있다. 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을 지역사회내 교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독지도하기 위해 Virginia주는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제도의 조직과 운영구조(인력, 예산,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다(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1999).

Virginia주의 교정행정은 주 정부의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지휘

하에 운영되고 있다. 주 교정부는 주 행정부의 내각에 해당되며 교정부의 최고 위 간부는 교정장관이다.

주 교정부에는 시설담당교정국과 지역사회내 교정(보호관찰)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Virginia주에서는 보호관찰 제도운동을 총괄하여 지역사회교정이라 칭한다.

교정부의 조직 표는 별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장(Director)밑에는 공보, 피해자서비스, 심사 및 환경보호의 4개의 고문실을 두고 있으며 기획, 행정, 인사, 감사 및 정보부처가 부국장급에서 지휘받고 있다. 실제 행정담당 부서로서는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사회교정행정은 기획(operations)부처의 부국장 휘하에 있으며, 이 운영부처의 상세 조직 표는 별첨2와 같다. 지역사회교정의 행정책임자는 주정부 교정부의 부국장(Deputy Director)관할 하에 있으며, 이 밑에는 기획(operations), 행정(Administration), 가석방 행정 및 지역시설 기획의 4개 부처가 있으며, 보호관찰의 모든 행정과 운영은 이 행정부처에서 주관한다. 이 행정부처는 4개의 보호관찰 행정관할구역이 있고, 그 밑에 42개의 보호관찰 및 가석방 관할구역이 있으며(1지역에서 42지역까지) 7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있다. 이 같은 조직 하에 Virginia주는 지역사회교정프로그램을 42개의 각 보호관찰 및 가석방 관할구역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일반보호관찰(General Probation), 집중감독(Intensive Supervision), 가택전자감시(Home Electronic Monitoring), 일일보고센터(Day Reporting Center), 마약법정(Drug Courts), 성인수용시설(Adult Residential Care), 군대식훈련시설(Boot Camp), 전환센터(Diversion Center) 및 구치센터(Detention Center)가 있다.

상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의 보호관찰행정 관할의 구조는 별첨3과 같다. 별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행정관할구역 제 I 은 10개의 보호관찰소가 있고, 제 II 관할구역 역시 10개의 보호관찰소, 제 III 및 제 IV 관할구역은 각각 11개씩 보호관찰소가 있다.

각 관할구역 보호관찰 책임자(Regional Administrator)밑에는 별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관할구역 보호관찰을 경영하는 지역관리인(Regional Program Manager)이 있고, 보호관찰관관리인(Probation Manager),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프로그램운영책임자(Institutional superintendent)가 있으며, 지역관리인

밑에는 교통관리, 교육, 피해자 및 자원봉사, 일일보고 센터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각종 프로그램들의 운영은 각 관할 구역에 따라 다양하다. 다음은 제 II 및 제 IV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조직을 살펴보겠다.

(2) 보호관찰관인력과 선발기준

Virginia주는 2000년 6월 현재 37,563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42개의 지역 사회교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독지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관	479명
보호관찰감독관	57명
보호관찰행정책임자	50명
보호관찰행정보조원	298명
기타	290명
계	1,174명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총 1,174명이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의 수는 479명이다.

보호관찰관의 선발기준은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사회과학분야, 예컨대, 사회사업학, 심리학, 사회학, 형사사법학 등의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주 정부가 실시하는 보호관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자들에 대한 심리검사는 행하지 않으나, 이들의 과거기록검사, 의료검사, 추천서 및 개인면접을 통하여 카운셀러로서의 자질을 검토한다. 중요시되는 개인적 자질들로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이해, 관심, 원만한 성품이며, 조직생활에 필요한 동료간의 상호친화, 협조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이 있다.

연수기간을 통하여 평가되는 사항들로서는 약물교육의 이해, 법률, 복지, 가

족 및 개인 상담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능력 등이며,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직업알선, 재정관리, 여가이용 등의 능력을 평가받는다.

(3) 보호관찰관의 직무(Position Description)

범죄자의 죄과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호관찰/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들에게 카운셀링, 감독 및 지역사회자원을 증재한다.

다음은 보호관찰관 업무활동들에 대한 시간의 백분율표이다.

보호관찰 담당직원(Probation Officer)

시간배당	임무와 책임
35 %	법원, 가석방위원회 및 보호관찰국에 판결 전후의 형사 및 사회배경을 조사, 확인, 분석, 작성 및 제출
30 %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및 범법자의 욕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처우와 감독에 대한 계획의 개발과 실행
10 %	상담과 일자리 또는 교육훈련과 같은 서비스 관리를 조언 예) 주거임시응급조치, 교통수단과 의료봉사, 전문기관, 공공 및 개인기관에 대한 의뢰, 자기 자신의 능력개발을 지원
10 %	보호관찰대상자, 그들의 가족, 경찰, 고용주 및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의 접촉과 서류에서 얻은 그들에 대한 행동자료를 관찰, 기록 및 보관함
5 %	추정되는 불량행위 또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보고 체포절차를 착수하고 보호관찰처분의 취소청문회의 증인역할
5 %	채납된 감독료의 수거, 법원비용 같은 경제적 규제사항의 감독, 개인접촉, 서면통보 및 위반 절차를 통한 비행의 추적, 재정관리 및 지도 등
5 %	보호관찰관 직업수행을 돕는 학습목표 달성 훈련에 참여 지역사회의 주민 개인 또는 집단에 보호관찰의 목적, 과업 및 원칙을 설명, 또는 필요하다면 일반시민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보호관찰관(Porbation Supervisor)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개별지도의 이행, 조사의 실행, 법원과 가석방위원회에 분석적인 보고서 작성 및 부여된 임무의 준수 등에 관한 감독 및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의 처리를 담당한다.

시간배당	임무와 책임
20 %	일선 보호관찰관들에게 판결전조사보고서 및 기타 조사업무를 위한 준비지도, 보호관찰 법례 및 규정에 따라 법원 가석방위원회 및 보호관찰국에 판결 전후의 형사 및 사회배경 조사에 대한 보고서의 검토.
20 %	감독의 질과 강도(強度)가 주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정기적으로 검토, 보호관찰관들이 감독의 계획에 따라 임무이행토록 지도, 보호관찰대상자의 체포 및 영장신청에 대한 사전회의 주관
15 %	보호관찰관들에게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의 기술과 능력이 보호관찰국의 기준에 도달하는가를 확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족한 면을 보완케 하며 지역사회자원을 통한 대체교육훈련기회를 개발
10 %	보호관찰감독관으로서 고용관계 관리 기능을 수행 보호관찰관의 임무수행에 대한 관찰 및 평가 보호관찰관직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 면접, 선발 응시자들에 대한 배경보고서를 법원에 보고
10 %	보호관찰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법원의 활동, 규정, 절차, 진전 및 특별사례 지원을 판사들과 논의한다.
10 %	예비 <u>가석방청문회</u> 를 주관하며, 적법절차의 준수를 확인하고 법정증언과 진술에 대한 주장, 청문회의 결과를 적절한 당국의 기관에 보고
5 %	가장 어려운 사례를 관리하며 일선 보호관찰관이 사직 또는 휴가로 업무수행에 공백기간을 둘 때 대신 감독
5 %	직무와 교육훈련에 관련된 전문활동에 참가, 필요시 대중교육실시, 개인 또는 집단에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에 대한 목적, 과업 및 원칙을 설명
5 %	지역사회자원의 중재 역할 및 회의에서 발표 보호관찰관리인의 부재시 그를 대신하여 장·단기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과 예산 계획서의 준비

선임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Senior)

가장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를 감독한다. 케이스에 관련된 문제 해결과 케이스 관리 기술개발에 대하여 일선 보호관찰관들을 돕는다.

시간배당	임무와 책임
30 %	시민의 안전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특별집중 감독이 요구되는 어려운 보호관찰사례를 감독,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의 정도와 특별처우의 필요성을 사정하고 적절한 감독과 처우계획을 개발한다. 보호관찰관들에게 처우 계획 개발과 지역사회자원 확인에 대한 특별기법을 지원
20 %	약물 남용 또는 성범죄자와 같은 특별한 욕구가 요청되는 중대한 대상자들을 위한 치료 모형개발, 이 같은 처우욕구와 복잡한 사례관리를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지도
15 %	대상자 개선 또는 악화 상황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기록 보호관찰국의 규정에 따라 범법자의 서류 보관 제제조처가 적합하지 않을 때 비행행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필요시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회에 출두, 새로운 범법행위로 감독조건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한 형사 및 배경 보고서 작성
15 %	대상자 및 그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 가끔 연락 체포기록, 처우기록 및 다른 서류 검토 이후 이에 대한 분석 및 해석, 법원과 가석방위원회에 보다 적절한 규제 또는 제제를 추천
10 %	신변안전교육훈련 제공(위기상황, 인질구출, 정당방위훈련 및 특수훈련을 포함), 선임보호관찰관 교육훈련 보조,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에 제공, 여러 기관 또는 일반 시민에 보호관찰에 관한 발표회 주관
10 %	적절한 문의, 참조 및 서비스를 위한 그 지역의 주요 책임자, 처우 및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고 유지, 특정 대상자에 대한 문제관리 위해 기관 상호간의 협조 및 활동들이 보호관찰 규정에 준하는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류 제공

보호관찰관 관리자(Probation Manager)

작은 지역의 보호관찰을 운영한다. 보호관찰관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supervisor역할로서 주 보호관찰국의 규정과 절차를 분석, 해설 및 이행하며 지방의 행정 규정과 절차를 고안하고 이행하며, 가장 복잡한 보호관찰사례(소수)를 직접 다루고, 보호관찰관들의 개별지도와 조사기능의 수행에 대한 질과 양을 검토, 평가한다.

시간배당	임무와 책임
20 %	주보호관찰국의 규정과 절차를 해설하고 이행, 관할지역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규정대로 이행되는가를 확인, 사례 서류의 정확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계획 수립
20 %	보호관찰관들의 업무를 검토,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업무수행을 평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조치, 또한 교육훈련을 계획, 직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중재
20 %	관할구역의 가장 어려운 사례관리를 담당,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받음 : 연방범죄수사국, 자동차면허시험기관, 의료기록, 군복무기록, 교육기록, 심리검사 및 법원기록, 집행유예위원회 및 교정국의 사용을 위해 보고된 형언도 전·후 기록 수집, 처우계획개발과 진전정도를 감시하기 위해 정규회의 주관
15 %	관할구역의 보호관찰 업무를 토의하기 위해 판사, 법원의 행정요원, 지방경찰관, 고용주 및 일반 시민들과의 회합, 보호관찰국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보호관찰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증대 위해 지역사회 여러 집단에서 강연 주관
15 %	예산관리 : 예산계획안, 예산집행, 예산사용의 분석과 허가, 회계장부관리, 감독에 대한 서비스료의 관리, 채납회계관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무기재의 관리 및 기자재 교체 결정
10 %	연방검찰, 주 정부 및 지방당국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대한 협조 교정국, 법원 및 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록유지 및 보고서 수집

지역 행정관(Regional Administrator)

관할지역의 보호관찰을 운영하는 행정책임자들, 지역시설과 대체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현장업무기능,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그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시간배당	임무와 책임
30 %	관할지역의 프로그램 시설 장들에 대한 행정책임 관할지역의 보호관찰 및 가석방대상자들에 주어지는 각종 처우와 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조정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원의 최대활용, 또한 보호관찰과 가석방 운영의 목적과 임무를 토의하기 위하여 법원, 가석방위원회, 지방 또는 주 정부관료 및 공공 및 사적 기관장들과 회합을 갖는다. 프로그램과 자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지지를 얻는다. 결정사항의 보고, 제반회의와 모임에서 부행정관들을 대표하며 관할지역의 지역교정 행정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한다.
25 %	당국의 규정과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할지역의 프로그램, 관찰대상자, 제정 및 인사 기록을 감사한다.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해 방문 실시, 주정부 관리팀을 대표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반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절차의 통일성을 증진한다. 가석방위반에 대한 청문회가 일관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관리하며 관할지역의 모든 운영절차를 관장한다.
15 %	관할지역내의 모든 간부들의 업무수행 기준설정과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증진을 위한 지침 제공, 간부회의의 계획과 주관, 특별프로젝트를 위한 인력의 지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지휘 한다.
10 %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각종 정부(연방 및 주)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해설, 배포 및 실행, 제반규정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과 방향제시, 제안된 규정과 절차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또는 수정된 규정과 절차를 추천.
10 %	프로그램, 관찰대상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주 전체 및 지역의 자료를 분석, 활용가능한 자원과 목표 달성진전에 대한 평가, 새로운 경향 및 양상 개발을 확인, 운영의 모순 또는 비일관성을 검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행 및 개선
5 %	보호관찰과 가석방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간의 활동을 조정하며, 기관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문제해결과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하여 보호관찰 행정관련 간부들과의 정규 모임주관, 보호관찰과 가석방, 교정 및 기타 관리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문 학술지로부터 수집. 소수민족계 출신 간부 채용과 관찰대상자들의 위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이 같은 계획이행을 확인.
5 %	관할지역 운영예산 개발 및 보고, 지역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책임자들에게 예산 보고서 작성지시, 보고된 예산액수가 운영에 적절한가 검토, 각시설과 프로그램의 예산집행감시, 증가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지원, 인력, 차량 및 장비의 재할당 추가자원지원의 필요성을 서류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요청, 신속한 예산집행의 감시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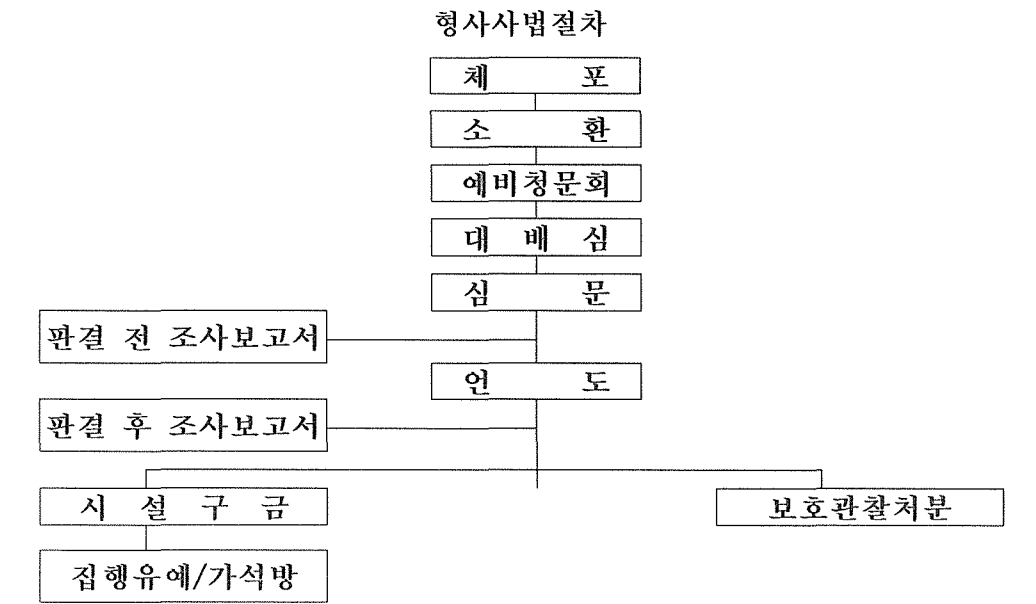
(4) 프로그램의 종류

Virginia주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80%정도는 일반보호관찰대상자들로써 자기 거처에서 생활하고 일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약 20%의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배치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수용시설(Residential)을 통한 프로그램과 비수용시설(non-residential)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성인수용시설(Adult Residential Care), 군대식 캠프(Boot Camp), 범법청소년시설(Youthful Offender Program), 전환센터(Diversion Center) 및 구치센터(Detention Center)가 있으며, 후자에는 집중감독(Intensive Supervision)프로그램, 가택전자감시(Home Electronic Monitoring)프로그램, 일일보고센터(Day Reportation Center) 및 약물법정(Drug Courts)이 있다. 동서남북의 4개 지역에 소재하는 42개의 보호관찰소에서는 119가택전자감시소, 8개의 일일보고센터, 6개의 약물법정, 10개의 성인숙박시설, 5개의 전환센터, 1개의 군대식 시설 및 4개의 구치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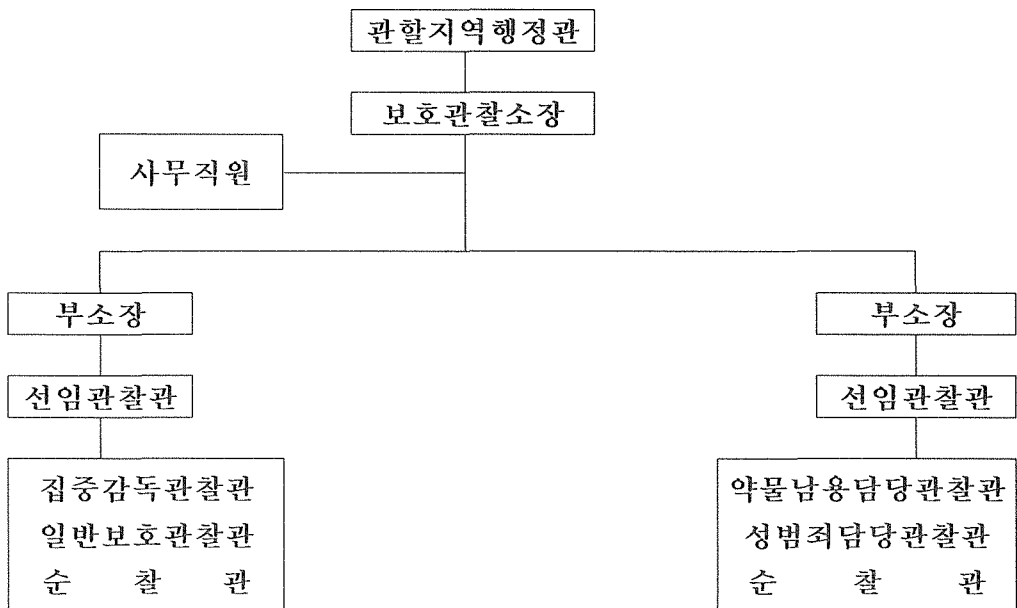
① 일반보호관찰(General Probation and Parole)

이는 전통적인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으로서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사회보호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구금시설에 보내지 않고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상태로서 지역사회내 감독을 받으면서 각 범죄자(관찰대상자)의 욕구(needs)에 따라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의 약 80%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로서는 각 케이스 감독, 순찰, 가정방문, 조사, 체포기록검토, 소변검사, 프로그램처우 의뢰 및 타 지역의 감독시설로 전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범죄자들이 보호관찰처분을 받기까지의 형사사법절차는 다음과 같다.



Virginia주의 각 보호관찰소 운영조직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감독의 종류는 보호관찰, 집행유예 및 가석방이 있다.

- 보호관찰 : 법원이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다.
- 가석방 : 1년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시설에서 보낸 이후 주 가석방 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하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잔여형기를 보낸다. 1995년 1월 이후 시설구금된 자들로서 법원이 부여하는 조건하에 지역사회에서 감독을 받는다.

감독의 수준은 제 1, 2, 3으로 구분된다.

제1수준은 집중감독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관찰대상자가 과거에 난폭한 행위 또는 감독의 조건에 불량한 기록을 가진 자들로서 그 정도에 따라 제 3 단계로 다시 분류된다.

- 제 1 단계는 매달 최소 8번의 접촉을 요한다.
- 제 2 단계는 매달 최소 2번의 접촉을 요한다.
- 제 3 단계는 매달 최소 1번의 접촉을 요한다.

제1수준에서는 또한 가택전자감시를 포함하고 있다.

제2수준은 일반감독의 경우로서 대부분의 관찰대상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매3개월마다 최소한 1번의 접촉을 요구한다.

제3수준은 행정적 감독으로서 위험의 정도가 낮은 관찰대상자들로 매 6개월에 한번씩 개인의 활동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조건은 법원이 부여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의 계획을 따라야 하며, 직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약물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에는 분노억제/관리 교육, 지역사회 봉사, 사회생활기술, 또래 집단지지 및 성범죄 교육등이 있다.

대부분의 관찰 대상자들은 직업알선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관찰 대상자들을 돕는 직업교육과 직장 알선에 참여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법원, 가석방위원회 및 보호관찰관들이 부여한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최초로 취해지는 제재조치들로서는 경고, 접촉횟수의 증가, 약물검사, 지역사회 서비스증가 및 집중감독프로그램의 의뢰 등이 있다.

다음은 일반보호관찰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지역인 Virginia주의Chesapeake시의 보호관찰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Chesapeake시는 약 20만의 인구를 지닌 중소도시로서 1999년 7,703건의 범죄가 발생되었다. 이 지역 보호관찰소는 1,207명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 중 32%는 약물관계사범이고, 31%는 對物犯, 19%는 폭력범(性범죄 포함), 19%는 기타 범죄이다.

Chesapeake보호관찰소는 모두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명의 보호관찰관은 통상적인 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3명의 보호관찰관은 조사를 전담하며 1명의 선임보호관찰관은 1명의 집중감독보호관찰과 팀을 이루고 있고, 1명의 선임보호관찰관, 2명의 프로그램 보조요원, 5명의 사무요원, 2명의 부소장 및 1명의 관찰소장 등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때로는 저녁시간 또는 토요일에도 근무한다. 물론 긴급상황사건을 다루기 위해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다. 그리고 4명의 순회재판판사에게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자료를 보고한다.

Chesapeake보호관찰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한다. 전자감시, 분노관리교육, 집중감독, 약물남용교육, 동료지지그룹, 소변검사 등이며 이 지역 경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조직표 별첨 4).

Chesapeake시의 보호관찰 운영은 지역사회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경찰조직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호관찰사무소는 각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진(digital photos)과 기록을 그 지역의 지도(map)에 표시하여 이들의 활동상황을 경찰과 함께 감독/지도하고 있다. 이처럼 지도에 입력(geo-mapping)된 자료들은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증진시키고, 따라서 시민안전의 목표를 강화시킨다.

현재 Virginia주의 동부지역에서의 geo-mapping을 통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수는 6,000사례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각 지역

당 900달러 정도이다(별첨5. South norfolk Sex Offender).

geo-mapping 프로그램이 주는 장점들로서는 ;

- 지역경찰의 순찰과 감독의 강화로 신속한 문제의 파악
- 디지털 사진과 성명이 부착된 정보사용으로 경찰관이 보호관찰소에 관찰 대상자들의 문제제공을 용이케함
-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협력관계로 재범률을 감소시킴
- 경찰과 보호관찰관들과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의 안전과 시민보호에 효과증진(별첨 6. Chesapeake시의 범죄유형별 비율).

② 집중감독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198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주 전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은 과거 폭력범죄행위기록자들로서 위험정도가 높기 때문에 빈번한 접촉을 통한 증가된 감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포함되는 서비스에는 집중감독, 소변검사, 가택전자감시 또는 전화감청, 통행금지시간준수 및 전문가 처우의뢰 등이다. 2000년 8월 현재, 2,1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1,263명은 보호관찰대상자들과 903명은 가석방자들이다.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45명의 집중감독보호관찰관, 27명의 지역순회감시원 및 14명의 상임보호관찰관이 있다. 1999년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은 개인당 \$1,880이었다.

③ 가택전자감시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199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어 Richmond와 Winchester지역에서 실시되었다. 1992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현재는 주 전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가택전자감시 프로그램은 집중감독과 함께 운용되고 있다.

전화감청프로그램은 1998년에 시작되어 Newport News, Richmond 및 Manassas의 3지역에서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9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감시 장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발목에 채워지며 감시 대상자의 활동을 무작위로 자동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송신장치에 연결되어 있다. 전화감청장치 역시 무작위로 호출(Paging)을 할 수 있으며 감시대상자들이 지정된 장

소로부터 프로그램본부에 연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19개소의 전자감시 지역과 9개 지역의 전화감청소가 있으며 1999년도에 1,418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은 \$30의 참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1999년 \$110,000였다.

④ 성인수용시설

보호관찰대상자가 약물중독 또는 성범죄의 기록을 가진 자들로서 폭력성 기록이 없는 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내용들로서는 주거와 식사의 제공, 소변검사, 기본생활기술의 교육,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과 치료, 개인/집단 지도 및 직업알선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 당국이 일반전문기관에 서비스의뢰를 계약하며 한 사람 당 소요되는 하루 예산은 약 \$45정도이며 현재 주 전체에 매일 200개의 침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은 그들의 숙박비를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하며 1998년도 지불된 총액은 \$102,170 였고, 1999년도에는 \$121,535였다. 이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1998~1999년도에 \$2,585,600 였다.

⑤ 일일보고센터(Day Reporting Center and Drug Center)

이 프로그램은 1993년에 Fairfax에 처음으로 개설되었으며 현재는 Virginia주 전체 10개소가 있다. Richmond, Norfolk와 같은 몇 개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약물법정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난폭성이 없고, 주거와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며, 정신·신체적으로 정상적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에는 기본교육, 약물남용교육, 구직준비 및 분노억제교육, 소변검사, 지역사회 봉사, 필요한 경우에는 가택전자감시 등이다. 관찰대상자들의 욕구 정도에 따라 서비스가 증가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1999년도 주정부 예산은 \$3,971,512였다.

Shenandoah Valley일일보고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3개 부분의 과정을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다: 평가, 치료 및 전환

평가(Evaluation)과정은 관찰대상자의 욕구정도에 따라 적절한 개입전략을 수립하며 약 2주 정도 여러 심사를 거친다.

치료(Treatment)과정은 약 3~5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직업을 구하고 교육 훈련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봉사에 종사한다.

전환(Transition)과정은 약 1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직업과 교육훈련을 계속 하면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일반 보호관찰감독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어 지역사회에서 감독을 받는다.

Shenandoah Valley 일일보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는 2000년 8월 현재 66명이며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모두 12명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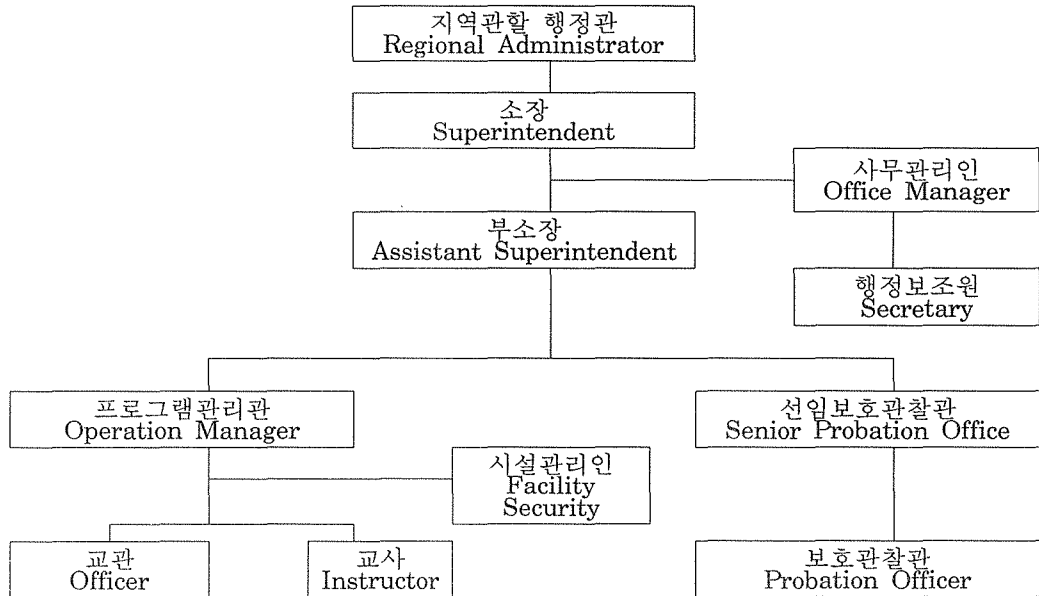
소장	1명
선임보호관찰관	1명
보호관찰관	2명
순찰요원	3명
사무요원	2명
약물카운셀러	2명
교육요원	1명

⑥ 군대식 캠프(Boot Camp)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주 교정국에 의해 운영된다. 정신·신체적으로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전과기록이 없는, 나이는 24세 또는 그 미만인 남자 보호관찰대상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훈련기간은 17주이며 포함되는 훈련내용에는 군대식 훈련과 예식, 짧은 식발, 금연, 허가 없이 대화를 못하며 제한된 전화사용 혜택 등이 있다. 또한 신체단련훈련과 작업(노동)윤리의식 강화 및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에 준 하는 교육을 받으며 직업 및 기술훈련 개발, 생활기술(life skills)과 약물남용교육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에 배속된 보호관찰관은 카운셀링과 환경전환 교육을 담당한다.

Southampton Boot Camp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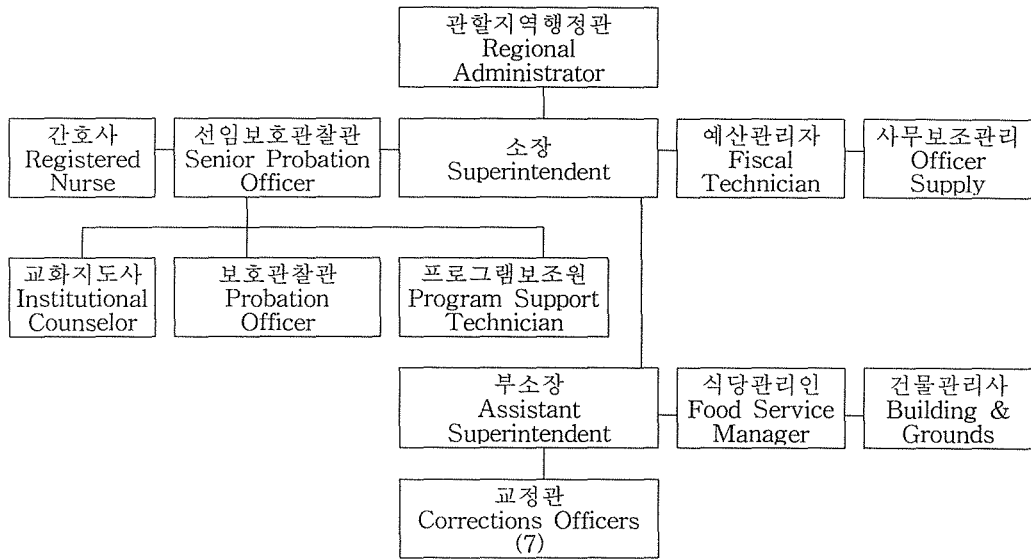
1999년도 운영세부자료

수용인원	89/100
지역사회봉사시간	21,391시간
고등학교졸업자격취득	40명
소요예산	\$2,010,706

⑦ 전환센터(Diversion Center)

이는 법원지정 남녀교육시설로서 1996년에 최초의 여자전환센터가 Richmond에 개설되었고 현재까지 모두 5개가 있으며 그 수용인원은 398명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범죄자를 전통적인 교정시설에서보다 지역사회내의 준 교정시설에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와 교육서비스에 참여시킴으로서 이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성인수용시설의 기준과 같다. 시설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충교육, 약물남용교육, 구직에 필요한 사회교육, 부모교육, 소변검사, 지역사회봉사 및 전환교육 등이다. 이 프로그램을 졸업한 이후에는 바로 집중감독프로그램에 배치된다. 훈련생들은 지역사회 내의 고용을 허락하며 이들은 제공받는 서비스를 지불해야 한다. 주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한 예산은 \$4,346,865였다.

Harrisonburg 남자전환센터 조직표



Harrisonburg 남자전환센터 훈련생들 고용기관 및 고용인원

단위 : 명

금속물 생산 공장 (1)	21
산업용 어름 공장 (1)	8
시멘트 작업소 (1)	5
지붕수리소 (1)	2
돼지, 닭 사육소 (5)	11
냉,난방 시설 공장 (1)	1
햄버거 식당 (4)	5
제재소 (2)	2
서적제본소 (1)	1
농장 (1)	7
카펫 설치소 (1)	2
건축자재소 (1)	3

임원의 직무

소장 :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보안, 처우, 안전, 예산)

주보호관찰국의 지침에 따라 규정과 절차 수립

부소장 : 시설의 모든 인력을 감독하고 보안에 대한 감시

시설운영의 모든 규정과 절차의 확인

가장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의 필요함을 개발, 계획 및 결정하는데 대한 소장에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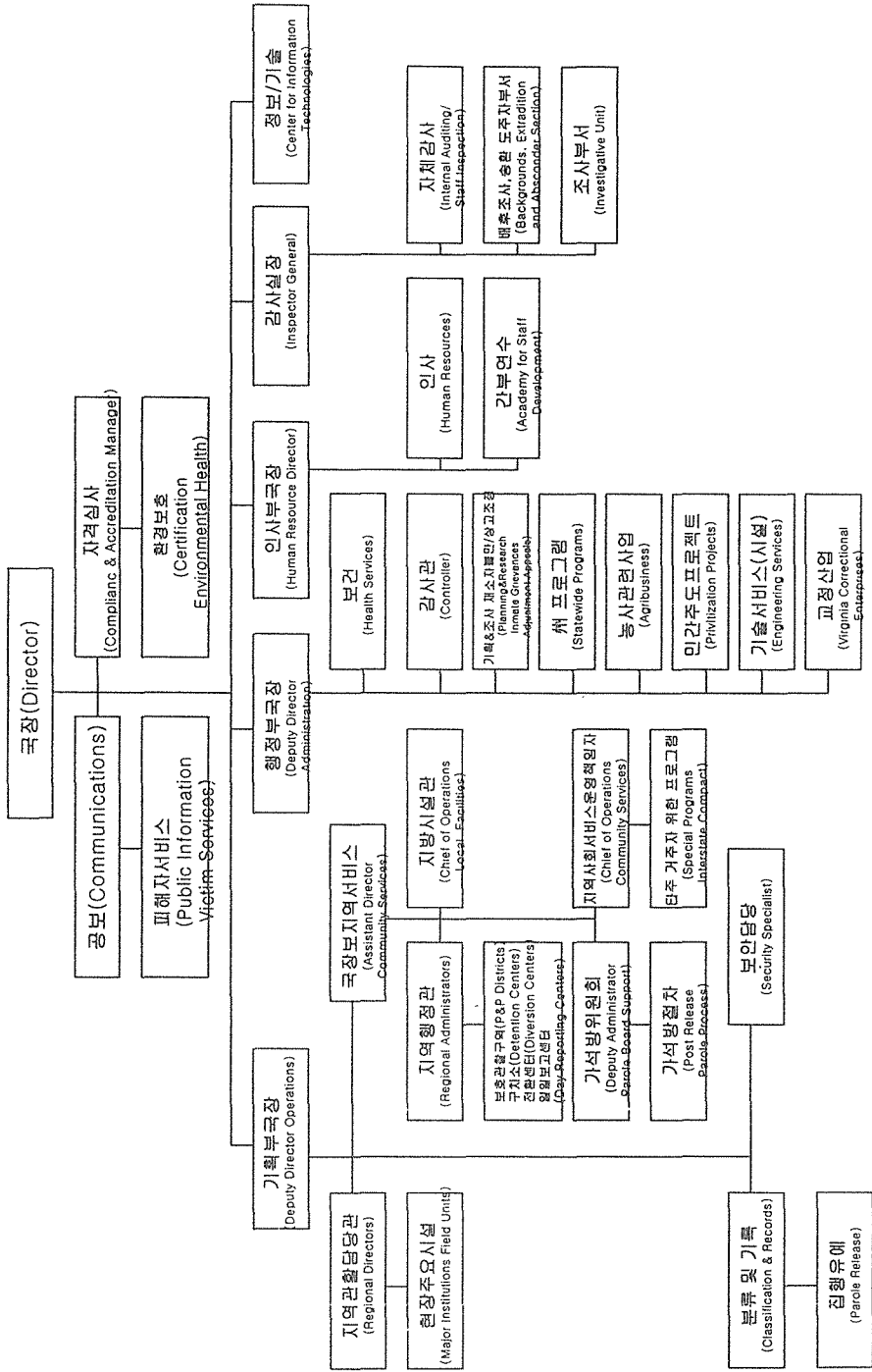
부소장보 :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과 감독, 시설유지/관리 및 농장 작업의 책임
 선임보호관찰관 : 시설프로그램에 입소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의뢰서 점검,
 교육생들의 활동상황기록 보관, 시설적응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보호관찰관과 프로그램 보조원의 감독
 프로그램 보조원 : 약물검사
 보호관찰관 : 교육생들의 감독, 선임보호관찰관의 보좌, 교육생들의 훈련,
 조정, 감독, 평가.
 시설 퇴원후의 활동계획 개발
 교회지도사 : 치료와 레크리에이션, 사례관리, 구직알선, 약물검사, 자원봉사자
 선임 및 감독, 개별 및 집단 카운셀링
 교정관 : 교육생들에 대한 보안과 감독
 운송책임과 방문객의 검사
 식당관리자 : 식단의 준비, 주문, 수납 및 위생관리
 간 호 사 : 건강관리, 약분배, 응급처치 및 의료기록 보관
 예산관리사 : 훈련생의 재정관리(현금, 고지서 및 조달)
 사무직관리사 : 타자, 서류정리, 전화 기타 사무관계 작업
 건물관리사 : 시설 전반의 건물과 시설관리 책임

Harrisonburg남자 전환센터는 100명의 훈련생 가운데 65명이 지역사회 내에서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은 공장의 노동직이며, 맥도날드 햄버거와
 같은 식당과 가축사육장 및 처리장에서 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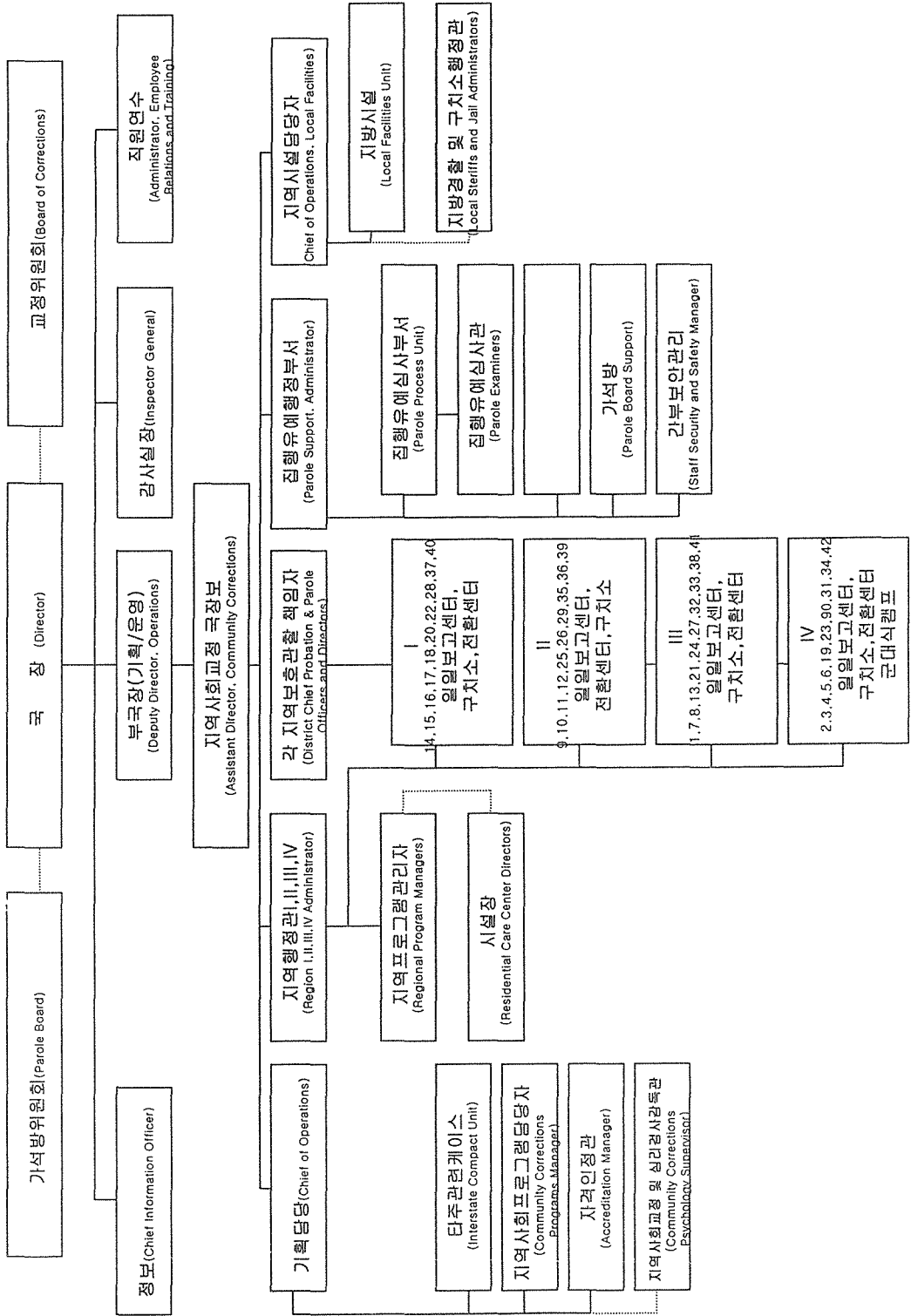
⑧ 구치센터(Detention Center)

이 프로그램은 법원지정 준 군대식 훈련시설로서 Virginia주에 4개가 있으며 1995년
 에 Southhampton에 처음 개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관찰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함이다. 모두 608개의 침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
 찰대상자들은 전환센터의 기준과 동일하다. 4~6개월 동안의 준군대식 훈련과 엄격한
 위생관리 및 제한된 특전(Privilege)이 주어진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에는 의료
 및 심리 카운셀링, 약물교육, 사회생활기술, 고등학교 졸업교육, 소변검사 및 전환교육
 등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은 1년 동안의 일반보호관찰 감독에 배치된다. 주정
 부가 4개의 구치센터 운영에 소요한 예산은 \$7,518,632였다(1999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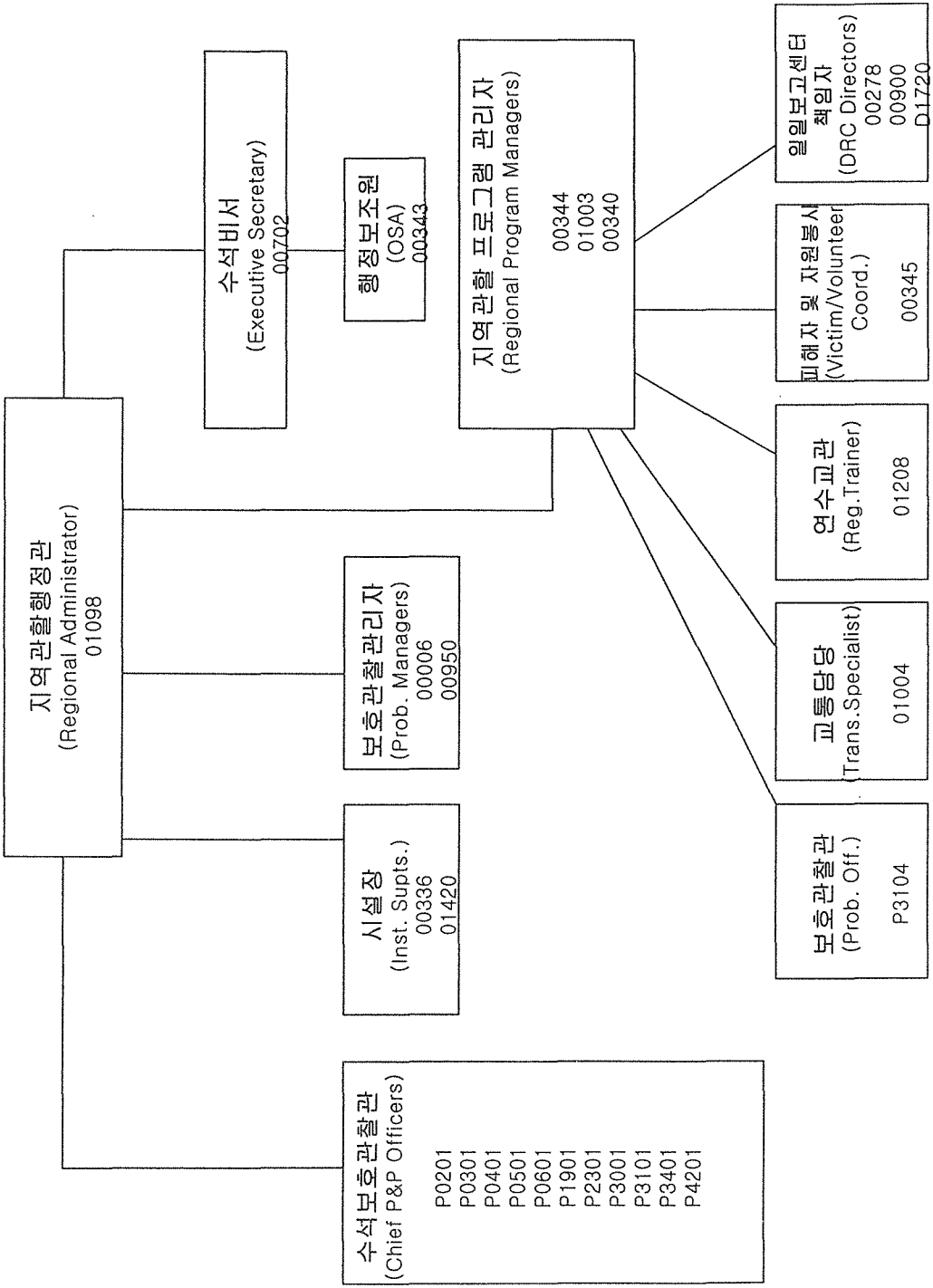
기능적 구조(Functional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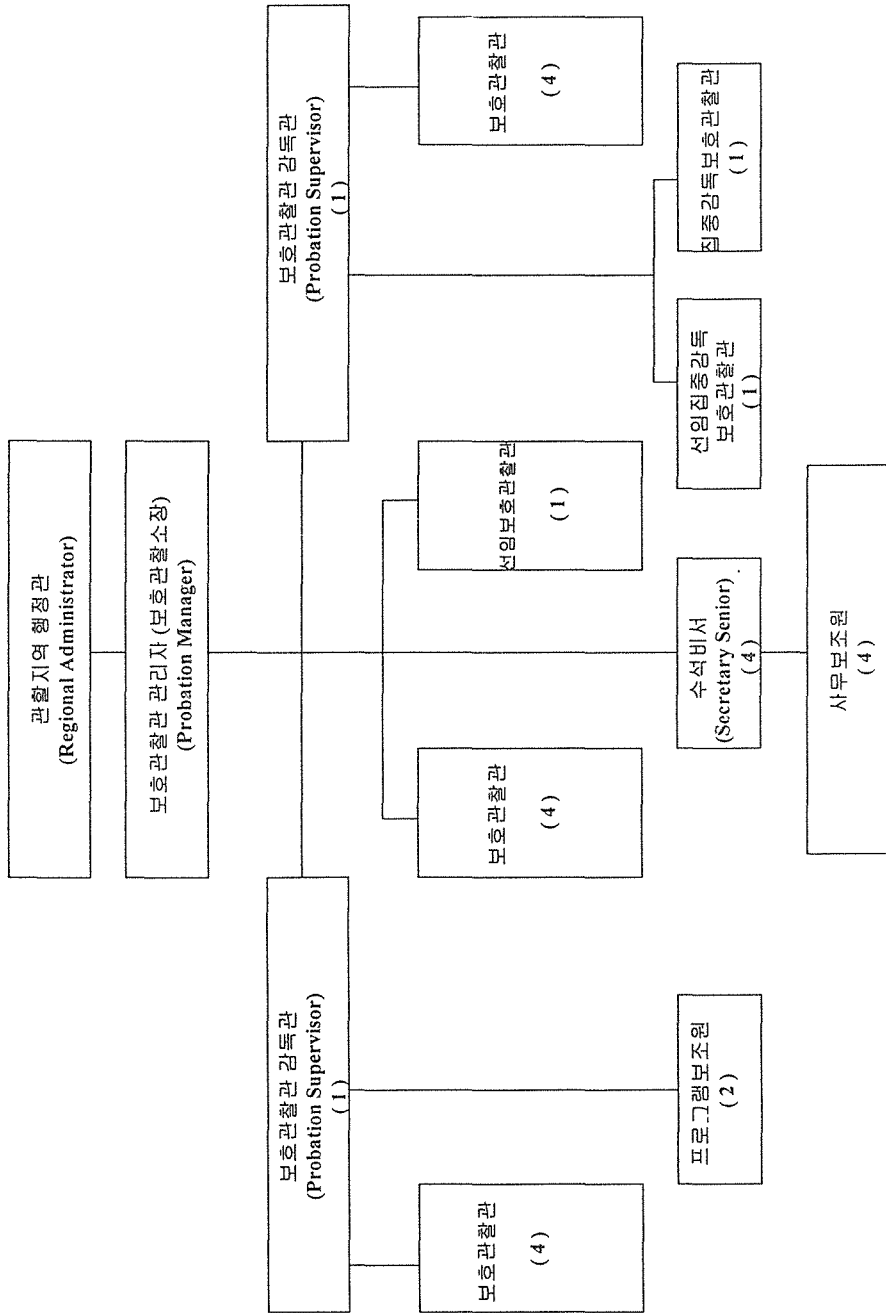
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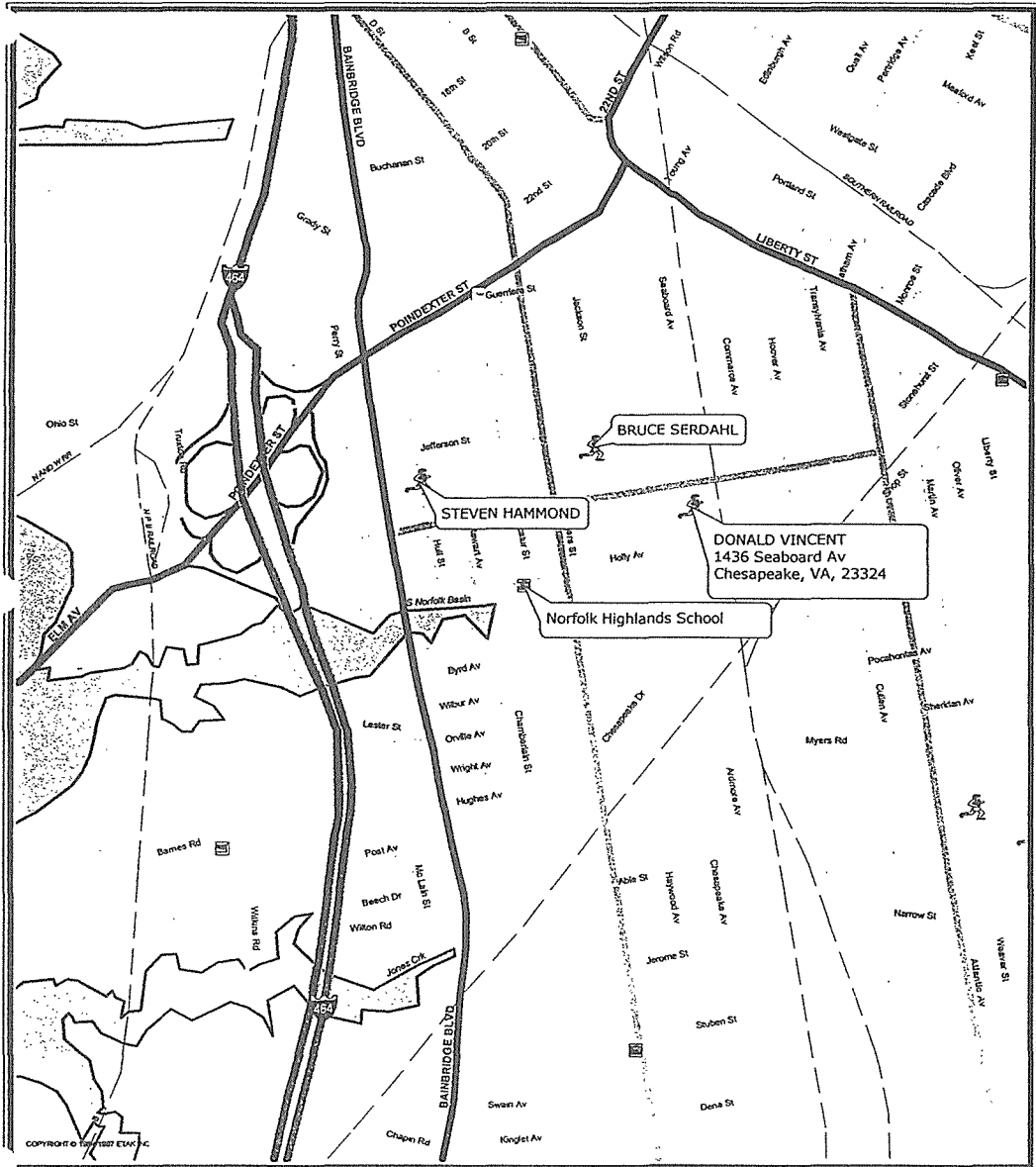
별첨 3 Eastern Region Community Corrections



Chesapeake 보호관찰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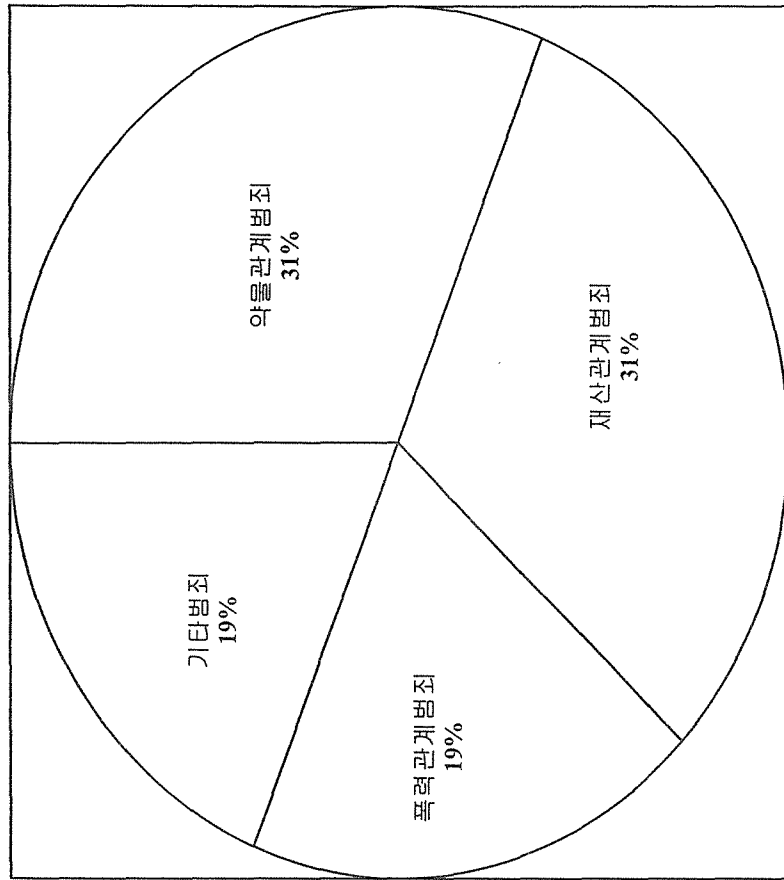


South Norfolk Sex Offenders



© 1999 by Rand McNally & Company. All rights reserved.

Chesapeake시의 범죄유형별 비율



2. 英國(United Kingdom)

국제사회에서 公用되고 있는 영국의 호칭은 연합왕국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 호칭은 England와 Wales(이하 E&W라 한다)를 의미한다. E&W는 전체 영국의 인구 58,755,119(2000년 현재)명 중 88%에 해당하는 약 5,17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E&W는 1998년 147만 명이 범법자로 법원의 刑을 받았으며 이는 1997년보다 6%가 증가한 숫자이다. 이들 중 100,600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의 범죄자들이다. 또한 법원은 기소된 사건들(indictable offenses)의 23%를 시설구금형(교도소 수감)으로 처리하였으며, 28%는 비 시설구금형, 즉 지역사회 안에서 형의 운용과 집행을 관리하는 지역사회형(Community Sentence)인 보호관찰처분을 하였다. 보호관찰 처분의 85%는 치안법정(magistrate courts)에 의하여 다루어진다(치안법정은 전문법조인과 비전문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경미한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관계 사건은 대부분 형사법정(crown courts)에서 취급된다(White Field, 1998).

E&W의 보호관찰 서비스는 54개의 지방관할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욕구와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지금까지는 5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2001년 4월 1일부로 42개 지역으로 축소되며 하나의 중앙본부가 모든 지역의 보호관찰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각 관할구역이 각기 필요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지방사법부의 간부와 지역주민의 주요인사들에 의해 구성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Probation Committee)의 감독을 받고 있다.

1) 보호관찰제도의 구조와 조직

E&W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은 현재 54개의 관할구역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제도의 법규 및 기본철학과 서비스 정신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원칙에 준 한다. 정부의 기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Sanders, 1994)

(1) 중앙정부 형무국(Home Office Criminal, Department)

형사정책과 형사사범을 다루는 부서로서 형사사범부내에 보호관찰 부서와 황후(왕립)보호관찰 檢閱부(Her Majesty Inspectorate of Probation)가 있다(Home Office, 1999).

황후보호관찰 검열부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효율과 효과성을 평가하며 그 개선과 건의를 수행한다. 예컨대;

- ① 보호관찰 서비스의 결과를 검열하고 그 질과 가치를 평가한다.
- ② 법원, 교도소, 범죄자에게 주어진 서비스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 조사한다.
- ③ 최고수준의 관리와 행정을 촉진한다.
- ④ 보호관찰과 기타 관련 업무를 중앙정부에 보고한다.

(2) 지방정부기관의 조직

각 지방의 모든 保護觀察所 운영은 각 관할구역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Local Probation Committee)에 의하여 統制받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54개의 지방관할구역에 보호관찰소가 운용되고 있다. 2001년 4월 1일부로 지방관할 구역은 42개 지역으로 축소되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각 지방 보호관찰소 기구의 조직은 첨부자료 1과 같다.

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관의 채용과 이들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제반 규정을 통괄한다. 위원회는 보호관찰 프로그램 수행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 경비를 지원 부담한다(정신 질환 시설, 관찰대상자들의 교통비(법정출두), 보호관찰 사무경비 및 연수비용 등).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운영의 기준을 존중하나 각 보호관찰소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 E&W의 지방보호관찰소는 그 운영예산의 80%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만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달한다(日 法務省 保護局, 1998).

- 구성

모든 보호관찰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기관은 치안판사, 대법관이 지명한 재판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선임한 법조 자격이 없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법조 자격이 없는 자도 위원회에 선임될 수 있지만, 보호관찰위원회의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치안판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보호관찰위원회는 임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임명하고 타 기관에 배치하며 규정된 급여, 수당, 제 경비를 지불한다.

또한 그 활동에 관해 내무성 장관에 보고 책임이 있고 사건 기록은 기간 종료 후 적어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의 열람은 보호관찰위원회가 허가한 자와 내무성의 왕립 감사관만 허용된다.

치료를 위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거주지를 지정 받은 대상자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재정상의 원조를 인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출두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내무성과의 관계

내무성은 지방보호관찰위원회에 대한 직접 지휘 권한이 없으나 보호관찰위원회는 보호관찰소에 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내무성에 의한 통제는 자금, 정책목표, 범죄자 지도감독에 대한 전국의 통일 기준을 권고하고 각 지역 보호관찰소를 전국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에만 한한다.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구역에서 선출된 일정수의 위원을 보호관찰위원회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보호관찰위원회는 자발적으로 1인 또는 2인의 위원을 지방자치체로부터 선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적 자금의 효과적 운용과 사회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 보호관찰위원회에 관여한다.

- 보호관찰소와 검찰제도

1988년이래 보호관찰관에 의한 정보제공시스템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소, 검찰청, 경찰의 공동시스템에 구류 중 또는 보석중인 피의자에 관해서, 보호관찰관이 일정 양식에 기초하여 검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양식에는 피의자의 성명, 연령, 성별, 구류 이유, 성장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현재 수혜 받는 서비스 또는 감독, 기타 참고사항 및 각 정보의 입수 방법의 요점이 간결히 기재된다. 검찰관은 이 보호관찰소로부터의 객관적 정보와 경찰로부터의 정보를 대비하여 검토할 수 있다.

- 재판제도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

- 법원주재 보호관찰관의 역할

일상적 연락 조정 사무

- 보호관찰관, 법원, 관계자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정 등
- 판결전 조사보고서(Pre Sentence Report)를 법정에 보고
- 특정의 피고인에 대하여 조치나 활동 등에 관해 구두로 법원에 보고
- 피고인 담당의 social case worker와 연락
-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 복지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피고인에 대한 원조 제공

- 선고 직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면접을 행하고 긴급 개입 필요성을 조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정신장애에 관계하는 사무

- 법원 보건, 사회복지, 기타 형사사법 관계기관간 상호 연락 협조
- 경찰에 범죄자에 관해 조언
-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실시
- 검찰청 및 법원에 정신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보석치료 등의 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
- 보호관찰소는 정신장애 범죄자에 관해서 각종 연락 조정

법원에 자료 제출

판결전조사 보고서의 구성

- 혐의에 대해서 ; 범죄 사실과 그 중대성, 범죄자의 태도 등
- 범죄자에 관한 관련 정보 ; 혐의와의 연관성, 전과, 심신의 상황과 문제점

비구금 처분 촉구대상

- 폭인, 여성, 정신장애 유형의 범죄자의 보호에 관련된 것

구두보고

- 판결전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두로 보고
- 법정 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간단한 면접을 행하고, 그것을 기초로 보고

● 교정제도와 보호관찰소와의 관계

시설주재 보호관찰관(Secondded Officer)제도를 통하여 보호관찰소와 교정 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전국보호관찰소장협회가 제정한 시설주재보호관찰관의 직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결 성인수용의 경우

- 문제해결조언, 악영향감소, 원조 등 정보제공으로 시설을 보조, 협력하는 것
- 구금중인 자의 자녀들 또는 사회보호방치 시 긴급 행동
- 보석의 정보 제공
- 필요시 social work 제공
-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유죄판결 성인수형자의 경우

- 수형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전문적 social work 프로그램 제공
- 복지 서비스나 정보 제공을 위해 교도소의 관리, 직원과 공동으로 활동
- 석방 준비를 위해 수형자, 보호관찰관, 교도소 직원과 협력하는 것

- 형 집행 계획 수립과 석방 준비 정보 제공
- 아동보호에 가장 적절한 보호기준 적용
- 형 집행 기간 중이나 석방 시에 수형자와 그 가족에게 원호 및 지도감독을 관할하는 타 원조 기관과의 연락 촉진
- 적절한 사회자원에 관한 정보를 교도소에 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조언
- 보호관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구금중의 관련 사항을 조언
- 계속적 처우 실천과 사회자원의 배분이 조기 석방에 관련되어 계속적 처우 실천을 관찰하고 평가

② 보호관찰소의 역할, 인력 및 예산

법원(정)과의 연락업무조정과 보호관찰관이 준비한 판결전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판결전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자의 동기
- 피해자에 미친 범죄의 영향
- 보호관찰 처분의 형벌로서 적절성
- 감독계획

보호관찰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원 요청에 의하여 치안 법정과 형사법정에 보호관찰소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아동과 가정 문제에 관한 역할은 혼인관계처분법(The Matrimonial Proceeding Act)에 따라 이를 전문화하는 보호관찰관이 있으며 이를 가정법원사회사업가(Family Court Welfare Office)라 칭한다.

보호관찰관의 숫자는 1994년에 7,8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12월 현재 7,500명에 이르고 있다(1999년에는 300명의 보호관찰관들이 새로이 채용되었다). 1998년의 여성보호관찰관의 비율은 48%에 달했으며 보호관찰소장(Chief Probation Office)의 26%가 여성이다. 그리고 교도소에 파견된(Seconded Probation Officer) 보호관찰관은 1998년 현재 7.8% 이다. 보호관찰소의 직제는 별첨1과 같다.

소장(Chief Probation Officer)

각 보호관찰구역의 모든 보호관찰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내무부(Home Office) 직무행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방관할구역의 보호관찰소 운영은 그 지방의 보호관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장의 임명 또한 보호관찰위원회가 결정하며, 비 보호관찰계 전문인이 소장직에 임용될 수도 있다.

부소장(Deputy Chief Probation Officer)

지역관할의 보호관찰 서비스 행정을 총감독하며 소장을 보좌한다.

소장보(Assistant Chief Probation Officer)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며, 관할지역 및 업무 중심 분담으로 소장보의 역할 분담은 구분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지역의 관찰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고, 후자는 프로그램별, 즉 시설, 연수 및 지역사회 봉사(사회봉사명령)를 관장한다.

선임보호관찰관(Senior Probation Officer)

보호관찰서비스 운영에 가장 중요한 간부요원으로 일선 보호관찰의 업무수행을 지도 감독한다. 선임보호관찰관의 업무는 법원에 제출하기 전 판결 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관찰대상자의 지도 감독과 법원이 규정한 보호관찰의 제반 준수사항을 관리한다. ; 사회봉사명령, 시설주재관찰관 지휘감독, 연수, 법원의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등등.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지역사회형벌처분, 즉 보호관찰처분을 받은자를 직접 접촉하고 감독지도하며 보호관찰서비스를 수행하는 일선의 현장 간부이다. 포함되는 업무의 내용에는 ;

- 판결전 보고서 작성,
- 보호관찰조건의 집행,
- 갱생보호시설의 운영,
- 교도소 재소자들의 적응생활의 지원 및 계획,
- 가정법원에 관계되는 제반 정보제공 및 협력관계 수립 등이다.

기타 직원

보호관찰 서비스 운영을 돕는 기타 직원(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은 1999년 12월 현재 8,000명이었으며 익년에 비해 7% 증가되었다.

보호관찰 서비스 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 1. 보호관찰서비스인력

E&W(1998년 12월 현재)

단위 : 명

종 류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보호관찰관	6,601	6,743	6,909	7,153	7,484	7,666	7,776	7,455	7,312	7,149	7,191	7,500
비보호관찰관	6,222	6,476	6,867	7,188	7,412	7,663	7,755	7,369	7,076	6,819	6,612	8,000
계	12,823	13,216	13,776	14,340	14,896	15,329	15,531	14,824	14,388	13,967	13,803	15,500
기숙시설요원 (Hostell Staff)				705	808	901	874	878	845	841	855	300
계				15,045	15,704	16,230	16,405	15,702	15,233	14,809	14,658	15,800

표 1(내무성 보호관찰통계, 19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서비스 운영에 관여하는 인력은 1994년에 총 16,405명으로 가장 높은 인력의 증가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되어 1999년에는 15,800명으로 다시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E&W의 보호관찰 당국에 의하면 앞으로 인력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예산 추정도 훨씬 높게 잡고 있다.(별첨2 참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보호관찰서비스 운용에 비 보호관찰 인력의 참여가 보호관찰관의 수보다 많은 점이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을 위한 목적에서이다.

다음은 성별로 본 보호관찰관의 비율이다.

표 2. 보호관찰관의 성별비

E&W(1998. 12)

단위 : 명

성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남성	3,760	3,748	3,763	3,763	3,835	3,797	3,761	3,594	3,461	3,327	3,234
여성	2,841	2,995	3,143	3,390	3,649	3,869	4,015	3,861	3,851	3,822	3,956
계	6,601	6,743	6,909	7,153	7,484	7,666	7,776	7,455	7,312	7,149	7,191

표 2(내무성 보호관찰통계, 19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보호관찰관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98년 12월 현재 여성이 남성보다 10% 더 많다. 이는 여성 보호관찰관이 남성보다 개별상담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의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보호관찰서비스 인력의 직급별 현황이다.

표 3. 직급별 보호관찰인력

E&W(1998.12)

단위 : 명

직 급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소장	55	54	55	55	55	55	55	54	54	54	55
부소장	24	23	25	24	23	26	22	25	15	15	13
소장보	185	190	195	210	230	242	248	240	246	207	203
지역관리관										40	45
교육담당	7	7	7	7	6	5	3	3	3	6	24
선임											
가정법원관찰관	63	62	68	75	84	85	86	81	74	73	57
기타현장관찰관	811	834	851	867	898	923	841	895	850	769	744
교도소주재관찰관	118	121	119	120	123	126	124	117	109	93	110
기숙시설관찰관	66	72	78	82	87	93	87	83	77	76	71
기타	20	19	20	19	23	23	18	10	11	8	6
계(선임)	1,078	1,108	1,135	1,163	1,215	1,249	1,255	1,185	1,121	1,020	988
일선현장보호관찰관											
가정법원	388	415	459	527	539	561	626	604	623	599	555
기타현장	4,401	4,446	4,531	4,633	4,839	4,909	4,957	4,715	4,679	4,579	4,642
교도소주재	405	426	426	458	498	506	511	523	458	452	499
기숙시설	56	71	73	76	77	86	78	85	93	92	79
기타	3	3	1		2	26	20	24	20	13	21
계	5,252	5,361	5,492	5,694	5,955	6,088	6,192	5,949	5,874	5,734	5,794
총계	6,601	6,743	6,909	7,153	7,484	7,666	7,776	7,455	7,312	7,078	7,120

표 3(내무성 보호관찰통계, 19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12월 현재 총 보호관찰관 7,120명 중 81%인 5,794명이 일선 현장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감독지도하는 인력이며, 19%는 서비스관리를 위한 행정관련 인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E&W의 보호관찰 서비스 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 법원과 교도소에 파견 근무하는 보호관찰 인력이 약 14%를 보이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수

1999년 말 현재 E&W의 교도소 인구는 65,000명이며 보호관찰서비스 감독을 받고 있는 관찰대상자들의 숫자는 위의 2배정도로써 범죄자의 모든 숫자는 207,000명이었다.

다음의 표는 지난 10년간의 보호관찰대상자 현황이다.

표 4. 감독유형에 따른 보호관찰서비스를 받은 숫자.

E&W(1998.12)

단위 : 천명

감독유형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보호관찰명령	52.4	54.6	49.7	54.3	54.1	60.7
사회봉사명령	23.9	27.0	31.6	36.9	32.5	39.7
위의 결합명령			1.4	14.2	19.7	27.0
1969년 시행						
아동 및 청소년법명령	5.3	3.4	2.2	2.3	2.7	2.3
벌금명령	7.3	8.2	7.4	6.5	7.9	7.2
합 계	87.0	89.6	88.5	107.3	110.3	129.8

표 4(내무성 보호관찰통계, 19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의 보호관찰대상자 수가 가장 높았다. 결합명령은 1998년의 형사법정명령과 보호관찰대상 수의 약 21%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의 보호관찰명령처분의 34%는 음주운전교육참여를 보호관찰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동년의 평균 보호관찰감독의 기간은 16.8개월이고, 한 사람의 보호관찰명령 감독을 위한 평균 비용은 1,700파운드(1파운드 당 1,650원)로서 우리 돈으로는 약 280만원 정도다. 약 5만 명이 사회봉사명령(결합명령 일부 포함)서비스를 받았고, 이 숫자는 1997년의 4% 증가이다. 사회봉사명령의 평균 시간은 125시간이었으며 1998~1999년 동안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평균 비용은 1,400파운드, 약 231만원 정도다.

상기 두 명령의 결합 명령은 1998년에 21,000명이었으며 이는 익년에 비해 9% 증가한 숫자이다.

보호관찰관들이 법원에 제출한 판결전 보고서의 수는 1998년에 234,700건이었고, 이는 익년에 비해 3%증가한 숫자이다.

1998년 12월 현재 가석방 전후감독(Pre & Post Release Supervision)의 숫자는 48,000명이었고, 이는 익년에 비해 7% 증가한 숫자이다.

예 산

E&W가 형사 사법제도 운영에 필요한 2000~2001년에 추정하는 예산은 첨부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 사법제도의 예산은 약 130억 파운드(21조 원)이다. 교도소 예산은 21억 파운드(3.5조원)이며, 보호관찰제도 운영예산은 6억 파운드(9,900억 원)이다. 교도소 운영예산이 전체의 16%임에 비하여 보호관찰예산은 4.5%이다. 지난 10년간(1988/9~1998/9)의 보호관찰예산 상황은 다음과 같다.

E&W

단위 : 백만파운드

1988/89	1989/90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221.2	250.7	290.8	334.0	364.7	392.9	413.8	411.6	442.3	426.5	431.3

보호관찰서비스는 지방관할 당국에 의해 그 재정이 지원되나 80%의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③ 보호관찰관 선발기준과 예우

E&W의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는 주요전문요원은 전통적으로 사회사업(Social Work)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개별지도(Casework)의 개입전략을 관찰대상자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들에 한정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관찰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에의 적응에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호관찰관 선발기준의 전공영역을 확대하였다. 사회학, 심리학, 아동학 및 기타 사회과학 분야의 영역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들 중에서 선발한다.

1997년 7월 내무장관(Home Secretary)은 새로운 보호관찰관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보호관찰관의 자격을 인정하는 국립직업면허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포함하여 대학의 학부에 보호관찰분야를 전공하는 학위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한다. 이 같은 조정은 직업고용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보호관찰관들의 선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간부들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보호관찰학위와 국립직업면허증은 대학에서의 이론과 현장에서의 감독된 실습과의 병합으로서 보호관찰관 양성을 위해 개발된 작업기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자격조건이 보호관찰관 훈련생의 과거의 직업, 교육 및 경험을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교육방법을 통하여 다루어짐으로써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새로운 보호관찰의 교육을 사회사업교육에만 관여시키지 않을 것이며 범법자의 지도감독이 통합적인 방법으로서 정부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독립된 보호관찰 전공분야 개발을 지지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범법자들과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범죄의 감소에 두고자 한다.

이 같은 조정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보호관찰관들을 선발하기 위해 보호관찰 조직과 대학당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할 것이다.“

출산휴가 : 출산휴가는 직원의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휴가의 기간과 급여의 지급은 근무연한이 분만을 위한 입원 전 11주를 시점으로 하여 1년 이하의 경우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④ 자원봉사자

E&W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협조에 커다란 기대와 의존의 정도는 평가되고 있지 않다. 자원봉사자 협회(Society of Volunteers Association)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그들의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제도에 일종의 압력단체(Pressure Group)역할을 하고 있다.

⑤ 교도소 주재 보호관찰서비스

E&W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주요한 구성요인의 하나로서 교도소주재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의 예를 런던 교외지역에 위치한 Woodhill왕립 교도소의 운영에서 찾아보겠다.

교도소주재(Seconded)의 보호관찰서비스는 교도소장과 선임보호관찰관과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교도소의 상근 인력구조와는 독립적으로 관리운동되

는 서비스이다. 교도소주재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재소자들의 시설내 적응과 석방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있다.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이들이 적용하는 서비스들로서는;

- 형 집행계획(Sentence Planning),
- 옳은 길로의 인도(성향지도, Pathfinder) 및 카운셀링(Counseling),
- 사정(Assessment), 의뢰(Referral), 충고(Advice) 및
- 지속적인 보호(Throughcare)서비스(CARATs)가 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지속적보호서비스(Throughcare Services)라 한다.
- 지속적인 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재소기간 동안 시간의 효율적 사용
- 재범 가능성의 위험 감소
- 준법시민 생활의식 고취
- 석방 후 유익한 생활
- 범법행위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
- 석방을 위한 작업의 경험, 훈련 및 교육
- 재소자의 생활진전상태 검토 기획 제공
- 시설구금기간동안 재소자를 위한 조정역할

Woodhill왕립교도소의 보호관찰인력과 예산(2000 년 6월)

선임보호관찰관 1명	32,937파운드(5,434만원)
보호관찰관 4.5명	127,704파운드(2억 1천만원)
보호관찰행정관 1.5명	30,066파운드(4,960만원)
교통 및 마일리지 수당	11,187파운드(1,850만원)
생계(Subsistence)수당	400파운드(66만원)
2.5% 행정비	5,113파운드(844만원)
총계	209,622파운드(3억 4천 9백만원)

Woodhill왕립교도소 보호관찰관의 역할

선임보호관찰관(Senior Probation Officer)

- 보호관찰서비스 이행 및 보고(소장에게)

- 교도소주재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 약물남용자 관리/감독
- 대체보호관찰 기금 및 외부기관계약의 관리
-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관리
- 증진(향상)된 사고(思考)기술관리
- 복합훈련관리팀 운영
- 자원봉사 카운셀링 관리
- 외부방문 위원회 위원
- 인종관계 관리팀 위원

보호관찰행정관(Probation Service Officer)

- 보석금 정보 확인
- 보석금에 대한 자료보고(선임보호관찰관에게)
- 보석금에 관한 자료의 컴퓨터 작업
- 케이스에 적절한 보석금 관리기관 소개

보호관찰관(청소년 범법자 담당)

- 프로그램 조정의 자문
- 프로그램 유지체계 개발
- 평가개발과 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 지침서 개발
- 일대일 개별지도
- 적절한 시설의뢰
- 개별적 지속보호 기록개발과 관리
- 평가 목적을 위한 면담

보호관찰관(근접감독 프로그램)

- 재소자의 개인적, 사회 및 가족상황에 관한 위험요인 사정
- 개별지도
- 서류검토와 케이스 회의를 통한 위험관리

- 전국 근접감독센터 교육에 참가
- 석방시 시민보호계획 수립
- 재소자의 사회성 개발 지원
- 약물교육

보호관찰관(CARATs 서비스관리자)

- 다양한 약물남용교육의 조정
- CARATs 간부의 책임과 임무를 확인, 감독 및 검토
- 교도소 전반에 CARATs프로그램 개발
- 분기별 보고를 선임관리팀에 제공
- 연중보고서 작성
- 약물남용교육에 참가

보호관찰관(지속적 보호담당)

- 교도소 전반에 형 집행 계획
- 지속적 보호관찰관과의 자문
- 종신형수와 상담
- 카운셀링의 적합성 평가
- 건강관리 중재
- 약물치료자 관리
- 약물관리 강의

⑥ 가석방 절차

가석방 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작업이 요구된다(Report of Parole Board, 1998~1999).

가석방위원회 서기(Parole Clerk)는 재소자의 가석방 신청부터 가석방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26주간의 작업에 관여한다.

서기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석방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하여 교도소 주재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소, 경찰, 법원, 건강보호국 및 기타 관련 부처에 통보한다. 서기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2개월 안에 완성해야 한다. 서

기는 또한 가석방 신청자를 위해 가석방 위원들과의 면접 계획을 조정한다.

교도소 주재 보호관찰관(Seconded Probation Officer)은 서기로부터 가석방 신청자의 통보를 받은 후 바로 보호관찰소 본부에 연락하여 신청자의 형집행 계획 목적을 수립함으로써 재소자의 정보에 관한 적절한 교환을 하게 한다. 가석방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교도소 주재 보호관찰관은 신청자와 신중한 면접을 진행하며 이를 통한 자료들이 가석방 심사위원의 평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도관(Prison Officer)은 가석방 위원회에 신청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전에 교도소 내의 다른 간부들과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자문 받으며 여러 번의 신중한 면접을 통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자와 토의한 후 가석방 위원회에 제출한다.

면접팀 관리인(Interviewing Team Manager)은 가석방 위원회의 최종결정 14~16주전까지 가석방에 필요한 면접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재소자들로부터의 요청과 불만을 처리하며 가석방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관계 당국의 서신에 응답하고, 기타 연락 사항을 다룬다.

민간인 가석방 위원(Independent Member)은 대학의 교수 또는 형사 사법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가석방 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위원은 가석방 심사 전에 신청자와 많은 시간의 면접을 통하여 가석방의 필요와 자질을 위한 검토를 한다.

보호관찰관(Probation Member)은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여러 결정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관은 최초의 법정출두로부터 형의 언도 및 감독절차까지 관여한다.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와의 집중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의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신과 요원(Psychiatrist Member)은 신청자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다양한 진단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 요원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 교도소의료진, 사회사업가 및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신청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다.

판사요원(Judicial Member)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의장 임무를 수행하며 가석방 심사를 위한 서류 및 구두 심사를 주관한다.

영국의 가석방 법규는 1992년 10월 1일을 전후하여 가석방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였다. 즉, 1992년 10월 1일 이전에 형의 언도를 받은 범죄자들은 그들이 수형 기간의 3분의 1을 완료할 때 가석방 신청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1992년 10월

1일 이후형의 언도를 받은 범죄자들은 그들 형기의 2분의 1이 완료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조기석방계획표(확정형 수형자)

1992년 10월 1일 이전 형 언도자		수형기간	1992년 10월 1일 이후 형 언도자	
보호관찰처분으로 감독	수감		수감	보호관찰처분으로 감독
	가석방 자격	$\frac{1}{3}$	가석방 자격	
	자동가석방	$\frac{1}{2}$	자동가석방	
		$\frac{2}{3}$		
		$\frac{3}{4}$		

예 : 1990년 1월 1일 6년의 형언도
(6개월간 구치소 수감)

- 1991년 7월 1일부터
보호관찰 감독하의 가석방 가능
- 1993년 7월 1일에 보호관찰감독
조건 없이 자동가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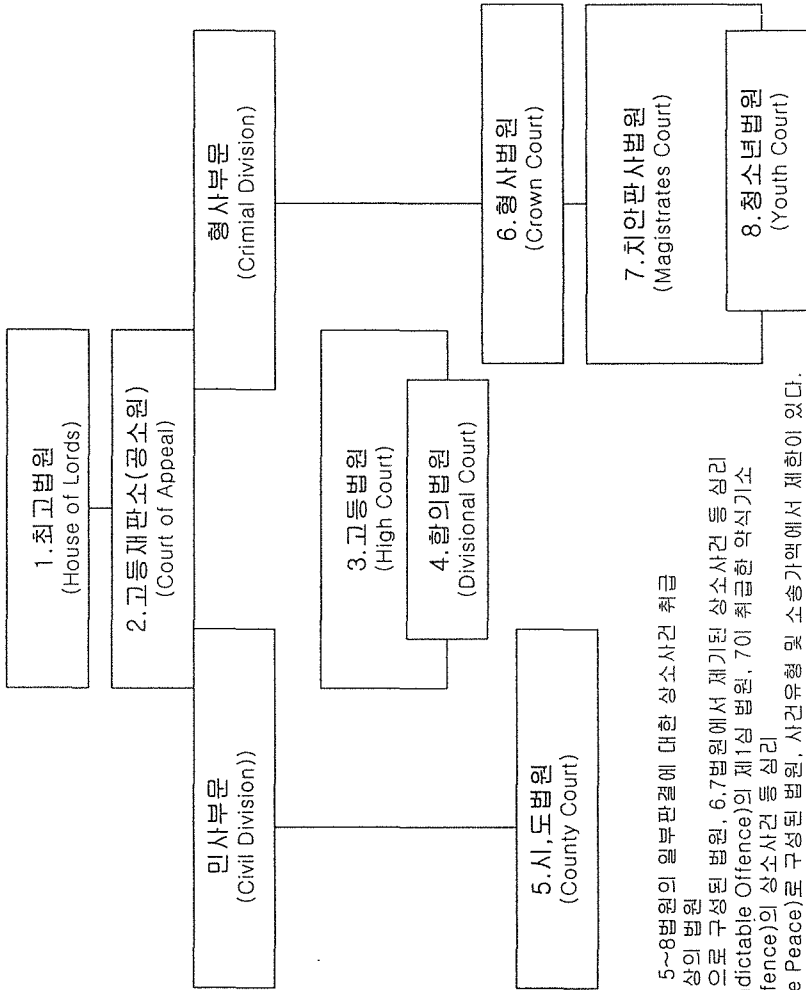
예 : 1993년 1월 1일 6년의 형언도
(6개월간 구치소 수감)

- 1995년 7월 1일부터
보호관찰 감독하의 가석방 가능
- 1996년 7월 1일자로 자동가석방

통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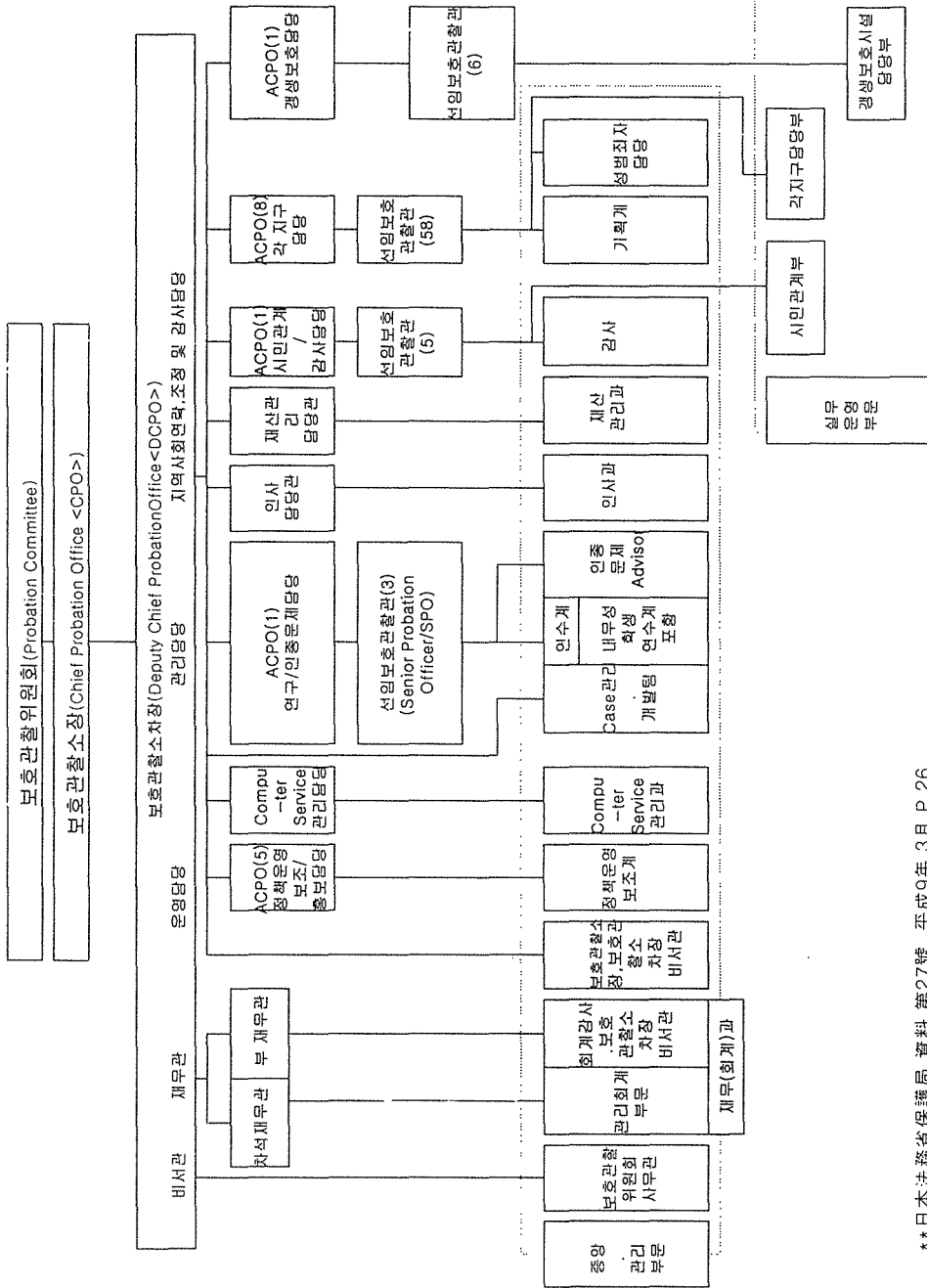
확정형의 케이스(1998-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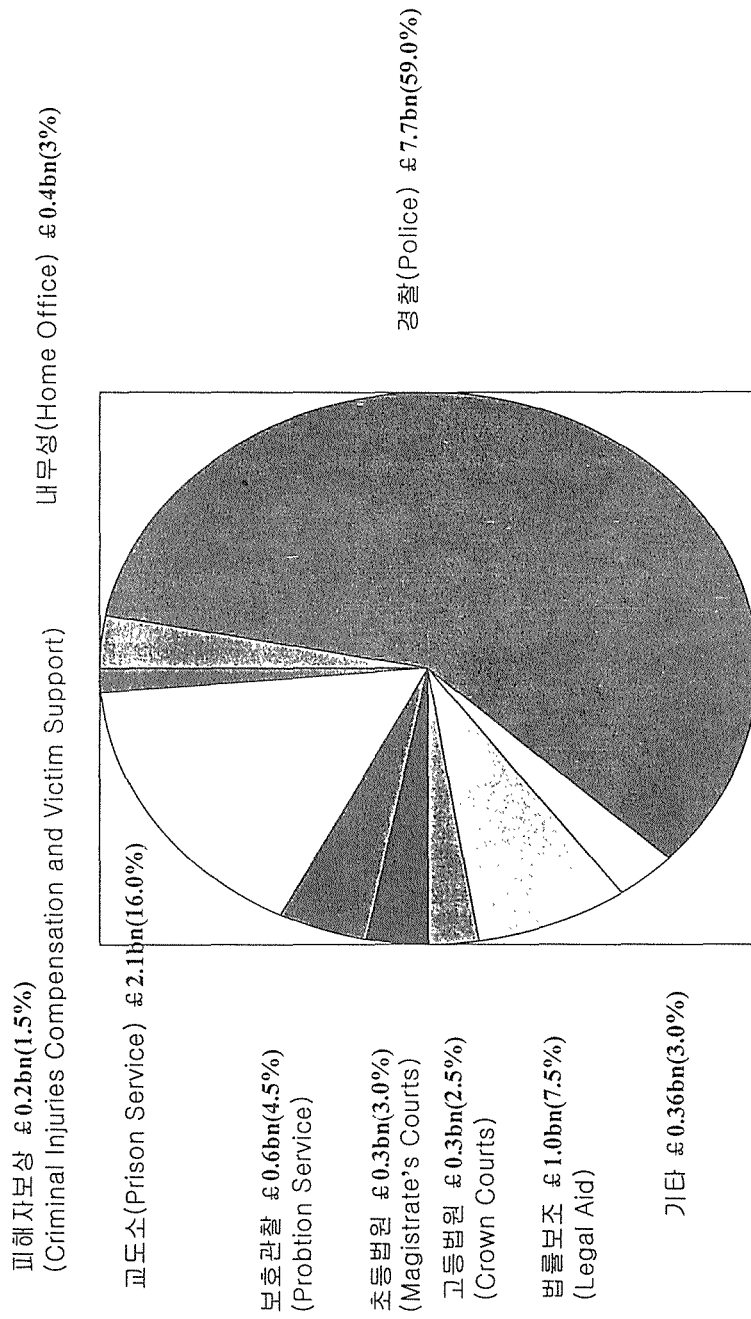
- 6,078명의 가석방 신청
- 39%의 신청자들이 가석방 자격 획득
- 평균 2,100명이 보호관찰 감독하에 있음
- 4% 가석방 자들이 구금시설로 귀환
- 각 케이스 당 309파운드(약 525,000원)소요



- 2,3 고등법원의 모든 판결, 5~8법원의 일부판결에 대한 상소사건 취급
 3. 제1심 관할권을 가진 통상의 법원
 4. 고등법원 판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원, 6,7법원에서 제기된 상소사건 등 심리
 6. 정식기소된 형사사건(Indictable Offence)의 제1심 법원, 7이 취급한 약식기소
 형사사건(Summary Offence)의 상소사건 등 심리
 7.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로 구성된 법원, 사건유형 및 소송가액에서 제한이 있다.
 8. 7의 경우 소년사건 심리법정
 *치안판사법원에는 비법률가의 비서관(무급)의 치안판사 및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상근 또는 비상근의 법률가(유급)가 배치, 단 대도시에는 법률가로서 상근 유급치안판사(Stipendiary Magistrate)가 배치

* 日本法務省保護局 資料 第27號 平成9年 3月 P.26





3.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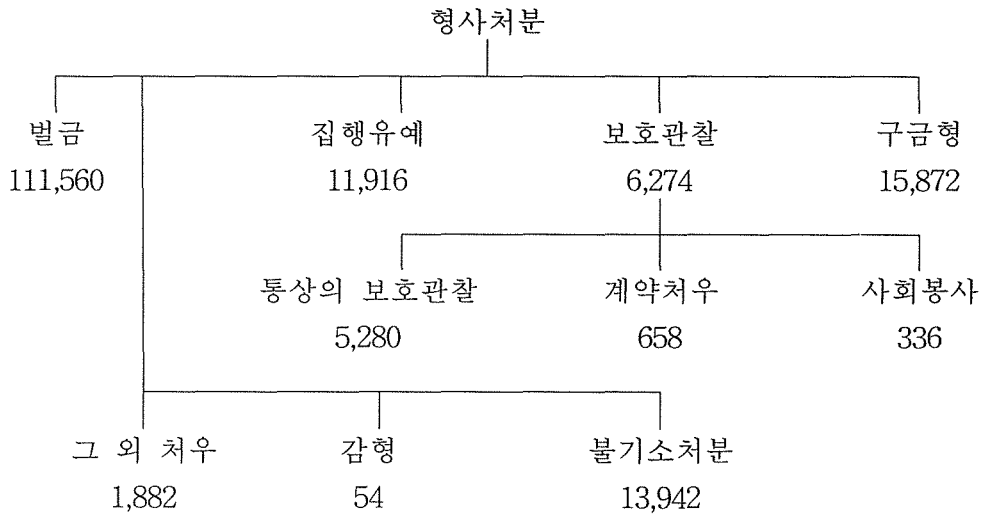
2000년 8월 현재 스웨덴의 인구는 8,861,426명이다.

이 중 약 14,000명이 형의 확정을 받아 매년 구금시설(교도소)로 보내지고 있다. 1990년을 정점으로 하여 약 16,000명에서 1998년에는 약 9,5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설구금 범법자의 감소현상은 90년대 초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전자감시제도와 더불어 집중감독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부터이다. 1998년 현재 구금시설의 일일평균 인구는 약 4,000명으로 한 사람의 재소자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는 일 일당 1,288SEK(1SEK는 120원에 해당)이고 스웨덴(Kriminalvårdens, 1999)은 현재 모두 55개의 교도소가 있으며 이들 중 6개는 여성 전용 구금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범법자들의 위험정도에 따라 경비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도소는 소규모 시설들로서 평균 45명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이다. 2~3개의 대형 교도소는 약 100~200개의 침상 정도를 갖춘 시설로서 범죄의 질이 사악하고 형량이 많은 죄수들만을 수용한다. 대부분의 스웨덴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극소수이지만)에는 1인 이상을 하나의 방에 수용하고 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UN인권규준에 따라 성인 수와는 분류 수감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교정/보호 정책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범죄의 감소, 둘째는 사회안전 증진이다.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재범방지 노력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에는 시설구금형으로 교도소, 조건부 석방과 보호관찰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감독프로그램이 있다.

이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스웨덴 정부는 5개의 지역 관할 행정구역에 37개의 지방 교정/보호관찰 서비스를 두고 있다.

스웨덴의 형법에 기초가 되는 원리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정상적인 준법시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우하는데 있다. 1965년 이후 제정된 형사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예를 들어 정신의학적 감호 또는 사회복지법에 기초한 감호의 대상이 되는 취지의 결정

벌금형 : 이는 피고의 경제적 여건에 기준 하여 30~150일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일일 30~1,000SEK를 부과하며 또한 이에 보호관찰 조건을 과중 부과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최고 2,000SEK이며, 과중부과의 경우 최고 5,000SEK까지이다. 벌금지불의 불이행시는 최고 3개월의 구금 처분이 가능하다.

집행유예 :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벌금형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2년간 준법 시민의 생활이 지속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러나 2년 내에 재범의 경우 최초의 죄과를 고려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보호관찰 (다음의 보호관찰제도 개요 참조)

1) 교정보호국(Prison and Probation)의 행정기구와 조직

교정보호국은 지역관할기관(Regional Authority), 교도소(Prison), 구치소(Remand Prison), 보호관찰소(Probation Services)등을 감독하는 국가의 중앙기관이다. 스웨덴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은 교도행정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그 이름도 교정보호(Prison and Probation Services)라 칭하고 있다. 별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조직은 교정서비스와 함께 조직되어 있다.

지역관구에는 교정보호 서비스 기관으로서 전국에 헤른센, 스톡홀름, 노르셰핑, 요테보르그 및 마르모 5개의 관구가 있다. 5개의 지역관구에는 37개의 지방 교정/보호관찰 서비스, 즉 교도소, 보호관찰소 및 구치소가 있다. 스웨덴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85%가 1년 이하의 구금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2개월 이하이다.

대형시설 교도소(2~3개)에는 1년 이상 구금형, 도주의 위험 가능자, 처우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요청되는 자들이 수용된다.

구치소 : 미결수 수용시설이나, 사회봉사, 아동 및 청소년 감호, 약물남용 또는 외국인 국외퇴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을 수 시간~수 일간 유치하는 시설이다.

보호관찰소 : 전국에 52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1998년 현재 보호관찰의 직원 수는 1,043명이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50명, 보호관찰관은 710명, 사무직원 240명, 의료진이 10명이고, 기타 33명이다. 이들 중 38%는 여성직원들이다. 각 보호관찰관 당 평균 사례관리 수는 35명 정도이다.

다음의 표1, 2, 3(Kriminalvårdens, 1999), 즉 범죄유형, 성별 및 형기간에 따른 구금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과 1998년의 재소자 총인구는 각각 9,112명 및 9,297명이다. 이들 중 재산관계 사범이 25.4%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폭력범, 마약사범 및 알콜사범, 각각 17.2%, 14.3% 및 1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의하면 여성의 구금형은 5.7%이며, 형 기간별 통계는 2개월 미만이 30.1%, 2~6개월이 33.3%, 6~12개월이 19.9%인 것으로 볼 때 1년 미만의 형 언도를 받은 자들이 1998년에 83%임을 알 수 있다.

표4, 5 및 6(Kriminalvårdens, 1999), 즉 죄과, 연령 및 보호관찰 종류에 따른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죄과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총 숫자는 11,686명이다. 이들 중 32.8%는 재산, 18.1%는 폭력, 약물 및 알콜은 12.5%, 밀수는 11.9%로서 이들 4개 항목이 전체 범죄의 75.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통계에서는 35~44세가 25.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8세에서 54세까지는 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비율인 11.7~16.1%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 종류에 따른 비율은 일반보호관찰처분이 6,534명(1998년)이고 가석방자들은 5,152명(1998년)이었다.

표 1. 범죄유형별 구금형(1997~1998)

범죄유형	연도		%
	1997 수	1998 수	
폭력범죄	1,600	1,636	17.2
성범죄	165	192	2.0
재산관계범죄	2,422	2,411	25.4
강도	264	337	3.5
사기	742	781	8.2
국가에 대한 범죄	649	717	7.5
교통사범	306	321	3.4
음주운전	1,271	1,225	12.9
마약사범/밀수	1,167	1,361	14.3
군복무 위반사범	45	37	0.4
기타	481	497	5.0
합계	9,112	9,497	100.0

표 2. 성별에 따른 수형자(1997~1998)

성별	연도		%
	1997 수	1998 수	
여자	501	541	5.7
남자	8,611	8,956	94.3
합계	9,112	9,497	100.0

표 3. 형량에 따른 수형자(1997~1998)

형량	연도		%
	1997 수	1998 수	
2개월 미만	2,873	2,863	30.1
2~6개월	3,012	3,167	33.3
6~12개월	1,729	1,886	19.9
1~2년	692	759	8.0
2~4년	509	560	5.9
4~10년	255	210	2.2
10년 이상	34	45	0.5
중신	8	7	0.1
합계	9,112	9,497	100.0

표 4. 범죄유형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1998)

범죄유형	보호관찰	가석방	총계	%
폭력	1,241	880	2,121	18.1
성범죄	71	142	213	1.8
재산범죄	2,089	1,744	3,833	32.8
강도	149	235	384	3.3
사기	446	478	924	7.9
국가에 대한 범죄	559	418	977	8.4
음주운전	1,265	192	1,457	12.5
마약사범	541	812	1,353	11.9
기타	173	251	424	3.3
합계	6,534	5,152	11,686	100.0

표 5. 연령과 유형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수(1998)

연령	보호관찰대상자 수	%	가석방자 수	%	합계	%
15-17 세	165	2.5	3	0.1	168	0.4
18-20 세	1,170	17.9	196	3.8	1,366	11.7
21-24 세	994	15.2	691	13.4	1,685	14.4
25-29 세	832	12.7	877	17.0	1,709	14.6
30-34 세	853	13.1	1,028	20.0	1,881	16.1
35-44 세	1,422	21.8	1,581	30.7	3,003	25.7
45-54 세	759	11.6	633	12.3	1,392	11.9
55- 세	339	5.2	143	2.8	482	4.1
합계	6,534	100.0	5,152	100.0	11,686	100.0

표 6. 보호관찰 및 가석방자의 수(1997~1998)

연도	1997	1998
보호관찰	6,254	6,534
가석방	4,979	5,152
합계	11,233	11,686

2)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스웨덴의 보호관찰제도는 1965년에 도입되었다. 보호관찰 적용대상은 벌금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자들, 또는 재범방지에 유익하다고 재판관이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에 선고된다. 보호관찰 서비스는 관찰대상자들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고, 교도소와 구치소의 재소자들에 대한 조건부가석방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제공한다.

감독기간은 통상 1년이며, 각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에게 의뢰된다. 이들에 대한 감독의 약 45%는 보호관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범죄예방위원)이 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관찰대상자들의 감독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찰 대상자의 범죄 내용이 중대하고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자들은 정규 보호관찰관에 의뢰된다.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서는 각 대상자들의 욕구에 따라 다르나, 약물이나 알콜 남용에 대한 치료에 관한 것이 많으며 거주지의 지정, 직업알선 및 특별처우 등에 관한 것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경고, 지도감독기간의 연장, 일시적 신병구속, 보호관찰 취소 등이 취해질 수 있다.

(1) 계약처우(Contract Treatment)

1988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1개월부터 30개월의 구금형의 대체처분으로서 부과된다. 주로 약물남용(음주를 포함)자에 대해 국가와의 계약에 기초하는 집중적인 처우를 행하고, 그 사람의 교화를 도모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구금형 대신에 계획된 치료를 받게 하는 조건의 보호관찰, 즉 계약처우를 명령할 수가 있다.

① 범죄의 원인에 음주, 약물 또는 그 외 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도벽, 노출증, 근친상간 등이 정신적 불완전함과 관계있지만, 폐쇄적 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정신상태가 나쁜 정도는 아닌 상황)이 인정되는 것.

②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치료가 적합하고(재범장지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보호관찰 실시에 지장이 없을 것.

기간은 통상 보호관찰 기간과 같이 1년이다. 대상자는 이 기간에 치료 및 치료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지도감독의 기간은 치료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통원치료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입원 중과 입원기간 후 6개월간이다.

치료형태는 상기와 같은 입원치료와 자택에서 병원까지 정기적으로 다니는 통원치료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 사항은

① 피고인 개인의 상황(신상사항, 성장내력 등)

② 해당 약물남용의 특징(사용약물의 종류 등) 및 정도(1회 사용량, 사용빈도 등)

③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

보호관찰소에서는 충분히 조사가 안 될 때에는 치료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상기 조사 후, 계약 처우가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작성한다. 치료계획은 약물의 특징 및 사용빈도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검찰관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보고대상이 된다.

① 약물의 재사용

② 정당한 이유없이 약물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치료활동 참가를 거부하는 것.

③ 위반의 반복

④ 당해 위반이 치료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 치료자 또는 치료시설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소장 또는 검찰관에 보고하도록 법원은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함에 있어 치료자 또는 치료시설이 보고에 동의하고 있어야함이 전제가 된다.

계약처우에 의해 대체된 구금형 기간의 3분의 2까지 필요한 경비를 보호관찰소가 부담한다. 그 기간의 시작은 치료 1일째부터 가산된다. 경비부담 내용은 치료시

설 등의 숙박비, 치료비, 의복, 용돈 등의 일용금품이다. 상기 기간의 3분의 2를 넘어서 부터는 같은 경비에 대해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한다.

1995년에 1,361명이 계약처우의 대상이 되었다.

범죄의 종별로는 제1위 음주운전, 대상인원의 50%초과, 이들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자 프로젝트>의 대상이다. 제 2 위는 절도, 제3위 폭력범죄였다.

(2) 사회봉사

1990년 1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1993년 1월에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1년 이하의 구금형의 대체 처분으로서 과해지고, 사회에 유익한 무보수작업을 행하는 것을 보호관찰조건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교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봉사 도입의 이유는, 첫째, 무보수작업을 통해서 체험이나 인간관계를 포함한 작업장의 환경이 본인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것과 둘째로 구금형보다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18세부터 24세까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기간(3년) 및 지도감독의 가 해제시기 (보호관찰개시 1년 후)는 통상적 보호관찰과 다름없다.

지도감독 기간 중에 사회봉사를 실시한다.

무보수 작업 시간은 40시간(구금형 1월에 상당)부터 200시간(동 10개월 - 1년에 상당)까지 있다. 대상자의 여가 시간대(예를 들어 저녁이나 주말)에 치한다.

비영리기관, 단체 등에서 행해지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 스포츠 시설, 소방단, 문화센터, 심신장애자단체, 난민 원조단체, 적십자, 알콜 의존에 관한 단체, 구세군 등이다. 작업의 종류로는 수리, 도장(칠), 청소, 일반적인 일손 거들기(ex. 혈액 세척), 사물일 등이다.

이런 작업 장소 및 작업 내용 선정에 임해서는 일반노동 시장을 압박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업장소에는 그 현장 감독 책임자가 있고, 본인의 상황을 보호 관찰관에게 보고한다.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에 대해서 보호관찰 사회 봉사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결전조사 보고서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사회 봉사를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경우에도 피고

인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보호관찰관은, 작업 실시 상황을 감독한다. 위반자에게는 경고를 하고, 개선이 보이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보호관찰을 없애고 구금형을 부여하는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1995년에 610명이 사회봉사 대상이 되었다.

범죄 종류별로는 1위 폭력범죄, 2위 음주운전, 3위 절도이다.

(3) 전자감시

1994년 8월 1일부터 6개의 보호관찰 관할구역에서 시행되었는데 1999년 1월 현재는 모든 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실적 (1994.8.1-6개월간)

- ① 대상자 수 : 180명(中 164명이 남성, 19歳-72歳, 약 90%가 자국민)
- ② 언도한 형기 : 30일 75%, 60일 15%
- ③ 죄명 : 음주운전 54%, 폭행 19%
- ④ 효과 : 성공완료 - 116명/실패 6명(이유 - 약물사용, 음주, 전자감시장치의 부정조작, 정해진 취로 등에 관한 시간관리 불이행)
- ⑤ 지도감독 : 알콜검출 테스트 - 100% 실시
소변검사 - 14일 형기에 70% 실시, 45-60일 형기에 92% 실시.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대상刑을 3개월 이하의 구금형까지 확대하였다. 스웨덴 법무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자감시를 1년 이하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독립된 형벌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것이 제창되어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업무

(1) 판결 전 조사보고

판결 전 조사보고(이하 PSR이라고 함)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199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호관찰소는 재판소에 형사 피고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PSR은 모든 형사 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예상되는 형벌이 보고관찰인 경우에만 행해진다.
- ③ PSR의 범위는 형량에 관한 것이며, 재판소의 의향에 따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PSR의 보고사항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가. 추천되는 형벌에 관한 사항, 보호 관찰을 추천하는 경우, 필요에 부응해서 부가해야 하는 조건(계약 처우, 사회봉사 등)이 교시된다.
 - 나. 처우계획 - 각종 처우 프로그램 등에의 참가
 - 다. 지도감독 과정에서 취하는 각종의 조치
 - 라. 피고인의 사회, 생활환경
- ④ PSR을 위한 조사는 통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당국이 인정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
 - 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나. 조사에 요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경우
 - 다.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⑤ PSR은 보호관찰의 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도 작성되어 재판소에 제출된다. 이 경우 PSR에는
 - 가. 재범에 이르기까지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 나. 재범에 관련되는 범죄에 대해 추천된 형벌이 기재된다. 1955년 PSR의 건수는 18,600건이었다.

PSR외에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동위원회가 실시하는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상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다. 또 보호관찰소는 군(郡)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안에 여권의 발급, 취소된 운전면허의 부활 등에 관계하여 각각 가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 보고 할 수가 있다.

(2)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의 업무

● 구치소에서의 업무

보호관찰소는 상기 PSR을 위한 조사 외에, 1974년 이후 구치소내의 복지적

연구에 책임을 갖게 되었다.

보호관찰 관할 구역내에 구치소가 있는 관찰소는 모두 그 구치소에 주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한다.

주재보호관찰관은 피고인과의 면접, 다른 기관과의 연락,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교도소에서의 업무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책임이 증대해가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장차 가석방후의 지도감독 대상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근교 교도소에서의 업무

보호관찰관은 수용자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입소당초부터 가석방을 염두에 둔 교도소 내에 있어서의 처우계획 입안에 관여하고, 귀주 예정지의 조정을 행한다. 또, 석방 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부호관찰관은 수용자와의 건설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건부로 석방된 수용자에 대해 범죄예방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석방준비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위원지명이 요구된다.

• 생활기능훈련(Social Skill Training, 이하 SST라고 칭함)의 실시

SST는 젊은 범죄자 중심으로 주로 근교 교도소에서 실시된다(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외에서의 계획적인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SST에는 그룹으로서 지역 문화행사나 스포츠 행사에의 참가,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개인 참가 등이 포함된다.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도 이러한 활동에 수용자와 함께 참가할 수가 있다. 그 목적은 장래 대상자와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수용자가 건전한 여가 활동 습관을 갖도록 원조하는 일, 활동지역의 조직 등과 보호관찰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다.

참가 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에 재송치 된다. 상기 여가활동이나 후술하는 시설의 활동의 경비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의해 부담된다.

1995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 : 주로 18~20세 39명

성공 11명, 실패 18명, 훈련 중 10명

- 시설의 활동

- 가. 시설의 활동

교정법에 의해 사회복귀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수용자는 그 수용기간의 말기 야간에 시설 밖에서 취업 또는 공부하는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 활동에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이 관여할 수가 있다. 매년 약 1,000명이 이 활동에 참가한다.

- 나. 외출

수용자는 저녁에 운동시설이나 여가활동을 위하여 외출허가를 얻을 수가 있다. 수용자에게 범죄나 약물 등 이외의 것에 의미를 갖게 함이 목적이다. 매년 약 22,000건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는 가정에 위기가 있는 경우 가족을 방문하거나 사회복지기관등에 가기 위하여 2시간 정도 교도소로부터 외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1994년 약 31,300명의 수용자가 특별외출 허가를 받았다.

- 다. 일시 휴가

수용자는 형기의 ¼을 경과한 후 자택에 일시 돌아갈 수가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일시 휴가를 하고 있고, 1994년에는 약 14,000건의 허가를 하였다.

- 라. 시설의 거주 허가

수용자는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도소 외의 약물 중독자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치료시설에 머물수가 있고, 이 기간은 형기에 계산되어 교도소 내에서 형을 치른 기간으로 간주한다. 이런 수용자에는 감독자(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가 따른다. 1994년 876명이 이 허가를 얻었다.

(3) 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지도 감독은 교육적 요소에 역점을 둔다. 즉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적합한 요구를 하게 하고 대상자가 성공하고 자신감을 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대상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이 강조된다.

지도 감독기간 중 대상자는 선행유지 및 지도 감독자와의 정기적 접촉의무를 갖는다.

● 선행유지

선행유지에는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준수사항은 케이스의 필요에 응하여 부가되며 변경도 가능하다.

준수 사항의 예로서는

- 거주지 지정
- 취직에 관한 조건의 설정
- 특정 처우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보호관찰집행위원회는 대상자에게 경고한다. 동 위원회는 지도 감독기간의 연장, 가석방을 취소하고, 가석방자의 교도소에 재수용(1개월을 한도로 한다)하는 등의 불량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접촉

접촉회수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앞으로의 처우 진행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 ①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 ② 면접회수의 설정
- ③ 처우 프로그램의 설명
- ④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

● 통계(日法務省 保護國 諸外國의 更生保護制度, 第27號, 平成 9年 3月

- 1989~93년에 지도감독을 받은 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89	90	91	92	93
보호관찰	7,872	7,915	7,933	7,803	7,630
가석방	3,924	3,994	4,087	4,194	4,269
계	11,816	11,909	12,020	11,995	11,879

지도감독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적용 외의 구금형과 보호관찰 결합 처분 (Combination of Imprisonment and Probation)을 받는 수용자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처분은 최단 14일부터 최장 3개월의 구금형과 보호관찰이 결합한 것이다. 보호관찰만으로는 지도감독 및 원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처분이다.

• 1989~93년에 결합처분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은 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89	90	91	92	93
지도감독	1,318	1,384	1,301	1,277	1,499

(4)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제

사회복지기관, 고용기관, 학교, 건강기관 등의 일반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석방 대상자가 다른 시민과 똑같이 사회적 서비스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지도감독 기간이 끝나도 본인의 행동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그 주거지에 거주 할 수 있다.

약물 남용치료를 의학적 보호의 대부분은 사회복지기관 또는 보건소에 의해 준비되고, 숙박장소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보된다. 알콜 의존이나 약물남용 치료에 수반되는 시설은 대체로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나 정신치료에 대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호관찰소는 정신의료를 외부자문의사로서 활용하고 있다. 외부자문의사는 의약의 처방에 대하여 카운셀링, 전문의 소개, 진단서 작성, 의학적·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도 역할을 제공한다.

(5)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보호관찰소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카운셀링
- 약물 남용에 관한 정보
- 금전관리
- 생활기능 훈련
- 취직 등에 요하는 준비 학습
- 사회활동

4) 보호관찰관의 채용 및 연수

(1) 채용

스웨덴의 보호관찰관은 국가 공무원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되기 위한 국가시험 또는 보호관찰관 채용 전문시험도 없으나 대학 졸업자격이 필요하다. 보호관찰관의 대학에서의 전공은 사회사업학, 사회학, 심리학, 법률학 전공이 많다.

(2) 기초연수

이론과 경험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교정 보호기관에 채용된 자의 기초연수는 아래와 같다.

① 기초연수의 종류

● 초임연수

채용 후 4개월 후 실시하며 지방별 연수 10일간 및 관구별 연수 5일간으로 이루어진다. 연수내용으로서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업무내용, 제도의 목적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수이며,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법률 및 다른 관계 법령의 해설, 실습, 직업윤리, 다른 기관 등과의 관계방법에 대한 연수, 견학 등이다. 초임 연수 후 4개월 뒤에 다시 8개월 연수가 행해진다.

● 중앙연수

초임연수 종료로부터 1년 후에 행해진다. 처우에 관한 기초적 이론과 지식 등을 제공한다. 연수 과목은 교정보호개론, 심리학, 사회정책, 범죄학 처우에 있어 태도 및 품행 등이다.

중앙연수 후 제 3회째 연수인 관구 연수가 시작하기까지 2~4개월간 보호관찰소 또는 교도소에서 5일간 실습을 받는다. 이 실습에서는 서로 상대기관을 잘 이해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채용된 사람은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채용된 사람은 보호관찰소에서 각각 실습을 받는다.

● 관구연수(제3회째, 제4회째)

중앙연수 종류 후 2~4개월 후에 시작한다.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정보호개론, 심리학, 사회정책 및 범죄학의 응용적 관점

나. 자기관리, 다. 정신의학, 라. 약물정보, 마. 레크레이션,

바. 건강관리, 사. 인사

제3회째 연수와 제4회째 연수간에 5일간의 견학이 있다. 견학처는 치료시설, 공공직업안정소, 이민국 등에 있다.

● 지도·보조 시스템

연수기간동안 신입 보호관찰관에게는 경험이 많은 보호관찰관이 지도한다. 지도·보조 시스템은 신입직원을 보조하여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주 선임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대상자, 처우 계획, 사회자원,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집행위원회에 출두하는 대상자 등에 대해 협의(協議)의 기회가 제공되는 외에, 매주 1회 처우 곤란자에 대해 정신과 의사 등에 의한 상담훈련이 따른다.

② 연수과목의 내용

- 교정 보호개론 : 교도소 및 보호관찰 제도의 역사, 사법기관의 해설, 교정 보호국의 기본방침 외에 법령의 해설 및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직업적 태도를 철저히 지도한다.
- 심리학 : 심리학은 대상자의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조직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 심리학 및 인지 심리학에 강조를 둔다. 응용으로서는 회화의 기법, 갈등처리, 처우계획(Treatment Planning)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다.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처우과정에 있어 제 기관과의 유익한 협력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현재의 사회정책 배경, 방향 및 목적
 - 현재의 사회정책에 관한 입법과 사회보험제도 및 그 운용
 - 난민, 이민 문제
 - 노동시장 문제
 - 지역에서의 치료시설 등
- **범죄학** : 범죄원인에 관한 여러 학설 및 형법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행위의 역사적 경향, 성질, 범위 등에 대해 지도함과 동시에 이에 동반하는 교도소,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및 목적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 **자기관리** :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업무수행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의학** : 정신이상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잘 하기 위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약물남용과 연관하여 정신이상의 배경, 특징, 치료 등에 대해 교시(敎示)한다.
- **약물정보** : 약물남용을 어떻게 방지하며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 가능한 처우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약물남용에 대한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의 지도방법, 약물남용의 범위, 특징, 남용약물의 종류, 효과 등에 대해 지도한다.
- **레크레이션** : 대상자에 활용 가능한 레저문화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레저문화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제공을 한다.
- **건강관리** : 대상자에게 잘 나타나는 질병이나 간단한 병의 치료방법을 교시하거나 인공호흡법에 대해 가르친다.

- 인사(人事) : 교정보호기관에서의 근무를 규정하는 법률 및 규정 등을 가르친다.

③ 그 외의 연수

상기 기초연수 외에 보호관찰관의 관심영역에 따라서, 각종 전문연수(예를 들어, 약물에 관한 연수)나 관리자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5) 범죄예방위원의 채용 및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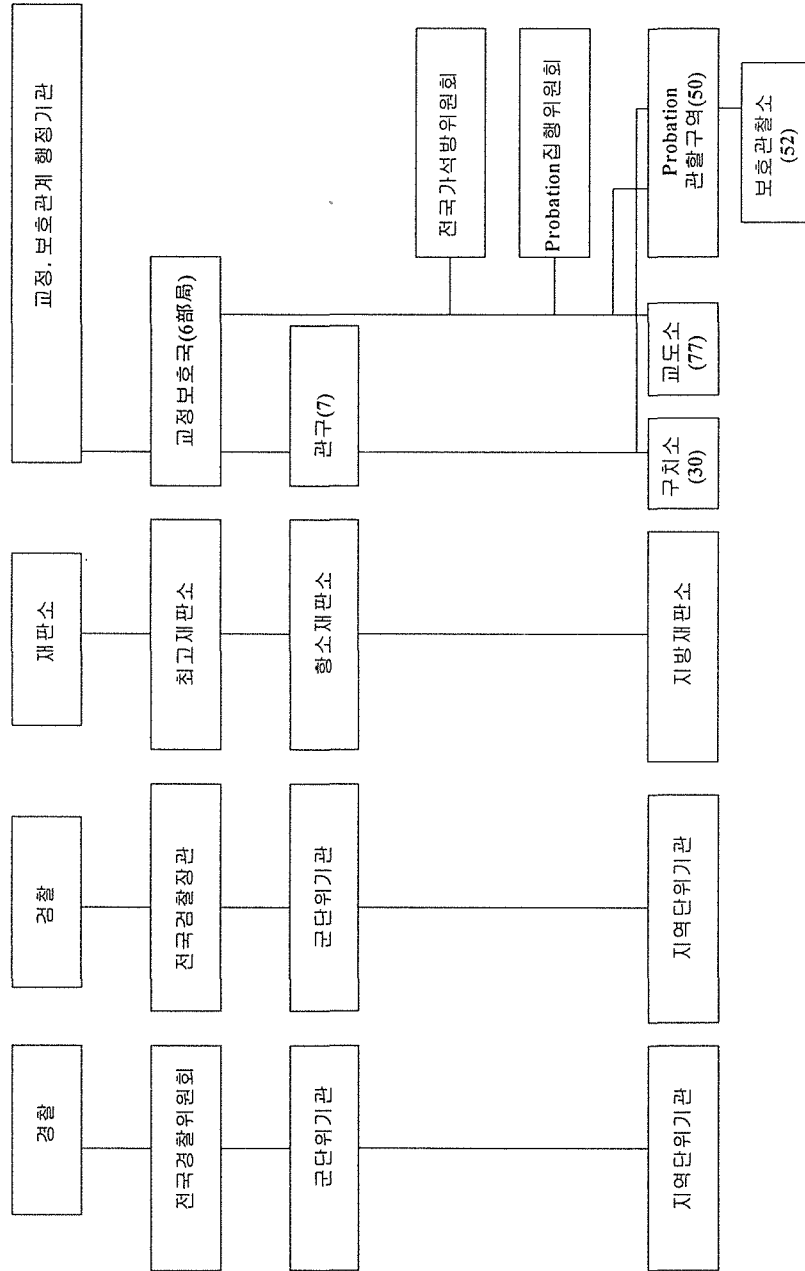
보호관찰대상자의 45%가 비 국가공무원인 일반시민에게 위촉되고 있다. 이들을 범죄예방위원이라 지칭하며 범죄예방위원으로의 선발에는 특정한 자격을 요하지 않으나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건전한 사회도덕성 및 기본적인 사회보호의식을 갖춘 자이면 선발기준의 대상이 고려될 수 있다.

범죄예방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이들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친다. 이에는 기본법률지식, 약물에 대한 지식, 기본처우기법에 대한 이해 및 기타 사회문제의 지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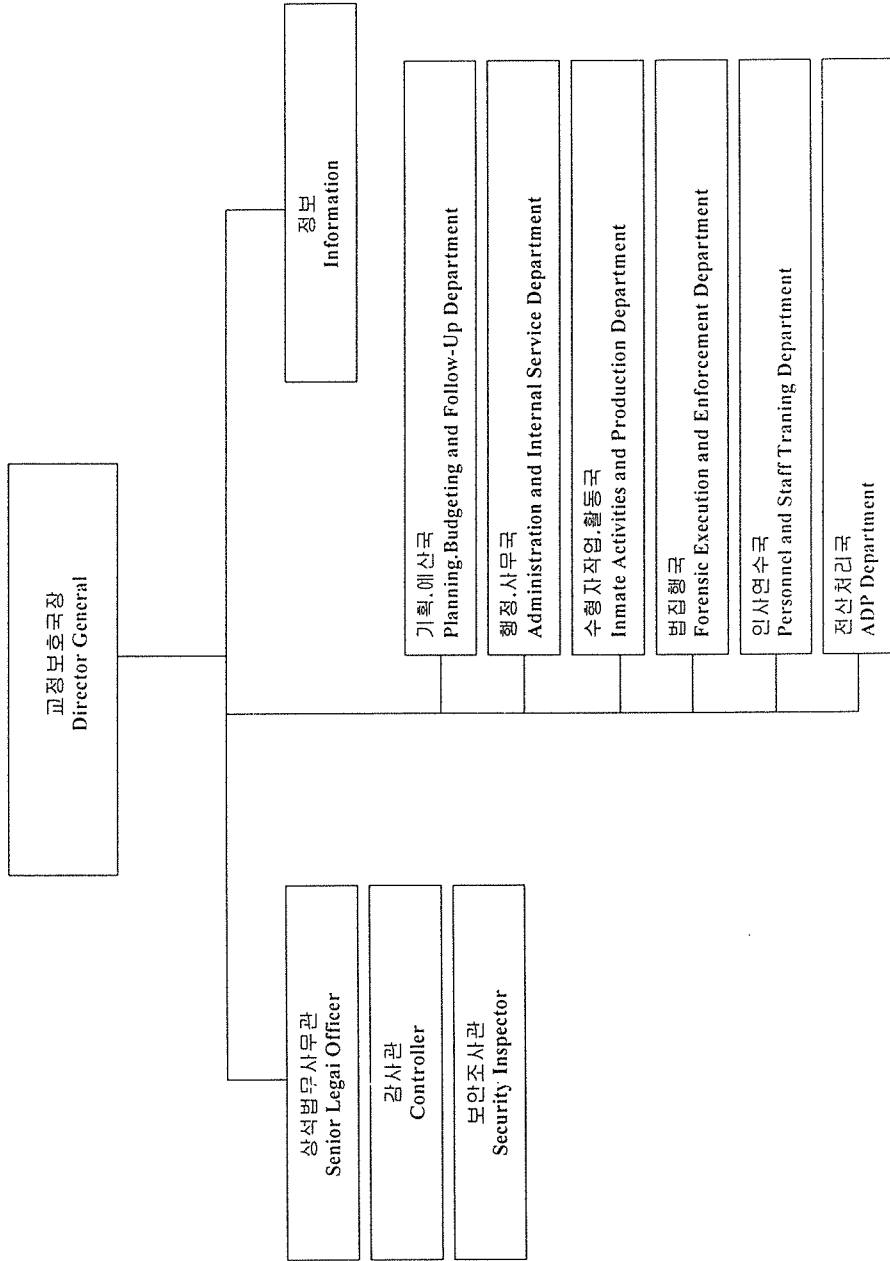
이들의 범죄예방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1인당 300SEK(1SEK를 120원 환산하면 36,000원)이며, 이외에 범죄예방활동시 필요한 여비, 처우에 관계되는 비용 및 손실 등도 지불된다. 특히 집중감독 또는 가정에서의 직접지도·감독에 따르는 처우와 스포츠에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도 1시간당 35SEK(4,200원)이 보상된다.

범죄예방위원들에 대한 임명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지명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관찰대상자들의 수는 매년 평균 6,000명 정도이며 1인당 1~2사례를 관리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사례는 매월 보호관찰소에 리포트로 제출한다.

Probation 법무성의 기구



교정보호국의 조직
The Swedish Prison and Probation Administration



4. 獨 逸

1) Berlin보호관찰제도

독일은 총인구 82,087,361명인(1999년 12월 현재)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은 각 주마다 그 운영방법에 있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독일 보호관찰제도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각 주를 총괄하는 보호관찰 행정체계의 특징을 요약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Berlin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독일 연방주의 하나인 Berlin은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을 사법행정의 사회사업(Social Services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즉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제공되는 사법적 조련(Judicial Assistance rendered to Probation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Berlin의 보호관찰 운영에 있어 지역 사회의 현장 운영은 그 방법과 접근 기술에 있어 사회사업의 개별지도(Casework)에 의존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필요한 사법적 조력을 제도적으로 서비스화한 것은 1950년대 초이며,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들과 재소자들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다.

1975년에는 검찰과 법원을 대신하는 사법적 조력의 주요기능들이 보호관찰기관으로 이관되었고, 사회사업서비스가 신설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의 일선현장 운영이 시작되었다. 또한 범죄자들을 위한 사회심리요법 상담 기능이 실시되었다.

사법적 조력 기능은 4개의 서비스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25명의 인력으로 시작하였다. 한 사람당 평균 케이스 관리량은 35명이었고 매월 보고서가 요청되었다. 이같은 활동의 초기 단계에는 검찰의 예비조사와 법원의 주요 진행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보고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점차적으로 이 활동은 강화되었는데 특히 징수불가능한 벌금에 대한 강화된 처분이 그 예이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사회사업가들이 준비하는 보고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과 그들의 지식과 기술사용에 대한 일방적 적용의 강조가 사회사업가들의 불만을 초래케 하였다. 점차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 자문과 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사회교육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사회사업가들의 기능이 사법적 조력기능과 분리케 되었다.

1954년 1월을 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감독과 조력의 기능이 법규정으로 되었다. 1954년 9월에는 성인보호 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조력프로그램이 3명의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13명의 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출발하였다. 그 후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89년 1월에는 4,036명의 관찰대상자들이 72명의 보호관찰관들에 의해 감독을 받았다.

보호관찰관들의 평균 케이스 관리 수는 현재 57명이고, 72명의 보호관찰관들은 17개의 서비스 단위에 배치되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조력방법은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의 개별지도원리에 근간하고 있다. 사법적 조력의 중요한 원칙은 관찰 대상자들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는 생활의 방법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관찰대상자들과 보호관찰관과의 신뢰 있는 관계수립은 가장 주요한 요건이 된다.

보호관찰관과 관찰대상자들간의 상호협조의 강화 정도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적응정도와 그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자들은 교도소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구금 생활 이후 가석방된 자들과 정신질환 또는 약물의존 때문에 보호관찰에 처분된 자들이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여러 문제들(예컨대, 직장, 거주, 약물, 기타 다른 문제)을 다루는데 사회사업의 개별지도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각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 팀워크접근방법, 범죄자지원주택 프로젝트,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1990년까지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제공되는 사법적 조력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하나의 중앙시설에 거주하면서 관찰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왔다.

통일전 동독에는 사법적 조력과 같은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서독과는 법의 운용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많았다. 통일 이후 Berlin에서는 1990년에 사

회사업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증가하는 실업률, 정부보조의존도, 주택문제, 과도한 부채 등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에 커다란 개선이 뒤따랐다. 동Berlin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재구성의 목표는 ;

- 동Berlin시의 재 지역화
-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사법적 조력에의 참여
- 사법적 조력 또는 보호관찰관의 독자 또는 공동 기능에 대한 개별적 우선권 존중
- 특수한 임무에 대한 전문화의 강화

1992년과 1995년 사이에 취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법적 조력운영이 현존지역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 개인적 사정에 우선하는 서비스를 위해 중앙통제적 사회사업기능을 포기하고 그 지역의 사회적 연계를 존중하고, 보호관찰관들은 여러지역 기관으로 분산하였으며 하나의 중앙본부, 5개의 지역기관 및 하나의 단위별 서비스가 “피해자 지원과 여성 프로젝트”의 전담 상담소를 설치했다.

2) 보호관찰관의 역할

관찰대상자들에게 사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보호관찰관들은 중복된 서비스와 인간관계의 재와해 방지를 피하고, 지속적인 관계수립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안정성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관찰관들은 관찰대상자들과 사법행정당국 모두에 자문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회교육적 방법들이며 이는 사회사업적 개인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은 판사와 검사들의 최종 결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

- 사건의 형사 처리 취소
- 징수불가능한 벌금에 대한 감소
- 형의 형태와 처벌의 양
- 보호관찰의 취소 및 기피

보호관찰관들의 활동은 단지 범법자들을 돕거나 또는 인과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조력이 아니다. 범법자의 일탈행위는 오히려 앞으로 준법행위를 위한 조건을 찾고 이에 대한 노력의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행위의 방법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생활조건의 향상과 안정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 같은 조력활동이 전제하는 것은 안정된 사회, 재정적 조건들이 이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인과응보적 입장은(Punitive Justice) 사법적 견해에서 범죄자 개인의 성품과 그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내려진 결정에 대한 사후통제적 관점도 중시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클라이언트와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이후 전문적인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분야를 지정한다.

- 여성 범죄인
- 법원판결기간동안 구치된 자, 보호관찰감독이 따르는 자, 가석방 자에 대한 감독
- 실직자와 주거지가 없는 자
- 부채가 많은 자
-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 및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피해자에 보상 또는 구금 대신 사회복지관련 작업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경우

3)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조력자의 자원 범위 내에서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현존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유용을 가져오게 한다. 이 같은 분야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술된다.

“여성프로젝트”는 7명의 여성 사회사업가들이 클라이언트를 자문하고 돌본다. 이들 활동의 초점은 적절한 조력, 충고 및 중재 기능을 모든 국면의 절차와 진행에서 이루어진다. 여성의 특별상황이 고려되며 중재기능이 이루어진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감독이 부여된다.

“채무자문”은 흔히 지불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지불의무를 해결하는데 조력한다.

이들은 Gustau-Radbruch재단의 도움을 얻어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이 같은 자문에 관여하는 보호관찰관들은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서비스 단위(Units)의 보호관찰관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벌금형 처분이 되도록 돕는다. 비록 벌금의 지불능력이 없거나, 벌금지불실패로 시설구금을 원 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지역사회 사회복지관계 작업으로 그들의 벌금지불의무를 대체하도록 노력한다. 보호관찰관들은 이들을 위해 직업알선과 적절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은 관찰대상자들과 함께 그들의 직장에 함께 동반해 주기도 한다.

“피해보상”은 1994년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성인들에게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이익과 관심을 고려함과 동시에 형사적 범죄와 처벌을 감소케 하기 위함이다. 피해자와 중재자간의 보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범죄, 범죄의 배경과 그 결과가 논의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보상에 대한 방법도 다루어진다. 법정은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보상 이외에도 성공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중재까지도 가능하다.

“협력작업” 프로그램은 백화점과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자들과 자동차 사건에 관련된 자들에 제공된다. 두 사람의 보호관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팀웍” 프로그램은 법을 위반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뉘우치고 앞으로의 생활은 준법정신으로 책임 있는 시민생활을 하도록 조력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팀웍에 참여한 자들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그들 자신들에게 보다 개방적이었다.

팀웍은 보호관찰의 조건이 다시 주어질 수 있는 재범자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시설구금 이전의 마지막 기회로 간주된다.

“직장과 주거”프로젝트 : 보호관찰관은 관찰대상자들의 직업알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고용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찰대상자들을 위한 고용의 기회를 도모한다.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직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은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 되어 있으며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 가능하다.

주거알선 역시 주택조합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당국과 세입자간의 중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별적인 주택기관과의 특별한 협조합의 때문에 서비스의 관리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운명에 맡긴다.

“구속자들을 위한 사법적 원조”프로젝트는 법절차상의 주요진행뿐만 아니라 청문회까지도 조력해줌으로써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범법자들로써 언어문제를 돕고, 법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카운셀링과 기타 자문을 통하여 사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보호관찰제도 기관은 “사회심리자문기관”을 활용한다. 1972년에 실행한 이후, 이 서비스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찰대상자들은 충고, 심리치료 또는 정신분석 요법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상심리학자들의 자문과 이들의 전문적 분석이 사법적 조력과정에 적용된다.

4) 사회봉사명령제도

독일의 사회봉사 명령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유예에 따른 조건으로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 ② 벌금미납에 따른 환형 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 ③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그것이다.

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법원은 범죄에 의해 야기된 불법의 배상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죄인에게 기대하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② 법원은 다음 중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 1. 최대한 피해를 원상복구할 것.
 - 2. 공공시설을 위하여 혹은 국고에 소정의 과징금을 지불할 것.
 - 3. 그렇지 않으면 사회봉사를 할 것.
- ③ 만약 범죄인이 적당한 급부를 제의하여 야기된 불법의 배상에 기여하고 자 하면 법원은 당해 청구내용이 이행될 것이 기대되면 준수사항의 부과를 철회한다.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형의 집행유예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만약 피고인이 형의 선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피고인의 인격, 생활전력, 범죄행위의 정황, 범죄후의 행동, 생활상태 및 형의 집행유예로 그가 받게 될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도 ①의 요건이 충족되고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인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6월 이상의 구금형은 범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지 않는다.
- ④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부과될 수 없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나 다른 자유박탈처분의 산입에 의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는 적용된다.

법원은 지시사항 준수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에 붙일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지시사항의 준수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이 이행되는 가도 감독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은 독자적으로 준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명령할 수 없다.

사회봉사의 내용은 병원 일, 요양소 및 복지시설에서의 봉사, 양로원이나 장애시설에서의 봉사, 교통안내, 자연보호, 알코올중독자 치료소 봉사, 쓰레기청소, 도로청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석방과 사회봉사명령

독일의 가석방제도는 범죄자가 형기의 일부를 집행 받은 다음 예후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잔여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형기의 2/3를 경과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어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형기가 2년 이하이거나 범행·수형자의 인격·행형 중의 발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가

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사회봉사 작업기관의 선정은 재사회화에 강조 점을 두어 선정하는데 가석방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불이행 시에는 형 연기의 철회가 준용된다.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인 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교육의 필요와 교육에 의하여 교화될 가능성이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원판사가 소년법원보조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소년법원법은 소년법원보조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여 법관의 판단을 제한한다.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봉사 종류의 선택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공익적 노동에 준하는 것이지만 소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성·공익성을 지닐 필요가 없다.

소년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소년법원은 검사, 본인,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해야 할 지시사항을 명령한다. 보호관찰관의 참여는 소년원법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중의 개별적 처우를 의미 있게 실행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사회봉사의 감독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경미한 지시사항을 위배한 자에 대하여 봉사작업장 관리인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Berlin 보호관찰제도의 조직

1998년 1월 현재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사업가들의 수는 136명이며, 이중 일부는 시간제 고용원이다.

사회사업가들은 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사법적 조력의 일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보상관계 및 심리치료자문을 취급하며 이들 모두를 포함하면 174명의 사회사업가로서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Berlin의 보호관찰제도는 독일정부의 사법행정부 산하의 사회사업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개의 보호관찰소를 운영하고 있다. (별첨1. Berlin 보호

관찰제도 조직표)

Berlin 보호관찰제도(Kroworz, 1998) 운영은 17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그룹은 6~8명의 법원보조자 및 보호관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 그룹은 특정지역을 담당하며, 현재 4개 지역으로 분포된 서비스지점에서 가능한 한 자신들의 담당 구역에 가까운 위치에서 거처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서비스 그룹을 서비스 인근지역에 거주케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상황 및 해당지역 상황, 그리고 후원제공의 기존연결망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각 서비스 그룹들은 특정지역들을 담당하면서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법원의 보호관찰 요청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

별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Wilmersdorf의 보호관찰 본부에는 약 54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 중 25명이 보호관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사업가들이다. 이 곳에서 다루는 전문분야 활동들로서는 판결전조사와 보호관찰지역 전문서비스로서 이들 그룹에서는(su, 8, 9) 벌금징수, 기소, 여성프로젝트, 협동작업, 작업과 주택, 채무상담 및 사회심리 치료 자문들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Wedding관찰 지소는 약 56명의 직원 중 42명의 보호관찰관들이 8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누어 보호관찰 전문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 : 1, 5, 6, 7, 10, 11, 12(피해보상), 16).

Schöneberg관찰지소는 25명의 직원 중 20명의 보호관찰관들이 2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뉘어 (su 2, 4) 보호관찰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Treptow관찰지소 역시 3개의 서비스 그룹(su 3, 14, 15)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22명의 직원 중 20명이 보호관찰관이다.

Lichtenberg관찰지소는 서비스 그룹 13과 17이 운영되고 있으며 12명의 보호관찰관이 지역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Spandau, Tiegarten 및 Reinickendorf관찰지소들은 보호관찰 업무 실행지역으로서 현재는 서비스의 욕구조사과정중에 있다. 욕구사정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비스의 종류가 개발시행될 것이다.

현재 2명의 보호관찰관이 Tiergarten지역에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Reinickendorf지역은 주 8~12시간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Spandau지역은 거리문제로 교통이용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 약 7명의 보호관찰관들이 이 지역에 주거하면서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보호관찰관 선발기준

보호관찰관의 선발기준은 대학에서의 사회사업학위가 필수이며 서류전형을 거쳐 구두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구두시험관은 업무부서의 대표자와 임용 후 근무하게 될 해당 부서의 대표자 및 인사담당관이 배석하게 된다. 구두시험의 목적은 전문적 지식과 실무지식 및 인성에 대한 특정한 질문, 사회적 지식 또는 지도력에 관한 특정한 질문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약물중독, 실업, 정신질환, 노숙자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사전 직업경험은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특이사항은 연령의 제한을 3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성숙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선임보호관찰관은 처음 6개월동안 개인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임한다. 이 외에도 14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으로서의 기본임무와 책임을 학습한다.

Berlin의 보호관찰관들이 관리하는 관찰대상자들의 평균수는 60명 정도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다. 이들의 주당 업무시간은 38.5시간이며 그 이외의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과외 수당 지급이 없다.

7) 예산

Berlin보호관찰제도 운영예산은 1999년 인건비로서 1200만 마르크이며 그 외의 행정운영예산은 25만 마르크이다. 보호관찰관의 봉급은 2000년 4월 현재 소장급이 연봉 90,300마르크이며 선임보호관찰관은 75,180마르크, 일반보호관찰관은 66,900마르크이다.

1999년 12월 현재 16개의 주로 구성된 독일 연방 정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보호관찰관 및 평균 케이스 관리 수는 표 1(Kroworz, 199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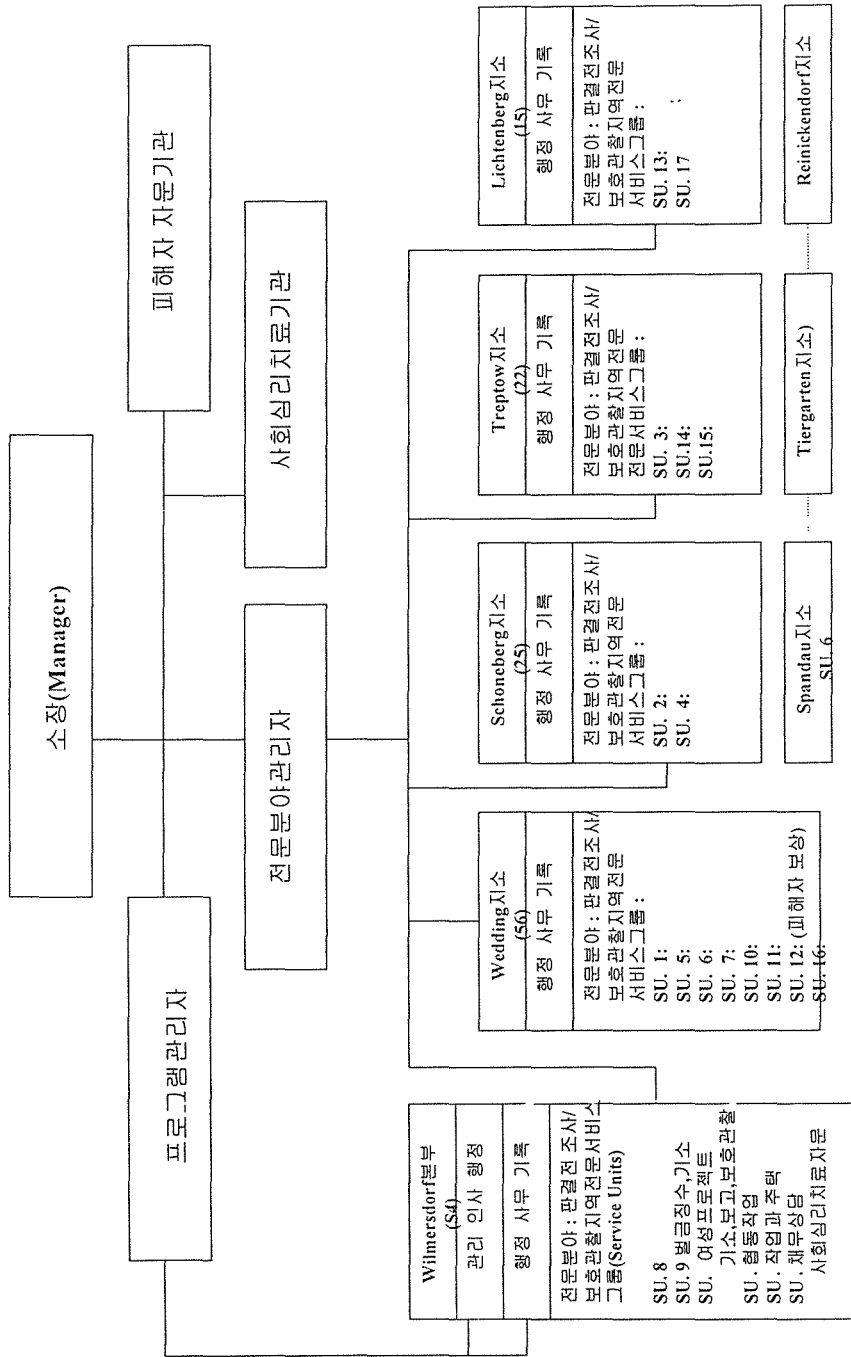
표 1.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관, 평균 케이스 관리 수

주(Land)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관	평균 케이스 관리
1	2	3	4
Baden-Württemberg	19,361	246,4	78,6
Bayern	18,495	270,0	68,5
Berlin	7,969	131,5	60,6
Brandenburg	5,481	85,0	64,5
Bremen	1,984	30,0	66,1
Hamburg	4,072	64,5	63,1
Hessen	11,078	171,0	64,8
Mecklenb-Vorpommern	4,070	59,0	69,0
Niedersachsen	15,016	252,0	59,6
Nordrhein-Westfalen	42,429	630,0	67,3
Rheinland-Pfalz	8,023	99,5	80,6
Saarland	2,244	30,5	73,6
Sachsen	6,817	85,7	79,5
Sachsen-Anhalt	5,190	80,0	64,9
Schleswig-holstein	3,638	59,5	61,1
Thüringen	3,912	46,8	83,7
계	159,779	2,341,3	68,2

16개 연방주가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총 숫자는 159,779명이며 이들을 감독, 지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숫자는 2,341명이다. 각 보호관찰관당 관리하는 평균 사례 수는 68명이다.

별첨 1.

Berlin보호관찰제도 조직표



* Tiergarten지소와 Reinickendorf지소는 서비스계획구역이다

5. 日 本

일본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범죄의 취제 및 처벌 강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들도 준법시민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범죄자의 재기를 원조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인 기관에 의한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시민들의 온정 있는 이해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활동을 갱생보호라 칭하며, 갱생보호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갱생보호의 방법

(1) 보호관찰

갱생보호활동(Rehabilitation Bureau, Ministry of Justice, 2000)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일정범위의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선과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자유행동이 가능한 보통의 사회생활 속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 보조원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직의 원조나 개인의 여러 어려움을 돕는 상담의 기회를 통하여 그 재기를 돕는 사법행정의 조치이다.

실행기관 :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사(정부가 임명한 자원봉사요원)

대상자 : ① 가정재판소(법원)에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조치한다고 하는 처분을 받은 자

② 소년원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가 퇴원을 허락 받은 자

③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용되어 만기 전에 가출옥을 허락 받은 자

④ 재판소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그 기간 중 보호관찰에 조치한다고 하는 판결을 받은 자

⑤ 부인 선도원에서 가 퇴원 허락을 받은 자

(2) 갱생긴급보호

교도소로부터 만기석방된 자, 가출옥이 끝난 자,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에는 보호관찰에 의한 원조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형사상의 절차에 의해 신체구속이 해제되어 사회에 나와도 친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 그의 갱생을 돕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의거, 긴급 필요조치로서 주거의 알선, 금품대여, 숙박제공, 의료지원, 직업원조 또는 그 외의 원조를 제공하는 조치이다.

실시기관 : 보호관찰소의 장(長)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실시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 스스로 대응하든지 또는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 실시한다.

- 대상자 :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처분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②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처분에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
③ 징역 또는 금고 처분에서 형의 집행유예 언도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
④ 징역 또는 금고 처분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⑤ 소추(검사의 공소 제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
- * 형사상 절차에 의한 신체구속의 해제(석방)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행함.

(3) 가석방

재판소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수용기간 만료 전에 교정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수용자를 임시로 석방하는 조치이다. 소년원으로부터의 가석방은 「가퇴원」, 형무소로부터의 가석방은 「가출옥」이라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방후에 본인이 생활할 예정인 주거지나 환경이 본인의 재기를 위한 적응에 적합한가를 미리 조사한다(환경조정).

가석방은 수용중의 생활태도나 갇생의욕, 가석방 후의 생활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 조치를 하며 본인의 개선갇생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된다.

결정기관 : 지방갇생보호위원회

가출옥 허가의 기준 : ① 悔悟의 情(죄를 뉘우침)이 인정되는 것.

② 갇생의 의욕이 인정되는 것.

③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④ 사회의 감정이 가출옥을 시인한다고 인정하는 것.

(4) 범죄예방활동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의 계몽과 사회적 여건의 정(淸)화에 노력하는 활동으로서, 이 활동의 특징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감이나 사회적 규범에의 공감을 강화, 조장하도록 지역사회에 작용한다. 또한 범죄나 비행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증대하고 지역사회가 그들을 지역의 일원으로서 수용하고 그들의 갇생을 원조하는 것에 의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가두홍보활동, 강연회, 영화관람, 스포츠 대회 등을 실시하여 범죄나 비행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호소함과 동시에 범죄나 비행자의 재기를 돕는다.

2) 갇생보호의 기구 및 소관사무 (별첨 1 갇생보호의 기구도 참조)

(1) 보호국

총무과, 조사연락과, 관찰과, 은사(恩赦)과의 4과와 참사관 1인이 배치되어 있다(정원 22인).

(2) 심의회

보호국 소관의 심의회는 다음과 같다(단, 교정보호 심의회는 교정국과 공동관리).

① 중앙갱생보호심의회

- 법무대신에 대해, 특사, 특정인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면제 또는 특정인에 대한 복권 실시에 관해 신청한다.
-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실시한 가출옥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제기에 관해 심사를 행한다.

② 교정보호심의회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 및 갱생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 한다. 교정부회, 갱생보호부회 및 교정보호부회의 3부가 있다.(위원수 30인)

(3) 지방지분부국

① 지방갱생보호위원회

(전국 8청, 위원 53인, 사무국정원 196인, 보호관찰관 83인)

고등재판소 소재지에 설치하고 위원 3인 이상 12인 이내에서 조직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가석방의 허가, 가출옥의 취소 결정 등을 행한다.

〈평성 11년도 - 서기 1999년도〉

- 가석방심리사건 수리원 수 : 21,965건.
- 가출옥률 : 57.3%
- 형집행률 : 82.6%
- 가출옥기간 : 4.7월(月)

② 보호관찰소

(전국 50청, 지부 3청, 주재관 사무소 27청, 정원 1,092인, 보호관찰관 734인)

지방재판소 소재지(북해도 4청)에 설치되어, 보호관찰, 환경조사, 범죄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1999년도>

- 보호관찰사건 취급인원 : 147,871인
(연말 현재의 보호관찰중인 인원 67,290인)
 - 1호관찰 95,002인(39,446인)
 - 2호관찰 11,588인(6,421인)
 - 3호관찰 20,384인(6,315인)
 - 4호관찰 20,897인(15,108인)
 - 5호관찰 0인

(4) 보호관찰관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사무국 및 보호관찰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이다.

역할 : ① 보호관찰처우의 실시

② 가석방 심리의 조사

보호관찰관의 사무

- 소년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의 보호관찰
- 부인보도원 가퇴원자의 보호관찰
- 재소자 재원자의 환경조사
-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에 의한 환경조사
- 은사에 관한 사항

임용 :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갱생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I · II · III종) 합격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공무원 시험 이외에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려되는 사상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인관계의 일을 좋아하는가
- ② 원만한 관계, 협조 및 공동활동
- ③ 사회봉사활동 경력

④ 체육, 문화, 클럽활동 및 지도력

선발과정은 최초의 공식시험을 거친 후 서류·면접을 통하여 최종선
발까지는 95%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공식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은 자 일지라도 上記의 고려사항에 적합치 못한 자는 탈락된다.

연수 : ① 중앙연수

• 관리연구과 연수(내용)

조직의 장에 합당한 관리 및 식견에 대하여

• 관리과 연수

관리의 이론·기술의 습득

• 고등과 연수

세미나를 중심으로 보호행정, 관계분야의 제반과학의 깊은 이해
와 기술의 습득

• 전공과 연수

처우기술등의 전문연수

• 중등과 연수

보호관찰관 신입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관계법령, 관련분야의
제반 과학에 대한 기초지식, 기능, 실무의 습득

② 지방연수

• 특별과 연수

실무를 중심으로 중등과의 연수

• 초등과 연수

2000년 5월 12일~7월 3일(53일간)동안 실시한 제 56 회 보호관
찰관 중등과 연수 일정(별첨2참조)

(5) 보호사 등 민간협력者

① 보호사

- 법무대신으로부터 위촉된 비상근 국가공무원이다.

임기 : 2년, 정원 : 52,500인, 현재 수 : 48,860인

- 보호관찰관과 협력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외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귀주 예정지 선정의 환경조정, 범죄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1998년도 보호사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80세 이상이 21%이상이고, 40~70세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연령은 65세이다.

이들의 직업분포는 농수산업분야가 20%, 종교단체가 18%, 상업이 10%, 가정주부 및 은퇴자가 25%, 학교교사가 2%, 기업인이 5% 및 기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0%이고, 여성은 20%이다.

② 갱생보호법인

갱생보호법인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갱생보호사업법의 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갱생보호사업에는;

- 계속보호사업

보호관찰대상자, 형무소로부터의 만기석방자들 중에서 적당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숙박, 생활지도 및 직업 보도 등을 실시하며 그 자립갱생을 원조한다.

계속 보호사업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999년 4월 1일 현재 2,268인이며, 실제 수용인원은 이의 63%이다.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직원 수는 163인이며, 각 시설에 한 사람 정도가 교육,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355인은 시설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요원(사무, 요리, 기타 보조원)이다.

표1. 계속보호사업을 위한 1997년도 예산비율%

소 득		지 출	
정부지원	75.7%	인건비	55.8%
기부금	14.1%	시설원생보호/지원비	27.7%
시설원생	3%	시설유지비	2.8%
시설자산	1.6%	사무실유지비	8%
기타	5.54%	기타	5.6%

※ 山田,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2000

- 일시보호사업

숙박보호는 실시하지 않고 주거지 알선이나 금품 제공등을 실시한다.

법인수 : 166(시설과 설치경영법인 99, 1999년도 수용정원 2,270인)

- 연락조성사업

상기의 사업에 대한 조성을 실시한다.

③ BBS

비행소년의 좋은 친구가 되어 형제나 자매의 입장에서 비행소년의 재기를 도와줌과 동시에, 비행 없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비행방지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회원수 : 6,225인 (1999년 4월 1일 현재)

④ 갱생보호부인회

부인의 입장에서 범죄자, 비행소년의 갱생보호 및 범죄예방에 협력하고 범죄 없는 밝은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인자원봉사단체

회원수 : 202,016인(1999년 4월 1일 현재)

⑤ 협력고용주

범죄자 비행의 전력을 가진 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그 재기를 원조하는 민간독지사업가이다.

표2. 협력고용주 등록 수 : 4,228인 (1999년 4월 1일 현재)※

고용구분	수	%
건축	1,947	46.1
제조업	710	16.8
서비스업	463	11.0
도/소매업	237	5.6
전기/가스/수도	176	4.2
운송업	156	3.7
농수산업	57	1.3
광산업	10	0.2
기타	472	11.2
계	4,228	100.0

※ 山田,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2000

3) 갱생보호관계예산

일본정부의 각 부처별 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별첨 3) 법무성의 예산은 약 6,000억엔(약 6조원)으로서 국가총예산(850조원)의 0.71%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갱생보호관련 예산은 별첨 4의 2000년도 예산액 조직별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성 예산의 3.09%인 188억엔(약 1,880억원)이다.

표3. 2000년도법무성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도표(별첨 4참조)

부서	예산액	비율
교정관서	201,950,273 천엔	33.51 %
검찰청	105,559,506 천엔	17.51 %
법무국	95,929,723 천엔	15.92 %
법무총합연구소	2,404,177 천엔	0.40 %
법무성시설비	20,686,581 천엔	3.43 %
법무본성	107,747,730 천엔	17.88 %
공안조사청	17,555,273 천엔	2.91 %
공안심사위원회	74,896 천엔	0.01 %
지방입국관리관서	32,191,663 천엔	5.34 %
갱생보호관서	18,833,616 천엔	3.09 %
계	602,750,149 천엔	100.00 %

※山田,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2000

2000년도 예산액 사용도별 비율로서 각 경비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물건비, 별첨5참조)

일반여비	직원여비, 연수여비, 부임여비
업무여비	가석방 등 심사여비, 보호원호여비
기타여비	위원여비, 연수생여비, 참고인등 여비, 귀가원호여비
일반청비	청(廳)비, 정보처리업무청비, 통신전용료, 이전비
업무청비	가석방등 심사비, 보호원호청비
그 외의 관청비	자동차중량세, 피보호자 피복비
기타	위원수당, 아동수당, 사례금, 보상비, 국유자산소재시 교부금, 교제비, 식사비급여금

인건비와 물건비의 비교

2000년도 갯생보호관서 총예산 1,188억엔 중 인건비는 54.8%인 1,103억 엔이며, 물건비는 45.2%인 850억 엔이다.

갯생보호관서의 물건비 총액 850억 엔에서 각 경비의 분류비율을 보면, 보호사 실비 변상비가 41.9%(370억엔)이며, 갯생보호위탁비는 33.4%(280억엔), 갯생보호시설정비비보조금은 1.6%(14억엔), 여비(일반·업무포함)는 4.4%(37.5억엔), 관청비(일반청·업무청포함)는 18.1%(154억엔)이고, 기타는 0.6%인 5억 엔이다.

별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관측경비 및 민간경비비교는 다음과 같다.

관측경비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청(廳)비, 제반사례금 및 위원수당 등이다.

민간경비는 보호사관계경비, 갯생보호시설관계경비 및 협력조직관계경비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보호사 관계 경비 - 보호사 실비 변상금, 신입보호사 연수 등의 경비이다.
- 2) 갯생보호시설관계경비 - 갯생보호 위탁비, 갯생보호시설 정비비보조금, 갯생보호시설 직원실무 연수 등의 경비이다.
- 3) 협력조직관계경비 - BBS회원 및 갯생보호부인 회원 연수 등의 경비이다.

총 물건비 850억 엔에서 42.3%(360억엔)는 보호사관계 경비이며, 35.2%(299억엔)는 갯생보호시설관계경비이며, 일반사무처리경비(관측경비)는 21.9%(187억엔)이고, 협력조직관계경비는 0.6%인 5.1억 엔이다. 이들 중 관측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민간경비로서 총 물건비의 78.1%인 665억 엔이다.

별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보호관찰관의 봉급은 7급 1호봉 수준이며, 과장은 9급 1호봉에서 5호봉 사이이다.

4) 보호관찰처우상의 제시책

(1) 분류 처우제

보호관찰대상자를 처우의 난이(難易)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구분에 대응하여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에 의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처우 활동을 행

사하는 제도.

재범·재 비행의 위험성의 관점에서 예측하고, 이에 요보호성 등에 관한 임상적인 소견을 첨부하여 종합적인 처우의 난이성을 판정함.

A분류 : 처우가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자

보호관찰관은 보호사와 적극적으로 연락, 협의 등을 하고 정기주재 등을 활용하여 직접 처우를 고려해 나간다.

B분류 : 처우가 그다지 곤란하지 않다고 예측되는 자

(2) 유형별 처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지닌 문제성과 그의 특성, 그 범죄, 비행의 양상, 각 조건 등에 따라 11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마다 그 특성에 초점을 둔 효율적인 처우를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가지 유형

- ① 신나 등의 남용 자
- ② 각성제 사범
- ③ 폭력조직관계
- ④ 성범죄
- ⑤ 중학재학
- ⑥ 무직소년
- ⑦ 가정폭력
- ⑧ 학내폭력
- ⑨ 폭주족
- ⑩ 정신장애
- ⑪ 무기(無期)

(3) 단기보호관찰

일반사건에 의한 1호 관찰에 조치된 소년 중, 가정재판소로부터 단기보호관찰의 처우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실시하는 사회적응 촉진 지도를 중심으로 한

단기간의 보호관찰이다.

실시대상 : ① 비행성의 정도가 그다지 깊지 않을 것.

② 자질에 편협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③ 반사회적 집단에 가입해 있지 않을 것.

④ 보호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하지 않을 것.

실시기간 : 대체로 6월부터 7월이내이며, 기간의 연장 경우에도 시작후 10월
까지 종료한다.

실시방법 :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영역을 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제의
이행을 지도함과 동시에 대상자로부터 생활상황보고서를 제출시
키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지도영역 : ① 생활습관, ② 학교생활, ③ 취업관계

④ 가족관계, ⑤ 친구관계, ⑥ 기타

* ⑥의 기타에는 사회참가활동(봉사활동, 취업실습, 사회견학),
각종집단처우(신나 대상자 집단처우 등) 갱생보호시설처우
프로그램, BBS가 기획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 등이다.

(4) 장기형 가 출옥자에 대한 중간처우

장기형 수형자로서 지방위원회가 가출옥을 허가한 자 중, 이에 상응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시키고 생활훈련을 중심으
로 한 처우 및 직업에 대해 원조를 실시하며 또한 원활한 사회생활에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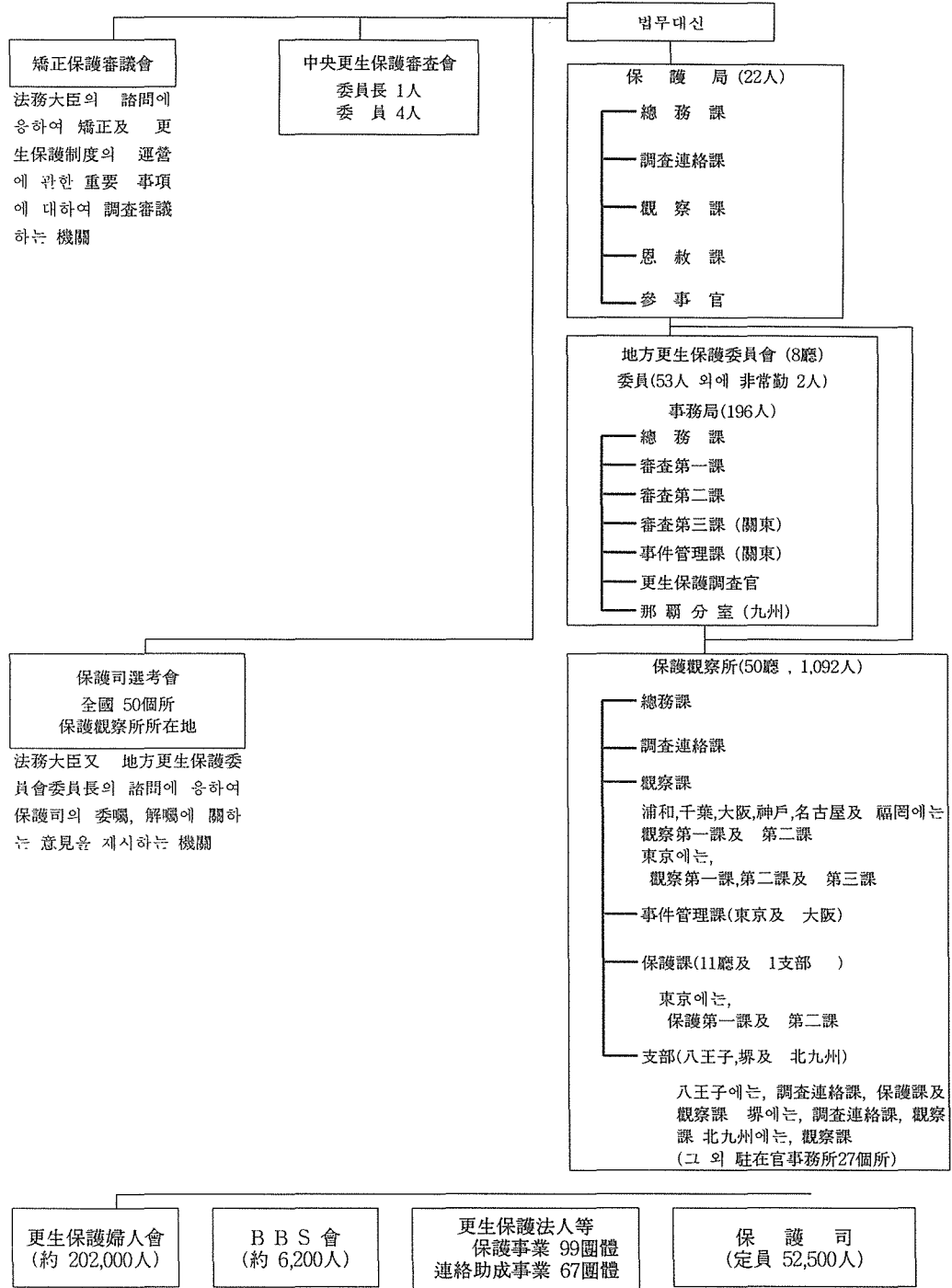
실시대상 : 일정기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지도를 받는 것에 동의 하여
가출옥을 허락 받은 장기 수형자, 정신장애자와 그 외 특별한 치
료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실시기간 : 1月

그 외 교통사건에 관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반보호관찰과는 다른 절차에
의한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별첨 1

更生保護의 機構圖



별첨 2

第5 6回保護觀察官中等科研修(前期)日程

平成12年5月12日(金)～7月 3日(月) 53日間,

(主任 久保教官)

月 日	曜 日	9:30 11:00	12:30	13:30 15:00	16:30
5 / 12	金	開會式	訓話(10:30-12:00) 保護國長 馬 場 義 宣	打合 座談會	
13	土				
14	日				
15	月	犯罪豫防活動 保護局調査連合課補佐官 幸 島		刑事訴訟法(公判・) (1) (2) 教 官 中 屋 利 洋	
16	火	更生保護行政 保護局總務課長 坂 井 文 雄	保護觀察總說(1) 保護局觀察課長 千 條 武	更生保護總論(1) (2) 保護局參事官 山 田 憲 兒	
17	水	刑事法의 基本問題 研修第二部長 川 崎 和 彦		更生保護總論(3) (4) 保護局參事官 山 田 憲 兒	
18	木	刑法總論(1) (2) 教 官 錦 織 聖		刑事訴訟法(搜查)(3) (4) 教 官 山 川 景 逸	
19	金	刑事訴訟法(公判・)(5) (6)完 教 官 中 屋 利 洋		(浦安總合 體育館) 體 育(1) (2)	
20	土				
21	日				
22	月	保護觀察總說(2) (3) 教 官 鈴 木 美香子		刑法總論(3) (4)完 教 官 錦 織 聖	
23	火	保護觀察總說(4) (5) 教 官 鈴 木 美香子		假釋放 環境調整(1) (2) 教 官 久 保 貴	
24	水	假釋放 環境調整(3) (4) 教 官 久 保 貴		刑法各論(1) (2) 教 官 小 川 賢 一	
25	木	更生保護總論(5) (6)完 保護局參事官 山 田 憲 兒		民 法 首席研修專門官 小 柳 稔	

月 日	曜 日	9:30 11:00	12:30	13:30 15:00	16:30
5 / 26	金	保護觀察總說(6)(7) 教 官 鈴 木 美香子		刑法各論(3)(4)完 教 官 小 川 賢 一	
27	土				
28	日				
29	月	假釋放 環境調整(5)(6) 教 官 久 保 貴		(1)(2) 大正大學教授 石 川 到	
30	火	保護觀察總說(8)完 教 官 鈴 木 美香子	心理學(1) 教 官 久 保 貴	(3)(4)完 大正大學教授 石 川 到	
31	水	假釋放 環境調整(7)(8)完 教 官 久 保 貴		恩 赦(1) 保護局恩赦課長 米 村 俊 郎	恩 赦(2) 保護局恩赦課補佐官 青 木 信 人
6 / 1	木	更生緊急保護及 更生保護事業(1) 保護局保護調査官 柿 澤 正 夫	更生緊急保護及 更生保護事業(2) 教 官 久 保 貴	社會技術訓練(S S T) 更生保護法人 更新會主幹 高 橋 和 雄	
2	金	考試(1) 更生保護總論	考試(2) 刑 事 法	實地實習(1)(2) 東京地裁	
3	土				
4	日				
5	月	更生緊急保護及 更生保護事業(3)(4) 教 官 久 保 貴		保護司制度(1)(2)完 保護局調査連絡課長 西 中 間 貢	
6	火	發達心理學(1)(2)(3)(4)完 東京學藝大學教授 福 富 護			
7	水	更生緊急保護及 更生保護事業(5)(6) 教 官 久 保 貴		恩 赦(3)(4) 保護局恩赦課補佐官 青 木 信 人	
8	木	更生緊急保護及 更生保護事業(7)(8)完 教 官 久 保 貴		保護觀察實務Ⅲ(特別遵守事項の 設定)(1)(2)完 關東地方更生保護委員會事務局 事件管理課長 葉 保	

月 日	曜 日	9:30 11:00	12:30	13:30 15:00	16:30
6 / 9	金	考試 (3) 保護觀察總說	考試 (4) 假釋放 環境調整	實地實習 (3) (4) 更生保護施設 兩全會, 東京實華道場(押上)	
10	土				
11	日				
12	月	社會福祉論 (1) (2) 教 官 鈴 木 美香子		少年法 (1) (2) 教 官 久 保 貴	
13	火	(浦安總合 一B 2教室) 保護觀察實務IV (質問調書の 作成) 關東地方更生保護委員會事務局 審査第三課長 中 川 利 幸		(浦安總合 一B 2) 少年法 (1) (2) 教 官 久 保 貴	
14	水	(1) (2) 千葉大學助教授 羽 間 京 子		檢察 保護 東京地方檢察廳檢務主任檢察官 鶴 田 小夜子	
15	木	藥物活用・依存の 臨床 の 治療 (1) (2) (3) (4)完 宮 崎 病 院 副 院 長 福 井 進			
16	金	考試 (5) 恩 赦	考試 (6) 更生緊急保護及 更 生 保 護 事 業	實地實習 (5) (6) 東京都兒童相談 一	
17	土				
18	日				
19	月	(浦安總合 一B 2教室) 少年法 (5) (6)完 教 官 久 保 貴		(浦安總合 一B 2教室) 人格診斷 (1) (2) 法務總合研究所研究官 小 柳 浩 子	
20	火	Ⅱ(交通集團處遇) 東京保護觀察所保護觀察官 能 登 利 裕		人格診斷 (3) (4)完 東京少年鑑別所鑑別指導官 寺 崎 武 彦	
21	水	(3) (4)完 千葉大學助教授 羽 間 京 子		矯正 保護 矯正局醫療分類課鑑別企劃官 石 毛 博	
22	木	保護觀察各設 (1) (2) 保護局觀察課調查官 佐 藤 比呂明		家裁 保護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教官 田 中 義 一	

月 日	曜 日	9:30 11:00	12:30	13:30 15:00	16:30
6 / 23	金	保護觀察官實務Ⅰ(面接技法)(1)(2) 浦和保護觀察所觀察第一課長 生 島 浩		人權 保護 人權擁護局調査課補佐官 田 哲	公務員倫理 保護局總務課專門官 田 中 一 哉
24	土				
25	日				
26	月	保護觀察各設(3)(4) 保護局觀察課調査官 佐 藤 比呂明		入管 保護 入國管理局警備課警備指導官 山 中 英 俊	
27	火	(浦安総合 一A 1) I 教 官 鈴 木 美香子		(浦安総合 一A 1) 保護觀察各設(5)(6) 保護局觀察課處遇企劃官 松 田 慎 一	
28	水	保護觀察官實務Ⅰ(面接技術)(3)(4)完 浦和保護觀察所觀察第一課長 生 島 浩		保護觀察各設(7)(8) 保護局觀察課處遇企劃官 松 田 慎 一	
29	木	保護司研修 教 官 鈴 木 美香子		保護觀察各設(9)完 保護局觀察課處遇企劃官 松 田 慎 一	心理學(2)完 教 官 久 保 貴
30	金	實 地 實 習(7)(8)(9)(10)完 愛光女子學園, 八王子醫療刑務所			
7 / 1	土				
2	日				
3	月	記録の作成 教 官 鈴 木 美香子		一般教養 教 官 久 保 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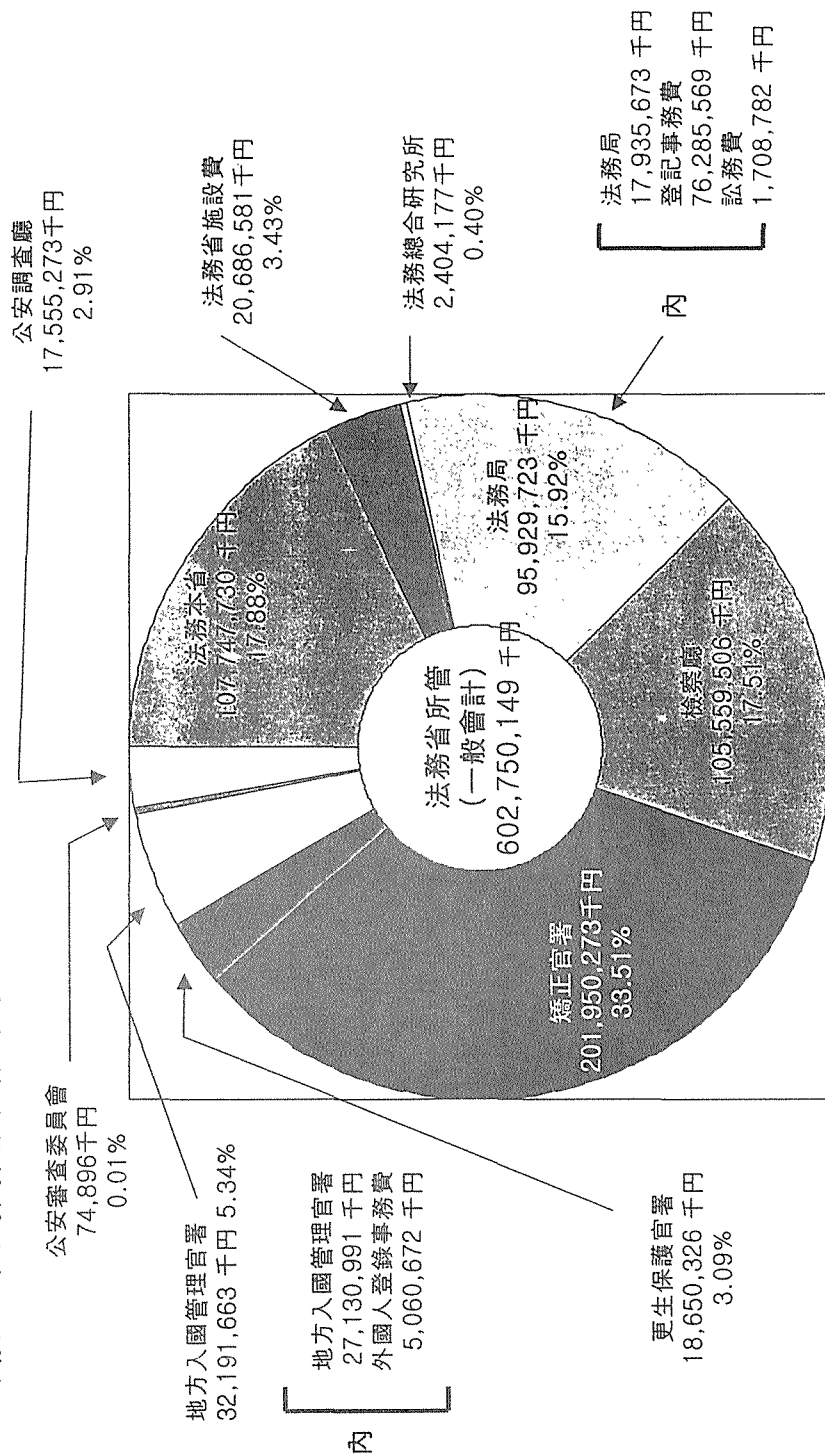
별첨 3

省廳別一般會計概算額一覽表

(單位 : 百万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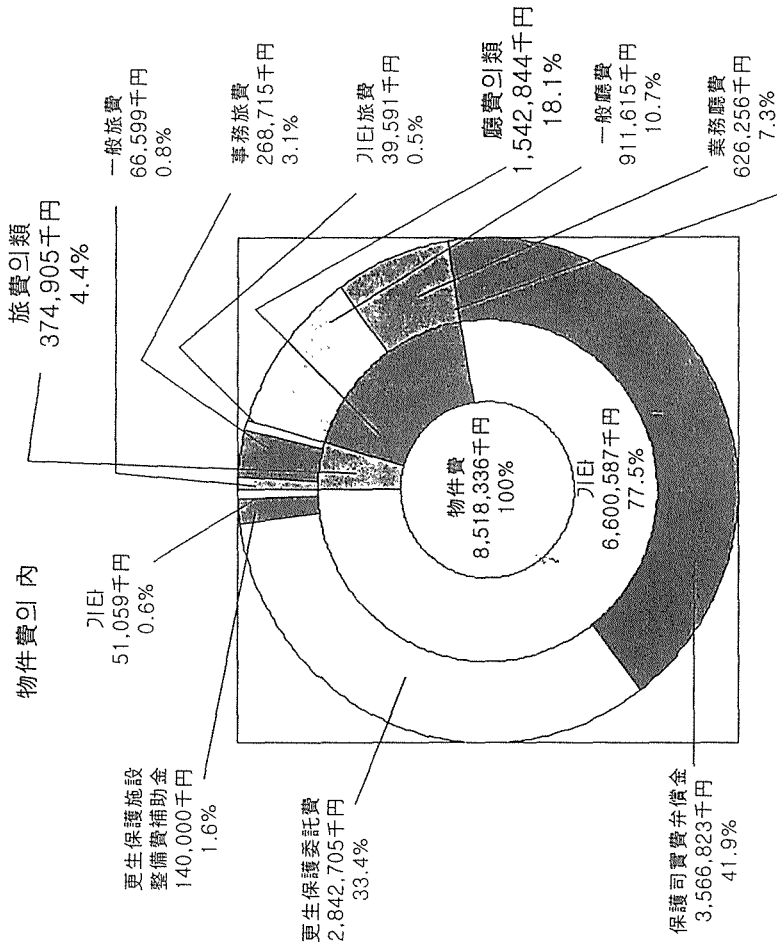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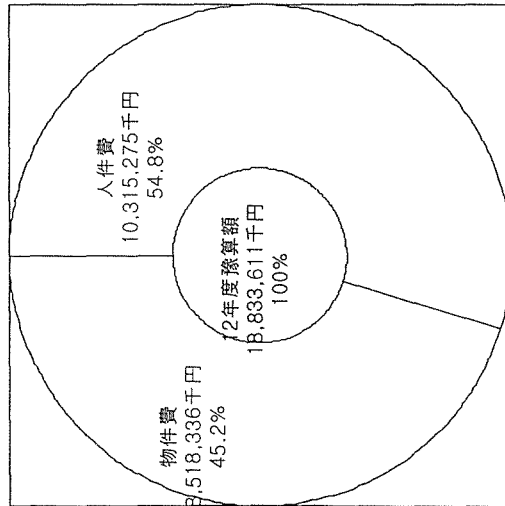
所 管	前年度豫算額	平成12年度 豫算額	比較増△減額	伸率 (%)	備 考
皇 室 費	6,920	7,055	135	2.0	
國 會	138,802	144,917	6,115	4.4	
裁 判 所	318,406	318,666	260	0.1	
會 計 檢 査 院	16,542	16,449	△93	△0.6	
內 閣	20,979	71,848	50,869	242.5	
總 理 部	9,374,706	8,323,225	△1,051,481	△11.2	
法 務 省	592,940	602,750	9,810	1.7	
外 務 省	759,522	773,716	14,194	1.9	
大 藏 省	1,906,672	1,596,448	△310,224	△16.3	
文 部 省	5,870,679	5,178,464	△692,215	△11.8	
厚 生 省	16,247,828	15,505,444	△742,384	△4.6	
農 林 水 産 省	2,979,283	3,000,979	21,696	0.7	
通 商 産 業 省	917,200	602,669	△314,531	△34.3	
運 輸 省	945,344	1,086,017	140,673	14.9	
郵 政 省	103,119	111,114	7,995	7.8	
勞 働 省	519,022	437,652	△81,370	△15.7	
建 設 省	5,566,622	5,496,644	△69,978	△1.3	
自 治 省	103,200	174,866	71,666	69.4	
內 閣 府	-	916,651	916,651	-	新設省廳(3 月分)
總 務 省	-	34,554	34,554	-	上同
財 務 省	-	329,524	329,524	-	上同
文 部 科 學 省	-	716,315	716,315	-	上同
厚 生 勞 働 省	-	1,482,005	1,482,005	-	上同
經 濟 産 業 省	-	320,988	320,988	-	上同
國 土 交 通 省	-	337,350	337,350	-	上同
環 境 省	-	5,042	5,042	-	上同
公共事業等豫備費	500,000	500,000	0	0	
計(一般歳出)	46,887,786	48,091,352	1,203,566	2.6	
國 債 費	19,831,923	21,965,341	2,133,418	10.8	
地 方 交 付 税 交 付 金	13,523,000	14,930,360	1,407,360	10.4	
合 計	80,242,709	84,987,053	4,744,344	5.9	
平成9年度決算不足補 繰戻	1,617,413	-	1,617,413	-	
總 合 計	81,860,122	84,987,053	3,126,931	3.8	

平成12年度豫算額組織別内表



平成12年度豫算額使用送別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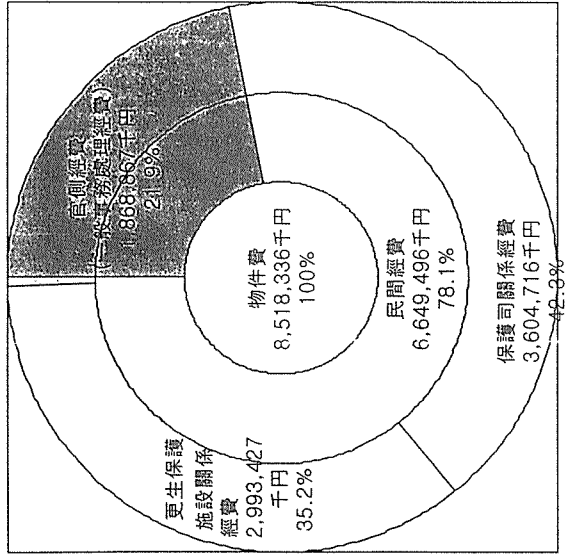
<人件費 物件費의 比較>



注. 각 경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一般旅費-職員旅費, 研修旅費, 赴任旅費
 業務旅費-一般旅費, 研修旅費, 補選接遇旅費
 기타旅費-委員旅費, 研修生旅費, 参考人等旅費, 住接遇旅費
 一般廳費-廳費, 情報處理業務費, 通信專用料, 移
 그외의 과세출입-自動車重量稅, 被保護者旅費
 기타-委員手當, 兒童手當, 請謝金, 報償費, 國有財産所在市町村交付金, 交際費, 食事費給與金

平成12年度豫算官側經費.民間經費比較

協力組織關係經費
51,326千円
0.6%



- 주1. 관측경비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정비, 제사례금, 위원수당 등이다.
- 주2. 민간경비는 보호사관계경비, 갱생보호시설관계경비 및 협력조직관계경비이며, 그 나머진 다올과 같다.
- (1) 보호사관계경비 - 보호시설비변상금, 신임보호사연수 등의 경비이다.
- (2) 갱생보호시설관계경비 - 갱생보호위탁비, 갱생보호시설정비비보조금, 갱생보호시설직원실무연수 등의 경비이다.
- (3) 협력조직관계경비 - 88S회원 및 갱생보호부인회원 연수 등의 경비이다.

별첨 7.

行政職俸給表

職務 의級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6 級	7 級	8 級	9 級	10 級	11 級
號俸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俸給月額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1			189,000	225,000	243,100	264,300	284,300	306,300	341,300	380,200	430,100
2	137,500	174,400	196,300	233,300	252,300	273,500	293,800	316,600	353,700	392,800	444,800
3	141,900	181,400	203,800	242,000	261,700	282,800	303,600	327,100	366,100	405,400	459,500
4	146,500	188,900	211,300	251,100	270,500	292,100	313,700	337,800	378,200	418,000	474,300
5	151,800	195,000	219,500	260,400	279,300	301,500	323,700	348,500	390,100	430,700	488,800
6	157,700	200,500	227,600	269,100	288,200	311,100	333,900	359,200	402,000	443,100	503,200
7	163,800	206,000	235,600	277,800	297,000	320,700	344,100	369,300	413,800	455,300	517,500
8	170,200	211,400	243,200	286,300	305,700	330,300	354,100	379,100	425,800	466,900	531,800
9	174,800	216,400	249,900	294,700	314,400	339,900	363,800	388,800	437,600	478,300	546,100
10	178,600	220,900	256,400	302,900	322,900	349,400	373,300	398,400	448,700	489,400	560,400
11	181,800	225,400	262,800	310,800	331,200	359,000	382,600	408,000	458,800	499,200	571,800
12	184,700	229,800	268,500	318,300	338,900	368,400	391,600	417,600	468,500	508,200	579,200
13	187,500	234,100	274,100	325,500	346,500	377,600	400,300	426,600	476,400	515,800	586,300
14	189,800	237,400	279,300	332,500	353,800	386,600	407,400	434,700	483,100	522,900	592,500
15	191,900	240,500	284,500	338,800	359,600	394,300	413,100	440,700	489,800	527,500	597,300
16	193,500	243,600	289,100	344,500	364,500	400,000	418,000	446,600	494,400		
17		246,600	293,300	348,200	368,500	405,200	422,300	450,500	498,900		
18		249,500	297,000	351,600	371,900	408,700	426,000	454,400	503,200		
19		251,500	300,300	354,900	374,900	412,300	429,700	458,300			
20			302,700	357,200	377,800	415,800	433,300	462,000			
21			304,700	359,500	380,400	419,300	437,000	465,800			
22			306,700	361,800	383,000	422,800	440,700				
23			308,700	346,100	385,600	426,300					
24			310,700	366,400	388,200	429,900					
25			312,700	368,800	390,900						
26			314,600	371,100	393,700						
27			316,500	373,400							
28			318,500	375,800							
29			320,500								
30			322,500								
31			324,500								
32			326,500								

IV. 토의 및 제언

지금까지 선진 5개국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조직의 운용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들 제도운용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모두가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구조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첫째로, 상하계층적인 권한의 구조(Hierarchical Authority Structure)로서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의 구조는 각 직급의 계층적 위계가 명확하며, 둘째로, 좌우로 분산된 세분화된(Division of Labor)업무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각국의 조직은 보호관찰관들이 상부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역할수행(Standardization of Role Performance)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넷째는 각 직위에 대한 비개인성(Depersonalization of Position)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다섯째는 모든 주요한 결정은 조직이 설정한 규정(Decision-making by Rule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들의 주요 임무는 범죄자들에 대한 감독과 지도 및 이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와 서비스의 균형있는 임무수행을 위 하여는 전통적인 관료주의 지향적인 조직의 운용은 지역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범죄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투입이 요청되는 전략적 개입지향적인 접근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보호관찰조직체계는 습·法的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료주의적 조직구조의 장점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부분의 기능강화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예는 독일·영국·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협력체계 프로그램으로서 탈 관료주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성은 보호관찰관과 관찰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고 兩者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참여자로서 관찰대상자들이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관계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방향은 조직의 기능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관찰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에 예민한 반응을 강조한다. 보호관찰관들은 관찰대상자들에 대한 감독이 외부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관찰대상자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조한다.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의 예로서 위스콘신, 시카고, 쿡카운티 및 인디애나 주의 지역사회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미 위스콘신 보호관찰국은 현재 인근지역 중심 보호관찰감독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모형은 관찰대상자, 보호관찰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지리적으로 한정된 인근지역 내의 지역사회센터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케 하면서 경찰과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양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찰대상자들과 이들이 적응해 나가야 할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미 시카고 지역의 쿡 카운티에서 실행되고 있는 ‘안전 프로젝트(Project Safety)’는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0여 명의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교육적이고 교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와의 협조연결체제를 강화·증진시키고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of Probation & Parole, 1999).

인근지역사회중심 보호관찰은 개인 범죄자에 대한 초점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그 방향을 전화하고 있다. 환언하면, 보호관찰관들은 사무실 거점 임무에서 지역사회로 그들의 업무거처를 이동시켰으며 관찰대상자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 대한 더욱 정확한 환경적응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같은 초점의 변환은 인근지역 경찰관, 사회사업가, 건강보호간호사 등과 같은 다른 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호관찰관들은 안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호지지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인근지역으로의 이동과 초점의 전환은 보호관찰관들로 하여금 범죄자들이 매일 총기와 마약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들을 인식케 하였고, 결국은 마약사용과 중독, 실직 및 각종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였다.

정의회복(Restorative Justice)은 지역사회교정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전제는 범죄행위는 피해자, 지역사회 및 가해자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자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범죄자를 다루는 기관들은 재판과정에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참여케 하고 범죄자들은 범죄행위를 그들이 야기 시킨 손상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중재, 피해자 의식교육, 손해배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한다. 범죄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인식케 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한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 및 지역사회 모두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보호·교정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재통합의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Berlin의 보호관찰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적 운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보호관찰관들은 여러 기능역할에서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며 관찰대상자들이 empowering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동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협력체계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관료체계지향 조직의 운영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궁극목적인 범죄자들의 사회적응을 통한 사회복귀 실현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가능성은 지역사회 일선 현장에서 관찰대상자들을 감독·지도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부심, 만족감, 동기부여 및 사명감을 갖게 하는 조직운영의 체계가 보호관찰프로그램 운영에 제도화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론적 조직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조직의 구성원인 보호관찰관들의 업무수행의 기본자세가 상호협조, 존중, 참여 및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 지도력과 소집단적 의사결정참여의 증진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여러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고찰하면서 관찰되었다. 그들 조직의 경계(Boundary)는 지나치게 폐쇄 또는 개방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적절한 경계 유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제반 사회기관인 경찰, 교도소, 기타 공공기관과의 유관협조체계 조성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증거로서 조직의 경계 관리에 만족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人的·物的 자원의 투입(Input)과 조직체계를 통해 귀환(Feedback)되는 투입의 적절한 관리가 프로그램관리 차원에서 관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귀환을 통해 다시 투입되는 사항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고 신속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다. 스웨덴,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프로그램의 실행은 영·미·독일의 보호관찰제도 조직의 원활한 귀환투입의 제도화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귀환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은 보호관찰관들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세분화하는 분화(Differentiation)의 형성이며 외부로부터의 투입의 적절한 조절과 보호관찰제도의 구조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Output)의 적절한 활용은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안정성 또는 항상성(Homeostasis)을 돕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선진각국 보호관찰제도의 특징은 이들 조직의 항상성에 있으며 새로운 변화(예: 범죄의 증가, 난폭성, 재범률 증가 등)에 대한 부단한 대응을 조직관리를 통하여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운용은 시설구금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독과 보호를 받는 보호관찰처우를 처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호관찰 처분 역시 주요한 처벌의 수단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범법자의 70% 이상을 지역사회 교정의 일환인 보호관찰제도를 프로그램화하여 범법자들의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강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보호교정 정책과 행정은 지역사회를 동반자(Community Partnership)로 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가 요청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시민의 안전(Public Safety)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70% 이상의 범법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제도의 궁극목적인 시민의 안전과 사회보호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 효과 및 적절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지가 보호관찰제도의 필요성을 합리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이에 반드시 수반되는 수단과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후자에 해당되는 요건들에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그리고 제도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정신과 제반조직이론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 상황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반되어야 할 요건들의 결핍정도는 심각한 수준하에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감독·지도하는 보호관찰관들과 그들의 자질은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보호관찰관 당 30~70명 정도를 관리케 하며(우리의 경우 400~450) 그들의 비효율적 제도운영을 파다한 관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자격규제를 사회사업전공자로만 하고, 나이는 30세를 초임 보호관찰관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연령제한은 인간의 성숙정도를 카운셀링에 주요한 자질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분한 정부 예산 또한 보호관찰제도의 필수조건이 된다. 선진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예산은 시설교정행정 예산의 11%를 상회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0.26%). 선진국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자질 있는 보호관찰관의 등용에 그들의 비효율적 운영을 돌리고 있다.

	인구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관	관리사례수	봉급	예산
영국	5880만	129,800	7,500	50	3500만원	9900억
독일	8200만	159,779	2,431	70	3450만원	1267억
스웨덴	886만	11,686	710	25	2700만원	410억
일본※	12660만	147,871	734	70	3300만원	2046억
미국	27500만	3,033,479	60,993	70	3500만원	37조
한국	4500만	140,000	400	450	2300만원	180억

※山田, 日本の 更生保護製圖, 2000

상기의 표는 2000년 현재 선진 5개국 및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인력과 예산의 비교자료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영국, 일본 및 독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인력과 예산에서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인근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영국의 인력과 예산에 카다란 차이를 보이나, 사회의 공공질서와 법의 준수정신이 문화, 역사, 전통으로 제도화된 일본은 영국의 보호관찰인력의 10분의 1, 그리고 예산의 4.8분의 1로서 영국의 제도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는 물론 잘 훈련되고 많은 사회경험과 높은 공익정신을 사명감으로 하는 일본의 보호사들의 공헌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예산규모는 영국의 7.8분의 1, 인력은 3분의 1이나 Berlin의 경우 그들 제도 운영의 효율과 효과성은 영국의 그것보다 더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이 같은 효율·효과적 제도 운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성숙도와 그들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전문 지식, 이론, 가치 및 기술과 통합되어 관찰대상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모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여러 제한적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관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 하여는 선진국의 인력과 예산에 준하는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우리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제도적 효과는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감독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 정신에 있다고 본다.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제도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반시민들의 처벌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인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처벌의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처벌태도에 대한 논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의 질서와 법의 준수를 위해 오랫동안 의존해 왔던 주요수단은 응보-보상적 차원에서의 처벌이다. 오랜 논쟁에서 보듯이, 처벌이란 사악함에 대한 “정당한 응징” 또는 보복으로서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려깊은 사람이라면 이같은 승화된 사회적 보복이론에 따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범법자를 저주하고 우리의 증오를 표현함이 자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옳고 당연하다고 때로는 논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범죄자에 대한 반작용적 증오는 학습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증오하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나 그러한 자들에 대한 증오감이 사회보호의 정책을 기초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불합리하고 초보적인 방법이며 비경제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보복적인 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재범의 풍조를 저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사회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 운영에 있어 사용하는 방법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현재의 사법형사 교정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에 만족하는 것은 사회보호와 안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사회적 이득이라 생각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존 제도의 방법으로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방법으로부터 범죄행위의 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 자체의 보호와 안전에 관심을 두면서도 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각자 생활의 복지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원들에 대한 교정에도 의무가 있다.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공정의 원칙 하에서 자기 개선과 교화에 대한 최대의 약속이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처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범죄를 규정하는 형법과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믿어지는 정확한 형

량을 형벌조항은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기계적으로 이같이 기재된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자에 형량을 부여한다. 그러나 형벌제도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범죄를 자행하고 아니하는데 영향을 주는 복잡한 정신적, 사회심리적 요인 때문에 처벌의 개별화는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효과적인 개별화는 추측, 기계적인 절차, 육감, 정치적 고려 또는 과거의 범죄기록과 같은 것들에 기초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각 범죄의 특수상황과 각 범법자의 독특한 개성에 관련되는 정신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염소들로부터 양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방법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행위(acts)에 대한 개별화이지 행위자(actor) 즉, 인간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충분한 과학적 방법의 활용 없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개별화는 주먹구구식의 기계식 과정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구체화된 편견일 뿐이다.

오늘날의 지역사회교정을 통한 보호관찰관들의 교화에 대한 노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사회 심리적 재 적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같은 재 적응의 뜻은 신앙인으로서의 전환이나 도덕적으로 다시 탄생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다룸으로서 그 자신의 준법 시민임을 인식시키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재적응을 위한 노력은 그 개인 자신에 초점을 두는데 있다. 교화적인 처우의 기본 윤곽은 사회사업의 개별화방법, 지역사회중재방법과 심리학의 내적 통찰력을 통한 개인의 갈등 인식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교화의 주요 목적은 그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가 적응해야 할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 그를 원조하는데 있으며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인식시키고 자제력을 얻게 해 주는데 있다. 태도는 대부분 사회적 접촉의 산물이다. 개인의 태도를 결정 지우는 주요한 접촉들은 빈번하고 친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가족, 또래집단, 그리고 그의 이웃이다. 태도를 수정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그 개인의 그룹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교화활동의 문제점은 시설내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아마도 형평의 원리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하는 입장에 더 강조를 두는데서 발생된다고 본다. 교화적 처우는 형평 또는 평등과 같은 현실검증이 가능치 않은 허구의 혼미에서 벗어나 개인의 현실적응성에 초점을 두는 개별화된 진단과 과학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범죄자들이 행동하게 되는 동기, 이성, 非理性, 그리고 우리가 범법자들을 대할 때 취하는 행동의 저변에 깔린 동기(때로는 비이성적이지만)를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성, 억제성 및 치료성에 근거한 교화정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반세기전 영국의 처칠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죄와 죄인을 다루는데 있어 일반시민의 풍조와 태도는 어느 나라이든 그 사회의 문명을 시험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의 하나이다. 용의자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든 그들의 권한에 대한 공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진정한 탐구, 그리고 엄격한 처벌 제도에서 그들의 몫을 지불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소망과 열정, 치료적이고 재생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귀중함이 있다는 명확한 신념, 이러한 점들이 죄와 죄인을 다루는데 있어 한 나라가 축적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만 살아있는 가치에 대한 그 나라의 표상과 증거가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성공적인 보호관찰 운영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일반시민의 인식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이 성공적이길 바란다. 현 보호관찰관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과 제반 이론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대우문제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사회기여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자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에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여야만 한다.

400~450명 정도의 케이스를 관리하는 일선 보호관찰관들의 과중한 업무는 그들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서류처리에만 급급하게 하였다.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인 보호관찰은 지역현상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간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 나라는 많은 유희인력이 있다. 정년퇴임 교육공무원들은 보호관찰제도의 결핍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원이다. 중·고·대학의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자들에게 그들이 원할 경우 정부가 비상근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또한 대학의 전문 교수들이 봉사할 수 있다.

범죄는 사회적 문제이다. 더 이상 개인에 전가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범죄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운영될 때 우리가 바라는 시민의 안전과 사회보호의 목적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Americ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1999

The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Restorative Hope Through Community Partnerships : The Real Deal in Crime Control, Lexington, Kentucky, 1996.

Association of Chief Officers of Probation, Annual Reprot, 1999~2000.

Camp, Camille G. et al, ed : The Corrections Yearbook 1999 : Adult published by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e, Inc. Middletown, Conneticut, 2000.

Chese, Wayne A. and Norlin, Julia M.,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 A Social System Model, Allyn and Bacon, Boston, 1995.

Holland, T.P., & Petchers, M.K.(1998). Organizations : Context for Social Service Delibery, In a Minahan(Editor-in-Chief), Encyclopedia of Socialwork (18th ed., vol.2, pp.204~217).
Silver Spring, MD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Home Office : National Standards for the Supervision of Offenders in the Community 2000.

- A Joint Themotic Review by her Mafesty's Inspectorates of Prisons and Probation, 1999.

- Criminal Justice System : Business Plan 2000~2001.
- Probation Statistics : England and Wales, 1998.
- HMPrison Servis Woodhill Throughcare Contract, 2000~2001.
- The Probation Service : Working to reduce Crime and Protect the Public, 1999.

Keiser, George, M. : State Organizational Structures for Delivering Adult Probatio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U.S. Department of Justice, 1999.

Kirst-Ashman, Karen K., and Hall, Grafton H., Jr., (1997).
Generalist Practice with Organization and Communities, Nelson-Hall Publishers, Chicago.

Kriminalvårdens Årredovisning 1999

- The link to a life free of Crime, Kriminalvården, Swedish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1999

Kriminalvårdens, What works, 1999.

- The Swedish System of Sanctions, 1999.
- The Prison Treatment Act, 1999.

Kroworz, Kalora, Social Service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Judicial Assistance and Assistance rendered to Probationers-Berlin, 1998.

Rehabilitation Bureau, Ministry of Justice, The Community-Based Treatment of Offenders System in Japan, 1999.

Report of the Parole Board(1998~1999), Parole Board, Abell House,
John Islip Street, London, Published by the Stationary Office Limited,
2000.

Sarri, R. (1987). Administration in Social Welfare, In a Minahan(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vol. 1, pp.27~40). Silver
Spring, MD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Sanders, Alan & Senior Paul : Jarvi's Probation Officer's Manual, School of
Health and Community Studies, Sheffield Hallen University, Collegiate
Crescent Campus, Sheffield, England, 1994.

Whitfield, Dick, Introduction to the Probation Service, 2nd ed. Waterside
Press, Winchester, 1998.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 Shock Probation(Boot Camp) Program
Guide, 1997.

- Harrisonburg Men's Deviersion Center.
- Southhampton Detention Center Treatment Program Overview, 1999
- Shenandoah Valley Day Reporting Center, 2000.
- Balanced Approach, 2000.
- Chesapeake Probation and Parole, 2000.

全國保護司連盟, 日本의 更生保護, 社團法人 全國保護司聯盟, 1999.

法務省保護局, 諸外國의 更生保護制度 : 連合王國과 스웨덴王國, 保護資料 第27號, 平成 9年 3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여에 관한 연구, 1999.

山田, 日本의 更生保護制度, 2000